최종보고서 15-10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5. 12.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 구 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진 병 진 (책임연구원)

〈연구진〉

김 세 라 (연 구 원)

황 정 훈 (연구보조원)

요 약 문

□ 1990년대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FTA 체결이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ASEAN), 인도, EU, 미국, 호주 및 캐나다 등 총 14건 국가수로는 총 51건의 FTA가 발효되었음

□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협정당사국간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임

□ 그러나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수출이후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검증에 대해 사후 원산지 입증을 해야 협정 관세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FTA 체약상대국과 교역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관과정의 일부 복잡한 과정을 해소해 줄 수 있음

□ 또한 수입국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양허 혜택을 부여 하고 수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음

□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체제를 비롯한 발급기관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FTA가 확대됨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다양해지고 각 국가마다 체결될 협정내용과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령,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들이 해당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FTA 발효 및 타결된 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약상대국의 전반적인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절차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한-EU FTA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음

□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 정식 서명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FTA 체제와 유사하게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原产地证明申请人注册（备案）登记表)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음

□ 또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수출시에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함. 단 유럽연합은 공식언어만 24개,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사회공동체임

□ 현재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통된 관세법 및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지침을 두고 있어 확인이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EU국의 운영지침 등을 번역하여 EU의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음

목 차

Ⅰ. 서론 ····· 1

Ⅱ. 원산지제도 일반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 5

1. 원산지제도의 의의 ····· 5

2.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협정 ····· 8

Ⅲ.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14

1. 중국 ····· 15

2. 베트남 ····· 27

3. 호주 ····· 30

4. 인도 ····· 34

Ⅳ.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40

1. 자율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40

2.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제도 ····· 48

3. EU 원산지제도 ····· 56

4.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75

가. 네덜란드 ····· 75

나. 독일 ····· 90

다. 영국 ····· 101

라. 프랑스 ····· 109

마. 스페인 ····· 112

바. 이탈리아 ····· 116

V. 비교 및 시사점 ····· 120

<참고 1> 네덜란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127

<참고 2>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가이드라인 ····· 151

<참고 3>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작업 및 조직 지시사항 ····· 169

<참고 4> 유럽연합-EU국가 인증수출자 지위 관련 질의/문답 ····· 193

<참고 5>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 ····· 201

<참고 6>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209

표 목 차

<표 II-1>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7

<표 III-1> 중국 원산지규정 체계 ····· 16

<표 III-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주요내용 ····· 19

<표 III-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 21

<표 III-4>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절차 및 주요내용 ····· 22

<표 III-5> 한-베트남FTA와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비교 ····· 28

<표 III-6>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 34

<표 IV-1>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 41

<표 IV-2> 한·EU FTA 협상 주요 내용 ····· 41

<표 IV-3> 한국의 對EU 연도별 교역 동향 ····· 43

<표 IV-4> 한-EU FTA 협정문 제17조 ····· 45

<표 IV-5> EU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 49

<표 IV-6> EURO1 and EURO-MED양식의 유효기간 ····· 52

<표 IV-7> EU 관세법 비특혜&특혜 규정 ····· 59

<표 IV-8>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주요내용 ····· 93

<표 IV-9> 영국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Rules) ····· 102

<표 IV-10>영국 유럽연합특혜수출절차 Notice 827 ····· 103

그림목차

<그림 III-1> 주요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입법체제 및 발급기관 ····· 14

<그림 III-2> 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 31

<그림 III-3>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 ····· 35

<그림 IV-1> EU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 55

<그림 IV-2> 영국 인증수출자 발급절차 ····· 106

부 록

<부록 1> EU이사회규칙(EEC) No 2454/93 ····· 215

<부록 2> EU이사회규칙(EEC) No 1207/2001 ····· 223

<부록 3>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 241

<부록 4> 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APPENDIX V 원산지증명서) ····· 268

<부록 5>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식 ····· 27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FTA 등 지역경제 통합 현상은 글로벌화 현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아세안(ASEAN), 인도,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 14건, 51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의 신규 FTA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 협정에 따라 관세 및 특혜 대상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복잡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 수단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정책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및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및 현지법인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구매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각종 무역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출이후 규정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사후 원산지 입증을 해야 완전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타결된 FT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로 크게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호주,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최근 타결된 FTA를 중심으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법체제, 발급기관, 절차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발급과 관련해서는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물품 수출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보고서는 EU 주요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EU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증수출자 규정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보 수집 및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위해 최근 발효된 신규 FTA 체약상대국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인도 등 체결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발급절차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법규 중국 내 원산지증명서를 받고자 할 때 중점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였다.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중국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교역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고, EU와의 무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특히 28개 회원국 모두 인증수출자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회원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인증수출자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EU의 공통관세법 및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을 분석하였고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EU新관세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주요 EU 회원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인증수출자 법체계 및 발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 수집 및 분석하였다. 다만 국가적 문화차이 및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인증수출자 제도 지위 획득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특징	주요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법제연구 강화	○ 주요 FTA 체약상대국 중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법령 및 규정 검토 ○ EU 주요 체약상대국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 조항 검토 ○ 특히 EU 국가간 인증수출 자 위임에 대한 심층 분석	○ 문헌연구 ○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 관련 법령 비교 ○ EU 국내법 '인증수출자 조항' 검토	○ EU는 총 28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의 목적상 단일 영역임 ○ 인증수출자 제도 역시 공동통상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요건은 국내법에 따르고 있어 상의함
전문가 인터뷰	○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전문가 인터뷰 ○ 선행연구 중 인증수출자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 EU의 경우 주로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발하고 있어 각 세관별 Q&A를 적극 이용	○ 주요국 국내법 수집 ○ EU국 인증수출자에 대하여 국가간 위임에 대한 사례 수집 ○ EU가 기체결한 FTA 중 인증수출자 사례 분석 ○ 각 EU국가 세관 Q&A	○ 원산지증명서 역시 주요 4개국 모두 자국어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및 제도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역시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언어만 24개 언어임.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인증수출자 제도를 현지언어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고 있어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각 세관별 상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지 정보 수집

Ⅱ. 원산지제도 일반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1. 원산지제도의 의의

가.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 : C/O)란 일반적으로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혹은 보호령[1]과 같은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별도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다.

동식물의 경우 출생 또는 성장한 국가를, 농·수산물의 경우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상품의 생산이란 제조, 가공, 재배, 채취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생산단계가 끝난 이후의 단순한 결합이나 세트화는 대개 생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천연상품 및 광물, 동·식물류의 제품들은 완전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다소어려움이 적지만,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식물이나 공산품은 성장 또는 제조, 가공과정이 두 개 국가 이상에서 걸쳐 생산되고 원산지결정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

1) 쿄토협약(Kyoto Convention)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에서 원산지에 국가의 개념에 국가군(a group of countries)이나 국가의 특정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란 통상적으로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지위）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제품의 국경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나.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및 발급방식

(1) 개요

원산지증명은 특정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특정국가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별로 정한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크게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발급권한이 있는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위임받는 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이 기관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에 수출자 또는 원산지 등 정해진 항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은 FTA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율발급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공신력이 높아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따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불편과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FTA협정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출자가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표 II-1>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국가별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주 : 한-페루 FTA는 협정발효(2011.8.1.)한 날 다음날부터 4년 동안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병행하고, 6년 후 부터는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만 허용된다.

2)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10, p.65.자료인용

2.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협정

가.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증명제도 법규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정교통협약의 원산지 부속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64년 관세법 시행령에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관련 법령에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3]하고 있다.

국내법상 원산지 관련 법령으로는 특혜원산지 분야의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 등과 비특혜원산지분야의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4]

(1)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1항[5], 제232조2(원산지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서 등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 201 5
4) 박광서 외(2014), PP.33-34.
5) 동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32조2 제1항)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산지발급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하였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탁하였다.

대외무역법 제37조[6]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7]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3)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법[8]은 자유무역협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률적용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원산지증명제도를 원산지증명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 자율증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상기 내용과 같이 FTA협정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주요 FTA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앞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을 채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에서 발행된 Form AK 진위여부는 발급기관의 인증 및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 확인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요 특징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하여,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도입하여 회원국내에서 수출물품을 효율적 및 원활화게 통관이 되도록 이행하고 있다.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자격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

8)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 특례에 대한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도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당사국에 각 법령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2)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수출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기관발급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인도의 경우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에 발급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이 원산지를 부정하게 발급할 경우 혹은 원산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할 때는 수출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기관에 대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매체이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원본은 수입지 관세당국, 제2부본은 발급기관, 제3부본은 수입자, 제4부본은 수출자가 보유해야 한다.

(3) 한•EU FTA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와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규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송품장 신고서 작성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 16조: 송품장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는 제15조제 15항에 언급된 송품장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 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제 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 없이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도록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 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4) 한•호주 FTA

한국과 호주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며, 한-호주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은 호주상공회의소(ACCI)와 호주산업협회(AIG)이다.

유효기간은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협정 발효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이다.

(5) 한•캐나다 FTA[9)]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와 동일상품에 대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 선적에 따른 포괄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원산지 유효기관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협정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가.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함.

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의미는 없음

9) 참고6 참조

Ⅲ.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제도의 기관발급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크게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분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에 등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한데, 원산지증명방식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크게 기관발급 방신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최근 발효된 주요 FTA 체약상대국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법규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실제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에서 원산지증명서 관련 신청 절차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담았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을 동시에 받고 있어 호주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도의 경우 기존 국내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인도수출검사위원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이외 상공회의소 인도협회 등에서 발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 하였다.

<그림 Ⅲ-1> 주요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입법체제 및 발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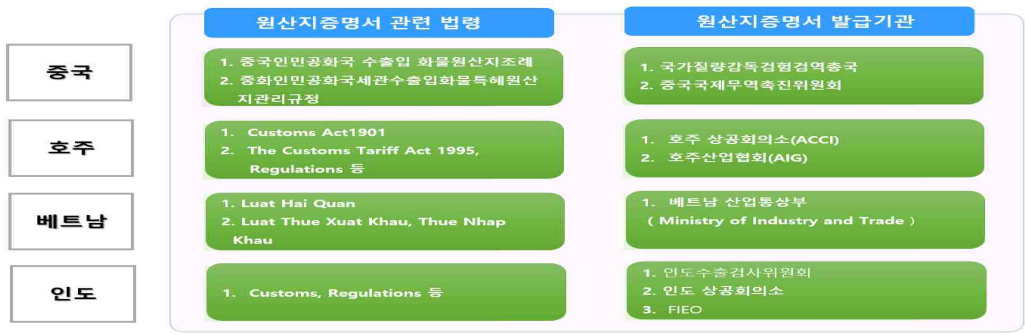

1. 중국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FTA 체제와 유사하게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각각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는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국가감독검험검역총국[10]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11]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관한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다. 특히 구체적인 원산지 관련 시행규정으로서 일반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와 특혜원산지 관리제도인 해(세)관총서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12]이 있다.

원래 중국의 원산지 관련 법률은 해(세)관총서에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련 잠정규정」과 1992년의「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규칙」두개의 규정뿐이었다.

---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어 간체: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정체: 中華人民共和國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로 전국의 상품의 품질·개량·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출입국 위생 검역·수출입 동식품 검역 및 품질인증 인정·기준화 등義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1)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際貿易促進委員会,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외국과 각종 형태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1952 설립 기관으로 회장, 부회장은 국무원(国务院)에서 임명하고 있다. 2009년부터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12) 부록4 참고

이 두 법규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및 원산지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그러나 국내·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 이 두 법규는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중국은 2004년 9월 3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조례” 라고 약칭)를 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례”는 27조 규정- “원산지규정 중 실질적 변형기준의 실시에 관함”, 입법취지, 적용범위, 원산지확정원칙,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사, 위반조례의 법률적 책임 등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3]

〈표 Ⅲ-1〉 중국 원산지규정 체계 **14)**

일반 원산지규정	특혜 원산지규정
대외무역법 해(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국무원령 제416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중-ASEA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페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아태무역협정 중-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홍콩 CEPA 원산지 규정 중-마카오 CEPA 원산지 규정 중-대만 ECFA 원산지 규정

13) 中国质量新闻网，中国自由贸易协定原产地规则现状及发展方向探讨,2008-06-24
14) http://www.customs.gov.cn/

(1) 일반 원산지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아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한 주요 이유이다.

첫째, “조례”는 수출입상품원산지의 원칙을 통일하였다.

둘째, “조례”적용의 목적과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다. 예를 들어 수입상품의 세율적용, 무역통계 등의 내용 이외에도 새로운 “조례” 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조치,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기관, 수입지역 제한, 관세할당액 등 조치의 실시 및 정부조달시 수입상품원산지의 확정에도 적용된다.

셋째, “만약 상품에 대하여 진행한 어떠한 가공 혹은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연관 규정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세관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원산지조례 중 반 규제 조항을 도입한 것은 중국이 국외수출상의 중국의 반덤핑, 반 보조와 보장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연관 규정에 대한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넷째, 새로운 “조례”는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확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상품의 수령인은 상품의 원산지를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이 수입제품 원산지를 심사할 때 수입제품 수령인에게 수입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 그 제품의 수출국(지역)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제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최초로 원산지제도 하의 원산지표시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조례” 는 제16조에서 “국가는 원산지표기의 시행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품 혹은 그 포장의 원산지표시는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조례” 는 비밀원칙을 규정하였다. 상품원산지의 자료와 정보의 확정에 사용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거나 혹은 자료와 정보의 관련 기관. 개인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1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의 각 지방수출입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際貿易促進委員会,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16)]

본 조례 제18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 신청 수령시, 마땅히 증명발급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고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례 19조에 따르면 발급기관은 수출물품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해야한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분, 기관과 함께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

15) 罗兰,《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明年施行海关总署有关负责人详细解读（政策解读）,《人民日报海外版》(2004年11月09日 第七版)
16)「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제17조
17)「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제19조

수출물품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세관 및 발급기관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따라 수입국 지역에 관련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물품 원산지판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표 III-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주요내용

구 분	원문	국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 주요내용 (제17-19조)	第十七条出口货物发货人可以向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所属的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尧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及其地方分会渊以下简称签证机构冤袁申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遥 第十八条出口货物发货人申请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袁应当在签证机构办理注册登记手续袁按照规定如实申报出口货物的原产地袁并向签证机构提供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所需的资料遥 第十九条签证机构接受出口货物发货人的申请后袁应当按照规定审查确定出口货物的原产地袁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曰对不属于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出口货物袁应当拒绝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遥出口货物原产地证书签发管理的具体办法袁由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尧机构另行制定遥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 신청 수령시, 마땅히 증명발급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고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 탁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마땅히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 증명발급관리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국무원 기타 관련부문, 기구와의 회동을 통해 별도 제정한다.

(2) 특혜 원산지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를 만들어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18)]

이 규정은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19)]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발급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은 특혜무역협정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은 본 규정과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확정한 원산지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1)]

세관총서는 원산지증명서 증명발급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제12조) 특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정기적으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혜 무역협정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22)]

---

1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조
1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2조
2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1조
2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2조
2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3조

〈표 Ⅲ-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구 분	원문	국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제11조~ 제13조	第十一条 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权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机构（以下简称签证机构）可以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	제11조 법률(法律), 행정법규규정(行政法规规定)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증명서를 발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第十二条 签证机构应依据本规定以及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地规则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제1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및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칙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第十三条 海关总署应当对签证机构是否依照本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进行监督和检查。	제13조 세관총서는 원산지 발급기관이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종합해보면 중국 원산지관련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해관법이 있고,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일반 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정한 제416호 령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와 특혜 원산지관리제도인 해관총서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 화물 특혜 원산지 관리규정이 있다.

실제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23]』에서 공지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신청 절차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이다.

23) 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전담관리자 규정에 대한 내용은 부록3 참고

<표 Ⅲ-4>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절차 및 주요내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중국</th></tr>
<tr><td>관세당국</td><td colspan="2">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普遍优惠制原产地证明书签证管理办法》</td></tr>
<tr><td rowspan="2">원산지규정</td><td>비특혜</td><td>특혜</td></tr>
<tr><td>· 대외무역법
· 해(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국무원령 제416호</td><td>·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 특혜 원산지관리규정」
· 각 FTA 협정별</td></tr>
<tr><td>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td><td colspan="2">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로 전국의 상품의 품질·개량·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출입국 위생 검역·수출입 동식품 검역 및 품질인증 인정·기준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td></tr>
<tr><td rowspan="4">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td><td>구분</td><td>세부내용</td></tr>
<tr><td>1. 원산지증명서 신청</td><td>· 북경지역 수출기업은 화물 수출 전 사업지 검역신고 후 등록번호 취득하여야만 원산지증명서 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td></tr>
<tr><td>2. 온라인 등록 신청</td><td>· 홈페이지 (http://ocr.eciq.cn) 에서 원산지증명서 등록 신청
·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검역기관 제출용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등 7건)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 10일 이내 제출 완료 후 원산지증명서 등록증 배부</td></tr>
<tr><td>3. 발급</td><td>· 신청기업(원산지증명서 신청)에 대한 검역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온라인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td></tr>
</table>

구 분	중국	
		티커)
	5. 온라인 심사 신청	· 화물 운송 전 온라인 심사 신청 · 원산지증명 신청서 및 원산지증명서 출력 및 기입하여 검역당국에 제출, 수수료 납부
	6. 심사	· 등록일 만기(1년) 30일 전 반드시 원산지 등록 심사가 필요 · 등록 제품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기 시 재등록이 필요 · 심사 통과 제품은 원산지등록증 날인, 미통과 제품은 재등록 진행
	7. 등록 변경	· 원산지증명서 등록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수속을 통해 변경 신청 - 제품 등록 증가, 신청인 변경, 신청업체 변경 등 · 변경 시 제반 서류 출력 및 기입 후 온라인 제출
	8. 원산지증명서 배정 번호	· 원산지증명서 번호는 총 16자리 · 원산지증명서 신청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배정 -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11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예) G12XXXXXXXXX0001, X(9개)는 등록 업체 번호임
	9. 증명서 변경 신청	·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재신청을 통해 변경 신청 ·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첨부, 수수료 재납부
	10. 증명서 재발급 신청	·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재발급을 통해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첨부, 수수료 재납부
	11. 원산지표준조사결과표 신청	· 원산지표준조사결과표 신청
	12. 신청인 면허 갱신	· 신청인은 반드시 면허 만료 1달 전 갱신 수속
	13. 신청인 등록사항 변경	· 신청인 변경이 필요한 기업은 변경 수속을 진행 -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구 분	중국
신청 방법 및 주요내용	2. 서류등록 신청업체, 연1회 심사는 모두 원산지업체등록홈페이지 (http://ocr.eciq.cn)에서 업체기본정보, 업체제품정보, 업체 제품상세 설명, 업체신청자정보, 업체주요 생산가공 설비목록, 업체전자문건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 및 기관 코드 사본 스캔) 등 신청정보를 기입해야 함. (등록지역이 북경시 해정구, 창평구, 연경현 지역의 업체 및 신청자는 업체기본정보와 신청자정보 소속기관, 증명기관, 수령기관은 북경해정국본부를 선택, 기타구현의 업체는 북경국 본부를 선택) 전자문건은 저장 및 제출하고, 제출 후 작성한 문건을 인쇄하여 등록업체 대표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다. 모든 서류를 북경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 제출해야 함 3.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원산지검사관증을 보유한) 검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업체의 증명서에 날인할 인감도장은 반드시 중문, 영문의 인감도장 모두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6CM(길이) × 4CM(넓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색감과 형태의 제한은 없음 5. 신청등록업체는 신청일부터 만 12개월 1달 전에 반드시 감사수속을 신청해야 함. 감사수속 같은 경우는 <원산지신청등록증>을 지참해야 함. 신청등록제품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 초과 시에는 외지 제품<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원본을 제출해야 함. 감사 시 신청등록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정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해야 하며, 단독으로 수정내용 변경신청은 불가 6. 신청등록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 <원산지증명신청인등록변경서식>을 작성하고 변경내용 신청수속을 진행 7. 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품 출하 전에 검역기관이 현장에서 업체 및 제품현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 8. 타지 제품<원산지표준조사결과서식>은 생산업체가 현지검역기구에 신청. 9. 북경 소재의 업체 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비용명세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10. 본 서식의 모든 페이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수정되거나 공백의 페이지가 있어서는 안됨. 법정대표인 서명과 원산지검사관 모두 친필 서명을 해야 함 11. HS코드는 세관법에 따라 8-10자를 기입 12. 수입제품의 성분은 제품 수입성분의 함유량을 말하며, 수입성분이 없다면 0을 기입하고, 수입성분이 있다면 수입성분의 공장출고가격의 백분율을 기입 1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은 반드시 법적 원산지등록증명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원에 신청을 함 별첨(사본은 반드시 A4 용지로 제출되어야 한다.)

구 분	중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날인본 각 1부; 2. 수출입영업허가 자격증명, 증명서 허가, 대외무역영업자 등록서류 사본 및 날인본; 3. 기관 및 기구코드 원본 및 사본; 4. 북경 소재의 업체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자재 구매영수증 복사 및 날인본; 5. 북경 외 타지역 업체생산제품은 현지검역기관이 발부한 <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식> 정본을 제출; 6. 법적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7. 현지의 검사관 신분증 사본; 8. 검사관 자격증 사본; 9. 기타 서류
발급기관의 기업 현장 조사	발급기관의 생산기업 현장 감사 공정 1. 기업 대표의 기업 기본 현황 소개 1) 기업현황(기업의 성질, 인증현황, 투자생산일자, 생산규모, 가공능력 및 구성원 현황) 2)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현황 3) 제품생산공정 2. 감사단의 기업 기본정보 조사 1) 기업명 부합 여부 2) 등록주소 일치 여부 3) 기업의 자질(사업자등록증, 수출입허가증, 기업조직코드 등) 3. 감사단의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증명서 조사 1) 기업의 원재료, 부품구매영수증 및 재료공급에 대한 증명 2) 기업의 <제품비용명세서> 4. 감사단의 제품생산과정, 공정순서 및 제품생산가공설비 현장 조사 1) 생산과정, 공정순서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2) 생산가공설비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3) 생산가공설비 명칭, 수량과 신청내역정보와 일치 여부 현장 감사 5. 감사단의 원재료, 부품 출처 현장 조사 1) 원재료창고 내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2) 생산가공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6. 감사단의 수출제품 수량, 포장 현장 조사 1)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수량 현장 감사 2)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 현장 감사 3)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케이스 현장 감사 7. 현장 샘플 수집(필요 시) 8. 종료

구 분	중국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수출관련 기록보관 의무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관련 무역증명서는 모두 3년 이상 보관
신청비용	500위안
비밀정보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중국해관총서(세관)은 본 규정에 따라 획득한 상업비밀에 대하여 법에 의거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밀정보 공개	-

2. 베트남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하여 한편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협의 하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특혜원산지 대우를 위한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였다. 한•베트남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증명이다. 발급기관은 수출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먼저 베트남 관세법(Luat Hai Quan), 수출입세법(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관세법상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 하고[24] 있으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세청이 제정 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의 경우, 농수산물은 농업개발부, 우편물은 우정통신부, 의약품등은 보건부, 유해화학물질은 산업무역부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교통운송부 등의 확인허가서 등 자료가 필요하다.

베트남 관세청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청으로 구분되며 일선세관의 3층 구조 형태이다. 전국 63개 시•성중 33개에 해관국이 설치되어 있다.[25] 각 시•성 소속 세관직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관세법령 업무수행과 관련 관세총국이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인민위원자도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통관 업무는 세관지국에서 수행하지만 통관 후 감사는 본청•해관국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24)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2014
25) 수상고시- 02/2010/QD-TTg (2010. 1. 15)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관리 및 발표하는 절차를 취한다. 한-ASEAN FTA의[26] 경우에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ASEAN)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체제 하에서 상품 무역하에 관련된 특혜원산지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FTA역시 이 프레임 워크 안에서 절차에 따른다.[27]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Form KV로 특정하고 있어 활용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이 기존 200달러 이하(한-아세안 FTA)에서 600달러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표 Ⅲ-5> 한-베트남FTA와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비교[28]

구분		한-베트남	한-아세안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본선인도가격조선(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본선인도가격조선(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사후검증	검증방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검증요청 회신기간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사후검증 소요기간	6개월	10개월
서류보관		수출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26)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의(여기서는 "AKFTA 협정"으로 명시함)에 관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프에서 2006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Form AK(여기서는 원산지증명서 Form AK로 명시함)는 원산지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는 당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이다.

27) 부록5 참고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29]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40/2015/TT-BCT ngày 18 tháng 11 năm 2015 của Bộ Công Thương quy định thực hiện Quy tắc xuất xứ trong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iệt Nam - Hàn Quốc)

STT	Tên đơn vị
1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à Nội
2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P. Hồ Chí Minh
3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Đà Nẵng
4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Đồng Nai
5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ải Phòng
6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Bình Dương
7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Vũng Tàu
8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Lạng Sơn
9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Quảng Ninh
10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Lào Cai
11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hái Bình
12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hanh Hoá
13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Nghệ An
14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iền Giang
15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Cần Thơ
16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ải Dương
17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Bình Trị Thiên
18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Khánh Hoà
19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à Tĩnh
20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Ninh Bình
21	Ban quản lý các Khu Công nghiệp và Chế xuất Hà Nội

28) 박지은 외 한명,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재구성

29)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관련, 한-아세안은 총 18곳, 한-베트남은 3곳이 추가되어 총 21곳임. 그러나 현재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내용은 베트남어 버전만으로만 되어 있음

3. 호주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한국의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 측의 경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모두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발급은 수출자・생산자, 호주의 경우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관련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 기업 정보를 먼저 등록(FormCO4) 해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호주의 관세법 체제는(Customs Act 1910)과 시행령인 관세율법 The Customs Tariff Act 1995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he Customs Tariff Act 1995는 관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관세 양허표를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관세청 공고로 대신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을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하되 FTA 원산지절차는 협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0]

관세법(Customs Act 1910)[31]에는 통관절차, 세관검사 및 보안, 상품의 수출입, 관세부과, 금지・제한 품목, 관세양허, 반덤핑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체결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관세법 개정 (Customs Amendment(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4)을 공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양국 간 수출입업자에 대한 FTA 체결에 대한 쌍방적 특혜 원산지 제도 역시 이 법에서 규율한다. 원산지규정은 특혜와 비특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혜규정은 협약에 의거 상대방국가에 적용하며, 기타는 비특혜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

30) 김석오・정재완(2010), pp66-67

31) 관세법(Customs Act 1910)에서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으로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호주에 경우에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호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32] 각 지역별로 대행기관이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자율발급은 서명일 부터 2년, 기관 발급은: 발급 일부터 2년이다. 한-호주 FTA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다(서명일 또는 발급 일부터 2년), 포괄원산지증명서 유효기관은 시작 일부터 종료일(From ~to),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Ⅲ-2> 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자료 : 저자작성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 후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만 작성되야 하고 한－호주 FTA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야한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천불 이하일 때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1천불 AUD 이하일 때 각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회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30.00이고, 비회원의 경우 $70.00이다.

32) 호주의 경우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호주 외무성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상공회의소 기업회원 신청 서식(FORMCO4) - ACCI 발급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N. 008 451 170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ESTERN AUSTRALIA

DOCUMENTATION SERVICE REGISTRATION FORM
(FORM CO4)

To: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Western Australia***
International Trade Centre
180 Hay Street, East Perth WA 6004
Fax: 9365 7616

Company Name: _____

Address: _____
—

Phone:
_____ **Facsimile:** _____

Email:
_____

Description of Business:
_____

Is a company incorporated in _____
(State)
and carries on its operations from the address above. A copy of ou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 is attached.

The company requires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for its products when exporting to particular countries, and/or Certificate of Free Sale, and/or visa letter certification, and/or certification of other documents and applies to obtain these services from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Western Australia (ABN 96 929 977 985).

To ensure the integrity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or visa letters issued, the company provides the Chamber with a list of names and signatures of people whom it has authorised to sign such documents on its behalf. The list is on the reverse side of this form.

The company agrees to advise the Chamber, in writing, of:

* the names and signatures of any additional persons authorised by the company to sign applications for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Certificates of Origin), Certificates of Free Sale or visa letters;
* the withdrawal of any persons from the Signatory List; and
* any change in address details.

In respect of the issue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the company will ensure that the Chamber is provided with any documents or information which it may request to enable it to be satisfied that the goods, for which a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is sought, do originate from the country certified as determined by the rules of origin of the destination country.

The Australian Business Number of the company is: _____

Signed at _____ this

호주 상공회의소 기업회원 신청 서식(FORMCO4) - ACCI 발급

Form CO 6

EXPORTER	CERTIFICATE No. EXPORTER'S REFERENCE
CONSIGNEE	BUYER (IF NOT CONSIGNEE)

Certificate of Australian Origin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3RD FLOOR, COMMERCE HOUSE
24 BRISBANE AVENUE
BARTON ACT 2600
AUSTRALIA
A.B.N. 85 008 391 795
TELEPHONE:
International +612 6273 2311
Local 02 6273 2311
Authorised to issue Certificates of Origin by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PORT OF LOADING	
VESSEL/AIRCRAFT	DATE OF DEPARTURE
SEA/AIRPORT OF DISCHARGE	FINAL DESTINATION (if on carriage)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EXPORT STATISTICAL CODE	GROSS WEIGHT

I,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 above exporter, and having made the necessary inquiries HEREBY CERTIFY THAT all the goods listed above originate in AUSTRALIA. I further declare that I will furnish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or their nominee, for inspection at any time such evidence as may be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is certificate.
The goods were produced/manufactured at:

I, the undersigned am duly authorised by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o sign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I hereby certify that, on the basis of information supplied by the exporter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above-mentioned goods, based on the rules of origin claimed by the exporter, is AUSTRALIA.

SIGNATURE OF AUTHORISED OFFICER	Issued at Perth by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Western Australia (Inc) as Agent for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IGNATURE OF AUTHORISED OFFICER

4. 인도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5년 현재 시행 6년째를 맺고 있다. CEPA란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표 Ⅲ-6>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근거	주요내용
증명 방식	기관증명
증명 주체	수출국 정부지정기관
발급기관	한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증명서 제출면제	개인 간에 송부된 물품 또는 소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
유효 기간	1년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자료: 저자작성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한국·인도 FTA협정문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기관발급 형식이며, 원산지증명제도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4장(원산지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이 발급기관이다. 특히 인도수출검사위원회는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수출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 업무 이외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즉 인도의 경우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인도 상공회의소와 FIEO(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zation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매체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림 Ⅲ-3>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인장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자료: 주간무역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인도에서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상공회의소, FTEO(인도 협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에서 발급 받는걸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는 양국간 통일증명 양식으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수출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Affidavit signed by Importer in Stamp Paper

② Original Invoice

③ Covering Letter

④ Certificate Fee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NOTE(기재 요령)가 인쇄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가 불인정되지만, 한•인도CEPA의 경우 OVERLEAF NOTE가 인쇄되지 않아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된다.

다음은 인도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원산지증명서 / 상업송장 사본 증명서 / 포장명세서 등의 발급을 위한 인도 상공회의소 (ICC)사무처장 주소가 기재된 원본 편지지에 쓴 커버레터 서명권자가 제출할 경우 입증된 허가증 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플러스 (기록보존용 추가 사본) 작성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양식들은 50장당 구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송장을 비롯해 포장명세서, 신용장이나 구매 주문서, 혹은 이메일 주문서 등 모든 서류는 수출 신청자가 직인을 찍고 서명해야 한다. 다른 국가로 수출되기 전에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물품들이 모든 조세공과를 지불한 후에 합법적으로 수입됐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수입신고서가 관세국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입증서를 신청할 때마다 ICC 기록용으로 자료를 추가로 1세트 더 제출해야 한다.

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ANNEX 4-B
CERTIFICATE OF ORIGIN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INDIA-KORE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	

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INDIA-KORE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NKCEPA) are REPUBLIC OF INDIA and REPUBLIC OF KOREA.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INKCEPA, goods sent to a Party listed above: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importing Party;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INKCEPA; and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INKCEPA.

3. ORIGIN CRITERION: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10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ORIGIN CRITERION	INSERT IN BOX 10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Article 3.4.1(b)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INKCEPA	"CTSH + RVC 35%"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C / CTH / CTSH"
- *Regional Value Content*	"RVC X %"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35%"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CC / CTH / CTSH" or "RVC X %"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Regional Value Content*	"CC / CTH / CTSH + RVC X %"
- *Specific Processes*	"SP"
- *Others*	"Others"
(d) Goods satisfying Article 3.14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of the INKCEPA	"OP"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6. HARMONISED SYSTEM NUMBER: The Harmonised System number shall be a 6 digit code of the goods.

7.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indicate in Box 5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accorded.

8. REMARKS: In case of issuance of certificates retrospectively, Box 6 should bear the words "ISSUED RETROSPECTIVELY", and in case of a certified true copy, Box 6 should bear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n operator in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company or the operator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14.

Note: The instructions hereon are only used for the purposes of reference to complet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thu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or printed in the overleaf page.

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i) 수입당사국의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ii)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 10란에 기입
(a)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취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b)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RVC 35%"
(C)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비율 -세번병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세번병경+역내 가치포함비율 -특정공정 -기타	" CC/CTH/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 예시 : " "RVC X 35%" " CC/CTH/CTSH" or "RVC X %" " CC/CTH/CTSH" + "RVC X %" "SP" "Others"
(d)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혹은 예비부품을 송부할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6란에 "소급발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에는 제6란에 "진정등본"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이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의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Ⅳ.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자율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FTA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 자율발급 협정의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33] 이와 관련하여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마다 많은 양의 증거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 한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월산지 증명의 간소화 및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

33) 시행령 제9조의제4항

<표 IV-1>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前	인증後
한-EU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그 밖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발급절차 간소화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페루	미화 2,000달러를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만 가능	미화 2,000달러를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자료: 관세청

나. 한•EU FTA 이행 현황

(1) 한-EU FTA 개요

한-EU FTA 논의는 2007년 5월부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2009년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9월초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가 완료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표 IV-2> 한•EU FTA 협상 주요내용

날 짜	주요내용

날 짜	주요내용
2006.07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04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05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07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07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09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10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11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0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0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2009.03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10	한-EU FTA 가서명
2010.10	한-EU FTA 정식서명

자료: 외교통상부

(2) 한-EU FTA 교역 동향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한-EU 간의 교역량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2년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화되며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유럽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해 대 EU 수출이 9.0% 감소한 반면 수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 증가한데 반해, 수입금액은 13.2%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기준 무역적자는 약 137억 달러로 늘어났다. 2015년 1~10월까지 한-EU 간 수출은 약 549억 달러, 수입금액은 621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 IV-3> 한-EU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54,883,263	-11.0	62,123,536	-12.5	-7,240,273
2014년	71,646,485	3.5	85,349,881	13.2	-13,703,396
2013년	69,204,729	1.3	75,412,339	5.7	-6,207,610
2012년	68,299,711	-9.0	71,323,345	9.3	-3,023,634
2011년	75,087,341	7.8	65,260,030	17.0	9,827,311
2010년	69,626,864	24.3	55,759,599	27.1	13,867,265
2009년	56,016,608	-27.0	43,862,349	-18.3	12,154,259
2008년	76,696,711	7.7	53,696,697	11.9	23,000,014
2007년	71,197,898	18.1	47,986,833	28.3	23,211,066
2006년	60,282,078	14.1	37,410,197	11.3	22,871,881

주: 2015년은 10월까지 누적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3) EU와 FTA 체제와의 관계

EU는 1960년대부터 많은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EU의 FTA 체결은 EU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FTA정책은 공동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은 각 관할 주체의 역할에 따라 FTA 체결 시에 집행위원회는 협상개시의 필요성을 이사회에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EU가 체결해 온 FTA를 살펴보면 주요 유럽 인근 국가들과의 체결 및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체결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지리적·문화적인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 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메르코수르 (MERCOSUR), 걸프협력회의회 (GCC) 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되었다.

EU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9년 7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9년 10월 15일에 가서명 됐다.

한-EU FTA에서 가장 특징 적인 것 중 하나는 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현재 총28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지역공동체이며 거대한 단일시장이다. 특히 EU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통상정책을 운영하면서 통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

다.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한-EU FTA에서는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34] 특히 6,000유로 이상의 수출자의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한-EU FTA 협정문 상에서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은 제17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V-4> 한-EU FTA 협정문 제17조

구 분	영문	국문
제17조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roved exporter', who exports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conditions in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An exporter seeking such authorisation must offer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on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송품장신고서를 적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출을 수출하는 수출자를(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customs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

34) 한-EU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구 분	영문	국문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다.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5.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i) 언급된 보증(guarantees)을 공하지 아니하거나, (ii) 언급된 조건은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한-EU FTA 협정문 제17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수출국 세관 당국은 수출건수가 빈번한 특정 수출자 즉 인증된 수출자가 국내법과 규제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금액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증수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빈번한 수출 건수와 더불어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세관 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야 하며, 협정문에 의한 다른 기타 요구조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세관 당국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세관승인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umber)를 부여해야 하며, 인증수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관은 언제라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협정에 명시된 취소 조건으로는 먼저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격의 부적절한 이용 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

협정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는 '수출국의 세관 당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에 수출국 세관 당국이 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문 내용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2.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제도

가.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EU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발급형태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당국 등 관련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이행 규정이 다르긴 하나 EU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의 위임을 선호하지는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의 책임하에 발행되어져야 한다.

먼저 EU 관세법 26조에 따르면, 관세법 혹은 기타 EU의 특별법규는 상품의 원산지가 서류의 제출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제1항). [35]

관세법 시행규칙(EC Regulation No 2454/93)[36]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47~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47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EU의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이나 각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가 받은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가 EU 공동체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35) Article 26
1. Customs legislation or other Community legislation governing specific fields may provide that a document must be produced as proof of the origin of goods.

36) 부록 1참조

수입의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기관(reliable authority or agency duly authorized for that purpose by the country of issue)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명백하게 그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IV-5> EU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구 분	원문	국문
EC Regulation No 2454/93 제48조	When the origin of a product is or has to be proved on importation by the produc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certificate shall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a) it shall be made out by a reliable authority or agency duly authorized for that purpose by the country of issue;	(a) 이 증명서는 교부국(交付國)에 의해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발부되어야 한다.
	(b) it shall contain all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identifying the product to which it relates, in particular: — the number of packages, their nature, and the marks and numbers they bear, — the type of product, — the gross and net weight of the product; these particulars may, however, be replaced by others, such as the number or volume, when the product is subject to appreciable changes in weight during carriage or when its weight cannot be ascertained or when it is normally identified by such other particulars, — the name of the consignor;	(b) 수량, 성질, 상표 및 일련번호, 상품의 용적 및 총 혹은 순수중량 등 상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만일 상품이 운송도중 민감하게 변화하거나 혹은 그 중량 이 확정될 수 없거나 그 식별이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항, 즉 발송인의 이름에 의해 보증되는 때에는 수량이나 용적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구 분	원문	국문
	(c) it shall certify unambiguously that the product to which it relates originated in a specific country.	(c) 위의 사항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제55조와 제56조에 의하면 비특혜 수입(special non-preferential import)을 이용해 제3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농업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제3국가의 관련 정부기관(th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third countries concerned)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3조에 의하여 제3국은 집행위원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과 주소, 스탬프(stamp)를 송부해야 한다.

나. EU 원산지증명서 발급형태

(1) EU 원산지증명[37)]

EU에서는 기관증명(승인된 양식 및 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자율증명방식(invoice Declaration)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 기관발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EU가 체결한 기타 FTA의 경우 EURO1, 혹은 EURO_Med와 같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원산지규정은 PANEURO방식을 적용하며 협정마다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기관발급 - Movement Certificate EUR.1[38)]

기관증명에 의한 발급방식은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승인의 대리인(수출자의 책임하에서)의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서에 따라 수출국(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발행되는데, 작성되는 언어는 협정 또는 수출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 당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Movement Certificate EUR.1)가 발행되는 경우 수출자(신청자)는 관련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모든 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세관 당국은 EUR.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세관은 어떤 증거를 요청하거나 수출업자의 보고서 및 계정을 검사하며, 또는 기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EUR.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발급될 수 있는데, 오류, 비자발적 누락, 특별한 환경 등으로 인해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했거

37) http://exporthelp.europa.eu/

38)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서 EU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특혜용 또는 비특혜용으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나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수입지 세관당국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수락되지 않은 경우로써,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출 이후에도 발급될 수 있다.[39]

EUR.1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에 유의해야한다.

- EUR.1은 1건의 화물만을 커버하는 서류이며, 반드시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날인이 필요
- EUR.1 양식은 해당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4, 5개월 혹은 10개월로 그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표 IV-6> EURO1 and EURO-MED양식의 유효기간[40]

구분	국가별	유효기간
EUR1, EURO-MED	EFTA, Algeria, Egypt, Lebanon, Israel, Faroe Islands, West Bank/Gaza Strip, Jordan, Tunisia, Morocco and Turkey. EURO1 Certificates for exports to: South Africa, Macedonia,, Croatia, Albania Bosnia -Herzegovina, Serbia, Montenegro and Kosovo,	4개월
EUR.1	ACP/OCT countries, Mexico, Chile or a GSP beneficiary country.	10개월
기타		5개월

39)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거절된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락 거절(DOCUMENT NOT ACCEPTED)"이 라고 표시,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이를 다시 수입업자에게 반환. 이와 같은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업자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수출업자가 다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재발급(issued Retro- spectively)"이라고 표시됨

한편, EUR.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도난, 손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경우 서류상에 영문으로 "DUPLiCATE" 라고 표시가 된 원산지증명서(a Duplicate Movement Certificate EUR.1)가 발행된다.

원산지물품이 공동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을 때, 물품을 공동체 밖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물품이 분할되어 서로 다른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기초로 하여 대체발급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은 물품의 통제하고 있는 세관에 의해서 발급될 수 있다.

② 자율발급 - 송품장신고서(Invoice Declaration)

자율발급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별도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필요 없이 단지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고 발급자가 서명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범유럽 (PanEURO) 원산지규정에서는 송장신고방식(Invoice Declar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장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되어야 한다.

- 상품 발송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모든 사업자

- 발송 가격이 6,000 이상인 경우 인증 수준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는 경우, 수출자는 EUR.1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수출업자는 수출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 및 기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규정된 언어 중

40)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하나를 이용하여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상에 기록, 서명, 출력하여 발급하면 된다.

2) 유럽연합 인증수출자

EU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체결국간의 혹은 기타 관세동맹 등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EU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인증수수출자 지위 획득을 신청하는 수출자(생산자, 중소기업 등)를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해서는 EU차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건수가 빈번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보증(guarntee)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함과 동시에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수출자에 대해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로 지정하며 송장신고시 표시되는 '세관인증번호(CAN, Customs autorisation Nunmber)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송장신고(invoice Declaration)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에는 수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지만, 승인된 수출자가 송장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한 경우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송장신고는 물품이 수출되는 때 또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발급될 수 있는데, 수출 후 발급되는 경우는 관련 물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는 정기적으로 공동체 내 에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자들에게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이들 수출업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은 수출자는 세관절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율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련 서류는 최소한 '3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림 Ⅳ-1> EU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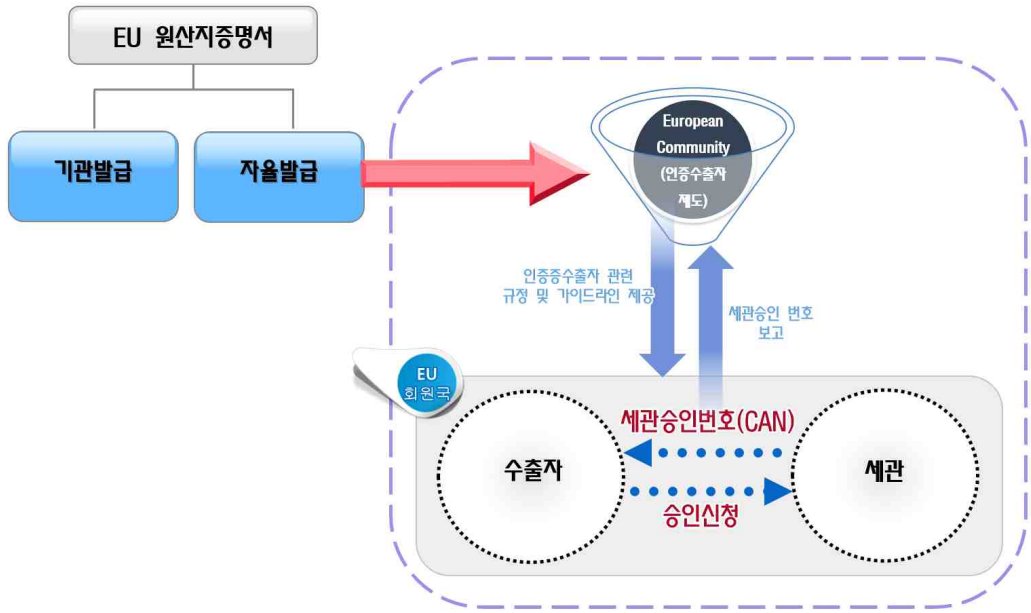

3. EU 원산지제도

가. EU 현행관세 법령 체계

(1) 관세법

EU 회원국은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관세 법령 및 시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CCC[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라는 관세법과 역시 1993년 제정돼 수차례 개정돼 온 시행규정으로서의 CCIP[Customs Code' 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이 존재하고 있다. 관세 법령은 특혜 및 비특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 사항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법령 위반시 조사·처벌 등은 개별 회원국 규율에 따른다.

EU의 원산지규정은 1968년 이래로 품목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물품의 원산지 개념에 관한 이사회규칙 (Regulation (EEC) No802/68)에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1992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종전의 이사회규칙 (Regulation (EEC) No802/68)을 폐지하고 원산지를 'EU 공동관세법'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에 편입시켜 규정하였다. 이로써 그간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던 공동체 관세법규 및 절차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41].

4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2014

한편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했다. 따라서 2016년 5월 1일부터는 EU 신관세법인 『Regulation(EU) NO 952/2013)』이 시행될 예정이다[42]. 신관세법은 통관환경 분석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당국 행정의 일관된 지침 및 EU 역내 무역업계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이행법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은 회원국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43]

(2)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도입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이른바 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을 전면 공포했다. 新관세법은 새로운 관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당국 행정의 통일된 지침 및 EU 역내 무역업계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이행법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은 회원국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구체화 하기로 명확히 했으며,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한편 UCC 전면 공표 (2013년) 당시에는 구체적인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동 발표를 통해 1개월을 앞당겨 5 월부터 전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최종결정하였다. EU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권한있는 세관 및 무역업계 등 관련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

42) http://ec.europa.eu/

43) 현재 운용되고 있는「Regulation (EC) No 450/2008」(Modernized Community Customs Code; 현대화유럽관세법),「Regulation (EEC) No 2913/92」(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Regulation (EC) No1207/2001)」는 2016년 5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다.

① 개요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화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을 대체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규정 UCC의 기본 내용 및 개념만이 공개됐을 뿐 전면 시행은 2016년 5월로 미뤄졌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기로 정했다.

또한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상당 부분 위임하기로 하고, 신관세법의 원활한 이행 및 수정 보완을 위해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임규정 및 실행규정 도입과 동시에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Electronic Transit System (ETS) 확대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 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이다.

신관세법에서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대하고 이외에도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UCC 개편과 함께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간편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44]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까지는 그간 적용되었던 관세법(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기로 밝혔다.

---

44) 코트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015

② EU 신관세법 원산지 관련 규정[45)]

EU 원산지규정 체계상 특이한 점은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원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산지 원칙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적용이나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관세법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EU 신관세법에 명시된 원산지 관련 규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6)]

한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그 국가 또는 역외에서 원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관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에서 원산지가 작성된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무역의 긴급 상황에서 요청되는 경우, EU차원에서 발행될 수 있다.

<표 IV-7> EU의 원산지 관련 新관세법 조항으로 수정

법령	비특혜분야	특혜분야
EU 관세법	59조 : 적용범위 60조 : 원산지취득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61조: 원산지증명 62조: 권한의 위임 63조: 이행권한	64조 : 특혜원산지 65조 : 권한 66조: 이행권한
	67조 : 위원회가 취한 조치(특정물품 원산지의 규정) 68조: 이행권한의 허여(제285조 4항에 따른 검사절차에서 이행법 채택)	

자료 :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116

45)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2015년 자료 인용하여 작성함
46) 주한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EU의 신관세법(UCC) 개요」(2013), P.15.

③ 전망 및 시사점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및 전자통관시스템(Electronic Transit System (ETS) 확대 계획(Work Programme)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EU 각 회원국 세관별 세관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Customs Union 2020'은 관세 2020은 회원국 관세당국이 정보와 전문지식을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EU 협력 프로그램이다. 유럽 전역의 국가 공무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뿐만 아니라 범유럽 주요 IT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Customs Union 2020은 2014-2020년 기간에 적용된다.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통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시초[47]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관세법 개편 내용이 종전에 운영되었던 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에 비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EU 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

EU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EU 관련 법규는 EU 관세법시행령(CCIP, Customs Code Implementing Provisions) Article 117에서 명시하고 있다.

47) 코트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015

제117조에 따르면 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시로 선적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인하고 본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보이스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세관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인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신고서에 적힐 통관인가 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또한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허가 받은 대상에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가사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구 분	영문	국문
CCIP, Customs Code Implementing Provisions) Article 117		제117조
	1.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8(2), and who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1. 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시로 선적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인하고 본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2. 세관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인가를 부여할 수 있다.

구 분	영문	국문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gn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3.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적힐 통관인가 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4.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가 이용을 감시하여야한다. 5.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자격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인증수출자 자격의 부여 및 유지

앞서 살펴본 EU 관세법시행령 (CCIP, Customs Code Implementing Provisions)과 마찬가지로 EU인증수출자 규정은 EU가 체결한 각 협정과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요건은 국내법을 따르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인증수출자의 요건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각국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지만, EU는 인증수출자 제도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는 A User's Handbook의 기록된 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내용이다.

구분	영문	국문

구분	영문	국문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An exporter seeking such authorisation must offer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을 "인증수출자"로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구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관세 당국에게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고, 이 프로토클의 다른 필요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2.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or on the invoice declaration EURO-MED.	3. 관세당국은 송장신고서에 기입할 인증수출자 관세당국 인증 번호를 허용해야 한다.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no longer fulfils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an incorrect use of the authorization.	5.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수출자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더 이상 제1항에 언급된 항목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혹은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구분	영문	국문
	The term “exporter“ may refer to persons or undertakings exporting from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ducers or traders, as long as they comply with all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rotocol. Customs clearance agents may not be granted approved exporter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tocol.	“수출자” 라는 용어는 이 프로토콜의 다른 조항을 따르는 한, 생산자 혹은 무역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들 혹은 기업을 의미한다. 통관 직원은 이 프로토콜의 의미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may be granted only after an exporter has submitted a written application. When examining this,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points: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만 부여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whether the exporter exports regularly: here, rather than focusing on a given number of consignments or a particular sum,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look into how regularly the operator carries out such operations;	■ 수출자가 정기적(regularly)으로 수출하는가 이 경우 관세당국은 특정 탁송품 수량이나 금액대신 정규 활동에 집중한다.
	- whether the exporter is at all times in a position to supply evidence of origin for the goods to be exported. In this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exporter knows the current rules of origin and is in possession of all the documents proving origin. In the case of producers, the authorities must make sure that the undertaking’s stock accounts allow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goods and, in the case of new undertakings, that the system they have installed will permit such identification. For operators who are traders only, examination should focus more specifically on their usual trade flows;	■ 수출자가 항상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경우 수출자가 현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관세당국은 반드시 재고계정(Stock Account)으로 상품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고, 신생 기어의 경우 설치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식별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무역업자로만 구성된 운영자의 경우, 통상적인 교역 흐름에 보다 집중해서 검토한다.

구분	영문	국문
	- whether, in the light of his past exporting record, the exporter offers sufficient guarantees concer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and the ability to meet all resulting obligations. Once an authorisation has been issued, exporters must:	수출기록을 바탕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실히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출자는 반드시
	- undertake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only for goods for which they hold all the necessary proof or accounting elements at the time of issue; -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way the authorisation is used, particularly for incorrect origin statements or other misuse of the authorisation; - assum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e person in the undertaking responsible for completing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knows and understands the rules of origin; - undertake to keep all documentary proofs of origin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that the declaration or invoice declaration was made; - undertake to produce proof of origin to the customs authorities at any time, and allow inspections by those authorities at any time.	■ 발급시 필요한 모든 증거나 회계 요소가 있는 상품에만 송품장신고서를 발급함을 약속해야 한다. ■ 승인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부정확한 원산지 진술이나 다른 승인지위남용을 책임진다고 가정 ■ 송장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과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는 인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 ■ 신고서가 작성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약속한다. ■ 언제든지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허용하며 관세당국은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정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The customs authorities must carry out regular controls on authorised exporters. These controls must ensure the continued compliance of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and may be carried out at intervals determined, if possible, on the basis of risk analysis criteria. The customs authorities must notify the	이러한 통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위 사용에 있어 규정을 부합함을 확실히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점검 빈도는 위험분석 기준을 근거로 정한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정에 사용된

구분	영문	국문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the national numbering system used for designating authorised exporters.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ill then pass on the inform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other countries.	국가번호를 위원회 측에 통보해야 한다. ECC 다른 회원국 관세당국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다.
	COMMENTS: An exporter is deemed to be the person or undertaking who either owns the goods or has the legal right to dispose of them. An exporter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the producer of the goods. An approved exporter is an exporter who has met with certain conditions impos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has thus been granted certain rights, by those customs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e proofs of origin he presents. In order to obtain that status an exporter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 approved exporter will only obtain that status when he has satisfied the customs authorities of his suitabilit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suitable, the customs may lay down whatever conditions they see fit and the exporter must comply with them. He must also give certain undertakings as requir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lease remember that the conditions imposed in one partner country may differ from those imposed in another. When an exporter has been approved by the customs they will grant him an authorisation number which he must quote on the invoice declaration. For their part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ner countries are obliged to inform the	**해설** 수출자는 상품을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인이나 기업으로 간주된다. 수출자는 반드시 상품 생산자일 필요는 없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부여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출한 원산지 증명에 대g여 특정 권리를 승인 받은 인을 말한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당국에게 자국법(national legislation)에 의거한 신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만 승인 받을 수 으며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수출자는 반드시 이에 부응해야 한다. 수출자는 반드시 이조 제1항에 요구된 사항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대국에 부과된 조건이 다른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수출자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송장신고서에 기입할 승인 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수출자에게 있어 상대국 관세당국은 위원회 측에 인증수출자 지정에 사용된 국가 번호를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반대로 위원회는 이 정보를 다른

구분	영문	국문
	European Commission of their national numbering systems used for designating approved exporters. The Commission in its turn will convey that information to all the other partner countries.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한다.
	Furthermore, the customs are obliged to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and should the approved exporter be found to have abused or misused his authorisation the customs are entitled to withdraw it. Another reason for withdrawing the authorisation is the inability of the exporter to offer the guarantees requir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또한 세관은 인증수출자 지위 사용을 감시하고 인증수출자 지위가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른 철회 사유로는 수출자가 이 조 제1항에 요구된 내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QUESTION: 1. WHAT ARE THE OBLIGATIONS INCUMBENT ON AN APPROVED EXPORTER?	**질문** 1. 인증수출자의 의무
	An approved exporter must have satisfied the customs authorities of his suitability before being granted that status. However, in order to re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the trader must undertake to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obligations:	인증수출자는 그 지위를 부여받기 전 반드시 관세당국으로부터 적격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a) An approved exporter must undertake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only for goods for which he has all the necessary proof of origin or accounting elements at the time of issue;	a) 인증수출자는 필요한 모든 원산지증명서나 회계 요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송장신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b) He must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use the authorisation is put to, including any misuse;	b) 인증수출자는 오용을 비롯한 승인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c) The approved exporter must ensure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completing the invoice declaration or the invoice declaration EURO-MED in the undertaking	C) 인증수출자는 송장신고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인은 원산지 규정을 이해함에 확인해야 한다.

구분	영문	국문
	knows and understands the rules of origin; d) The exporter must agree to retain the documentary proofs of origin for a period of at least 3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relevant declaration was made; e) When asked to do so by the customs, an approved exporter must agree to produce a proof of origin at any time and to allow inspections by the customs authorities. (RETURN TO CONTENTS)	d) 수출자는 반드시 신고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 세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인증수출자는 언제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세당국의 심사를 허용해야 한다.
	2. HOW CAN AN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An exporter who wishes to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customs. The customs have the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to satisfy themselves that an exporter is suitable before granting "approved exporter" status. Amongst the criteria to determine suitability are the following:	2.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인증수출자" 발급을 원할 때는 반드시 관세당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기 전 적합한 수출자임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적격성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The exporter must be regularly exporting the types of goods for which the authorisation is being sought and must have a good record with regard to previous exports;	가) 수출자는 반드시 승인을 구하는 상품 종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양호한 수출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The applicant exporter must be able to offer sufficient guarantees concer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and be able to meet any resulting obligations;	나) 신청 수출자는 반드시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 In the light of his record of previous exportations, the applicant must be in a position to supply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goods being exported;	다) 이전 수출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은 반드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d) In the case of an exporter who is also a producer, the authorities must be	라) 수출자가 생산도 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반드시 해당 상품 재고에서 상품 원산

구분	영문	국문
	satisfied that the undertaking's stock accounts allow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지 식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e) In the case of trader/exporters, the authorities will examine the usual trade flows to verify if they merit the granting of approved exporter status.	마) 무역업자/수출자의 경우,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적인 교역 흐름을 검토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EU 차원에서 '정기적(또는 빈번하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액수나 수출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세관당국이 해당 신청자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출을 실시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48] 신청자(수출자)는 수출되는 수출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 혹은 수출자가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수출자가 언제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닌 여부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현행 원산지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와 원산지 입증을 위한 모든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의 경우, 세관당국은 맡고 있는 재고계정(stock account)이 원산지 물품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새롭게 맡게 된 경우에는 정착된 시스템에 이러한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역업자의 경우 각 세관당국은 평상시의 교역량에 특히 중점을 두어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의 수출기록에 비추어 수출자가 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모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에서 신청자 혹은 수출자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원산지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48) 'A Un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p89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수출자에 대하여 세관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지정하며, 송품장 신고에 명시되는 세관승인번호(Customs Authorisation Number)를 부여한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 부여된 국가별 인증번호체계(National Numbering System)를 EC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2) EC 집행위원회는 세관당국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전달한다.

한편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이용하는 인증에 대하여 감독하는데, 만일 수출자가 세관당국에 지속적인 보증을 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원산지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인증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철회한다.

(2) 역외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원산지제도 및 특혜원산지제도에서의 공인수출입업체의 공인 절차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 1207/2001 of 11 June 2001)[49]법을 두어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50]

---

49) 본 규정에서는 첫째 EU와 특정국 간 특혜 무역에 관한 조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EU내에서 신고하거나 발행하는 사안과 EU내 여러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 문제, 마지막으로 EU회원국 간 행정협력 방안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0) 상기 규정에는 장기공급자신고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업체가 특정 고객에게 상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그 상품의 특혜원산지규칙 관련 상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하며, 이러한 '장기공급자'신고서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본 규정 제8조는 수출자가 소재지에서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영외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는, 수출자의 소재지가 있고[51], 다른 회원국 경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문서대장에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인증수출자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 모두에게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세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는 신청서 및 신청서 내용은 각국 세관 당국이 정한 국내법(national legislation)에 의해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제8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 행정 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영문	국문
제8조	Article 8 Approved-exporter authorization 1. An exporter who frequently exports goods from a Member State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is established may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covering such exports. For that purpose,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ustoms	제8조 인증수출자의 허가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51)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문서대장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	영문	국문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is both established and keeps the records containing the evidence of origin.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satisfied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origin Protocols to the relevant Agreements or in the Community legisl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preferential regimes are fulfilled, and issue the authorisation, they shall notif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

EU는 28개 국으로 구성된 단일영역이다[52]. 이에 따라 EU는 역외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 이외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아래는 수출자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으나 최종 수출은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사례이다.

프랑스에 위치한 수출자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네덜란드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거기에서 자동차를 제3국으로 수출. 제조공장이 프랑스에 소재하며, 제시된 원산지결정기준에 자동차가 충족한다는 증명을 행정

52) EU(유럽연합회원국)은 1958년의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바탕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EU 공통관세법을 함께 살펴보면 1951년 최초의 회원국이었던 6개 국가(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공통시장과 상품 교역이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이 6개 국가들을 시작으로 공통관세에 대한 책임이 부여 되었으며, 1992년 Community Customs Code 완성되었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함에 따라 EU의 회원국은 총 28개 국가가 되었다.

문서대장에 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프랑스 관세청이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권자가 된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수출을 하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네덜란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이 그 중앙 관할 부서이다. 따라서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수출될 물품에 대하여 영외 '인증수출자' 인증 허가가 다른 회원국에서 부여될 때에는,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의 중재를 통해, 네덜란드에서의 관련 업체에 대하여 상호와 주소, 소재지를 통보하게 해야한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발급된다면, 다른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정보를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보내 다른 회원국에서의 관련업체의 인증번호, 상호, 주소, 소재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관세 당국이 그에 대한 준수를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수출되고 수출절차가 시행된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수출자가 네덜란드에서 수출할 경우 프랑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네덜란드 세관당국은 이와 아무 연계가 없다.

또한 EU측의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 사례는 국내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EU측의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은 EU 회원국 어느 나라 확장 가능성 및 범위, 허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자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으나, 최종 수출국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 사례는 비교적 단순하나 이를 확대해석해 보면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회사가 네덜란드 이외 지역에서도 인증수출자 지위를 이용하여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국내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다. 따라서 EU회원국별 인증수출자 제도 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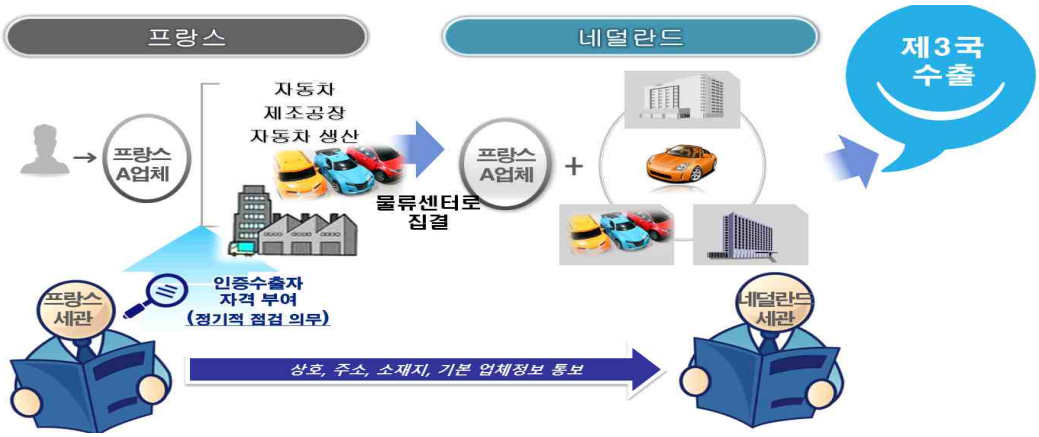
프랑스
네덜란드
제3국
수출
자동차
제조공장
자동차 생산
프랑스
A업체
물류센터로
집결
프랑스
A업체
+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정기적 점검 의무)
프랑스
세관
네덜란드
세관
상호, 주소, 소재지, 기본 업체정보 통보

4.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근본적인 내용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관세법 및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혜원산지규정 및 인증수출자(Toegelaten Exporteu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특혜 규정에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송품장 신고) 작성을 하기 위한 인증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인증수출자' 라고 한다.

수출자란 다음을 뜻한다.

□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써, 원산지에 대한 내용(성격, 특성) 표시된 회사(생산자)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자신의 행정업무에, 적용된 협정의 맥락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공급자).

□ 통관 대행자(douane-expediteurs')는 생산자로도 공급자로도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통관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와 마찬가지로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 다른 장소에 소재한 '인증수출자' 의 대리인 역할을 물론 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로 지위를 획득한 경우 수출자의 행정업무 외에도 회사의 행정조직업무 또한 매우 중요하게 따르게 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관련 답변이 요구되는 중요한 질문에서,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며, 내부 점검(내부 관리)이 시행되고 있는지의 문제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에게는, 수출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합성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통관환경에서, 원산지 관련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네덜란드 역시 EU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에 적합한 자 빈번한(veelvuldig) 수출활동을 하는 수출자로 자격을 획득한다.. 이 요건은 수출자가 기타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근거하여 이미 서류상 검증된 경우 또는 전자 신고 현지통관절차 수출 인증수출자 자격[53]를 소지한 경우에서와 같이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세관에서 정한 신청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세관 홈페이지[5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아래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의 개요가 나와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접수 시, 올바른 세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지 판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청은 일반관세규칙 제1:4조, 2003 국세청 수출규칙 제 5조 7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을 한 수출자에게, 요청 사항의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로 신청하기 위해 수출자는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에서 발급받은 최근 상업등기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호(EORI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53) 사전지정을 받으면, 물품을 직접 세관에 가져가지 않고, 전산망으로 신고하는 현지통관절차로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합니다.

54) www.kvk.nl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심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 상공회의소의 정보[55]
-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56]
- 수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초기 조사

특히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O-MED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55)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획득의 일부분으로서,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O-MED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kvk.nl)에서 찾을 수 있다.

56)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 기타 통관절차에 관한 점검보고서와 같은, 수출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자의 역내가공절차 허가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그 경우에 행정문서대장에서 수출시 관세미환급(no drawback)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시 관세미환급 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 네덜란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과정[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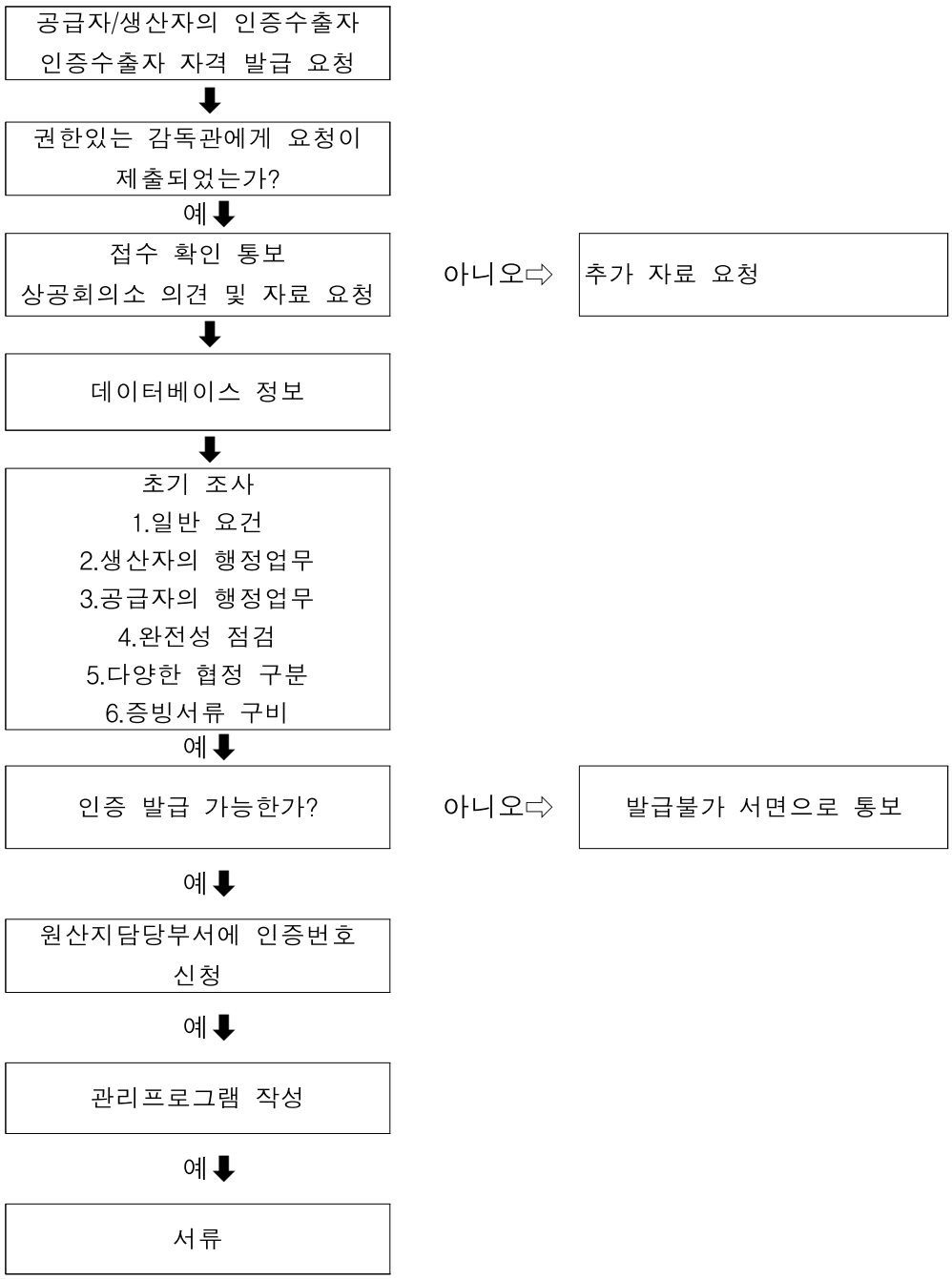

57) 참고1 참조

네덜란드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서식집(Modellenboek)'에서 확정된 인증수출자 자격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한다.[58]

'인증수출자' 지위는 해당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고서에 확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항소 가능한 결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43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7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인증수출자 관리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과 동시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점검 빈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역할을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업체의 특성 : 제품종류 및 제조공정이 일정한 생산자는 품목 변화가 많은 공급자보다 점검빈도가 낮게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현재 공장 인근에서 확보한 강의 진흙으로 타일을 제조하고 있지만, 갑자기 제3국의 진흙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도, 원산지결정기준에 항상 충족하게 될 것이다.

- 물품의 특성 : 예를 들어 생산자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제작할 때, 원산지는 가격기준(예를 들어 40% 규정)이 적용될 때보다 변경되기 쉬울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납품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한

58) 팩스(팩스번호(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의 내부 이메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NAW-자료), EORI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요청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 (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의해 부여된다.

재료로 인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은, 예를 들어 축소된 이윤폭과 연료 및 환율 파동에 의해 비원산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다.

-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7년)
- 납품자 신고서의 유효기간 (최대 1년)
- 정보자료 INF4를 통한 납품자 신고서 테스트

② **서류**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 조사 보고서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와 주고 받은 문서
-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자격서
- 관리 프로그램
- 정기 점검 보고서
-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사후 점검 요청에 관한 보고서 및 통신 문서

③ **정기점검**

'인증수출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점검은 점검 프로그램에 부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납품자 신고서에 대한 점검 또한 정기점검의 일부분이다.

점검 소견은 보고서로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그 보고서 사본(공개된 부분)을 받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해당 인증기간 동안에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였음이 명시될 경우, 보고서 사본을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에 송부하여야 한다. LTO는,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통관지정국의 세관 당국에 전달할 지 여부를 (필요시 점검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점검 공무원에게는 이 정보 전달 사항이 제공된다.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결정되면,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LTO로부터 이의신청 가능 결정 사항을 통보받는다.

④ 인증수출자 허가 취소

모든 특혜 규정에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원산지 점검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수출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허가서에 제시된 특별 조건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인증수출자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허가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행정업무가 요건에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에 연관된 제한사항 또는 지시시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A.TR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가 지속적으로 부주의함을 보일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는 항소 가능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제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1:1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⑤ **검증**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또는 무작위 선정에 의해, 외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인증수출자에 대해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먼저 LTO에 접수된 다음, 인증수출자의 관할소재지의 원산지 전문가에게 통보된다. 외국의 관세 당국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정기점검과는 구별된다. 여러 협정의 의정서에 기재된 기간과 연계하여, 조사는 늦어도 요청 접수 후 6개월에는 사후 검증이 마감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 사후 보고서는 조사 소견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물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이전 시기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들에도 이러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는지 심층 조사해야 한다.

수출시 그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 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이 지침서의 2.3.33, 16.00.00의 일부분, 9.1.3.~9.1.8. 참조), 환급금지 (no drawback) 규정을 만족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역내가공으로 취득한 물품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일 때에는 더욱이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16조에 따른 관세 벌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급금지(no drawback) 규정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관세 면제는 여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관세 면제 수혜 포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을 뜻한다.

보고서는 사후 검증 요청 접수 후 즉시-6개월 이내까지라 하더라도 - LTO에 송부해야 한다. LTO는 보고서를 평가하고 외국의 검증요청에 회신한다. LTO의 평가에 따라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점검 공무원의 결론이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LTO는 보고서에 질문사항 또는 의견을 보충하여 돌려보낸다.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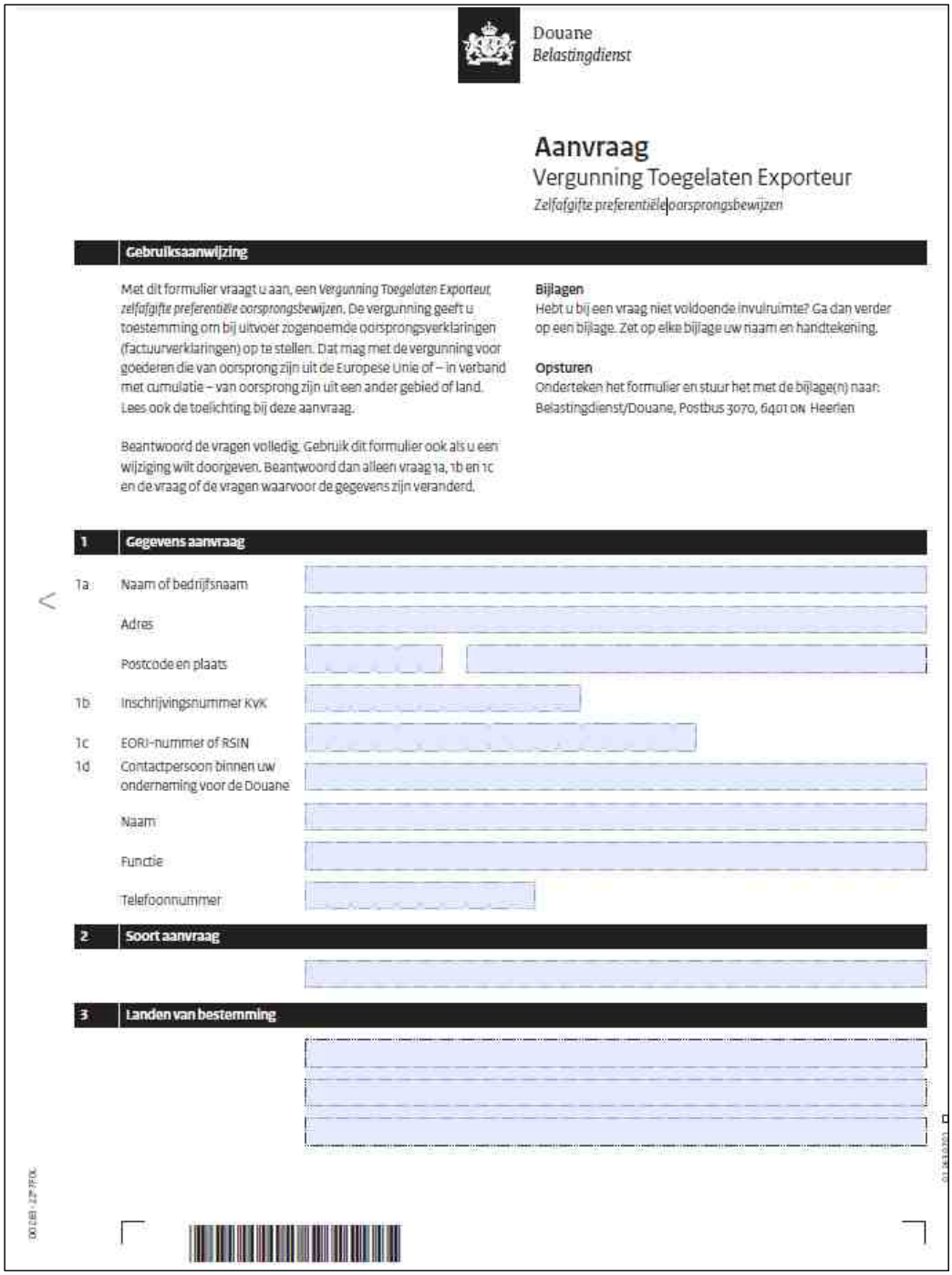

Douane
Belastingdienst

Aanvraag
Vergunning Toegelaten Exporteur
Zelfafgifte preferentiële oorsprongsbewijzen

Gebruiksaanwijzing

Met dit formulier vraagt u aan, een *Vergunning Toegelaten Exporteur zelfafgifte preferentiële oorsprongsbewijzen*. De vergunning geeft u toestemming om bij uitvoer zogenoemde oorsprongsverklaringen (factuurverklaringen) op te stellen. Dat mag met de vergunning voor goederen die van oorsprong zijn uit de Europese Unie of – in verband met cumulatie – van oorsprong zijn uit een ander gebied of land. Lees ook de toelichting bij deze aanvraag.

Beantwoord de vragen volledig. Gebruik dit formulier ook als u een wijziging wilt doorgeven. Beantwoord dan alleen vraag 1a, 1b en 1c en de vraag of de vragen waarvoor de gegevens zijn veranderd.

Bijlagen
Hebt u bij een vraag niet voldoende invulruimte? Ga dan verder op een bijlage. Zet op elke bijlage uw naam en handtekening.

Opsturen
Onderteken het formulier en stuur het met de bijlage(n) naar: Belastingdienst/Douane, Postbus 3070, 6401 DN Heerlen

1 Gegevens aanvraag

1a Naam of bedrijfsnaam
Adres
Postcode en plaats
1b Inschrijvingsnummer KvK
1c EORI-nummer of RSIN
1d Contactpersoon binnen uw onderneming voor de Douane
Naam
Functie
Telefoonnummer

2 Soort aanvraag

3 Landen van bestemming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관세국(Douane) 국세청(Belastingdienst)		
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자격 특혜원산지증명자율발급 신청		
사용설명 이 서식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특혜원산지 증명 자율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인증수출자 자격은 이른바 원산지 신고서(송품장 신고서) 작성 수행에 대한 승인을 제공합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거나-누적 관련하여 - 기타 지역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위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안내 설명 또한 읽어주십시오.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주십시오. 변경사항 통보 시에도 이 서식를 사용하십시오. 그때는 질문 1a, 1b, 1c와 질문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첨부서류** 질문에 대한 기입난이 충분하다면 첨부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첨부서류마다 귀하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송부** 신청서에 서명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Belastingdienst/Douane,Postbus3070,6401 DNHeerlen
1. 신청인 기본 정보		
1a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우편번호 및 소재지	
1b	상공회의소 등록번호	
1c	EORI 번호	
1d	원산지관리 전담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2. 신청종류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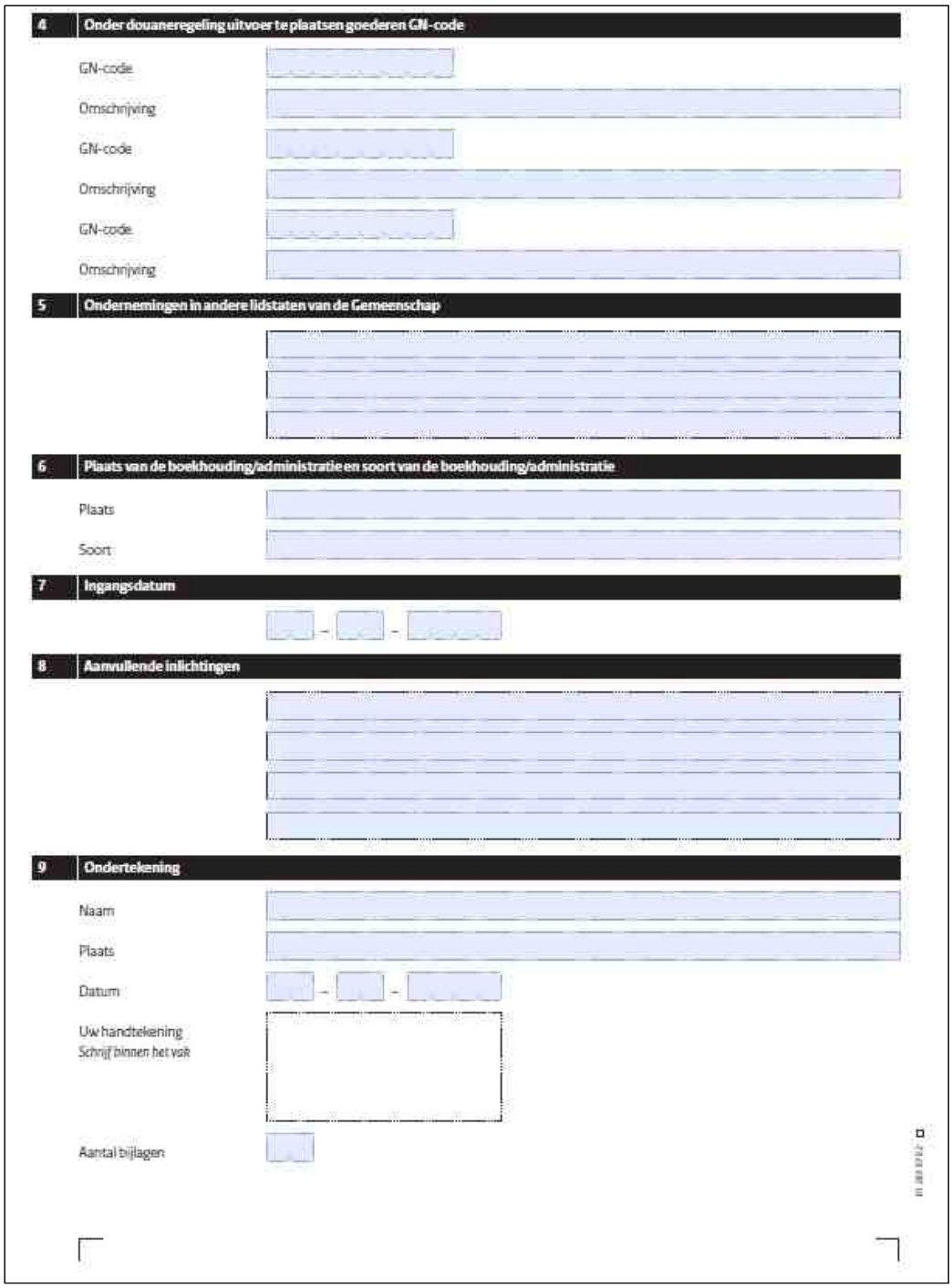

4 Onder douaneregeling uitvoer te plaatsen goederen GN-code

GN-code
Omschrijving
GN-code
Omschrijving
GN-code
Omschrijving

5 Ondernemingen in andere lidstaten van de Gemeenschap

6 Plaats van de boekhouding/administratie en soort van de boekhouding/administratie

Plaats
Soort

7 Ingangsdatum

8 Aanvullende inlichtingen

9 Ondertekening

Naam
Plaats
Datum
Uw handtekening
Schrijf binnen het vak
Aantal bijlagen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4. 관세규정 하에 수출을 시행하는 HS-CODE
HS-code
설명
HS-code
설명
HS-code
설명
5. 기타 EC회원국 내 업체
6. 회계/행정업무 소재지 및 회계/행정업무 종류
소재지
종류
7. 허가서 사용 개시일(Ingangsdatum)
8. 추가정보
9. 서명
서명
거주지
일자
귀하의 서명 *칸 안에 서명하시오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Toelichting bij de aanvraag voor een Vergunning Toegelaten Exporteur, zelfafgifte preferentiële oorsprongsbewijzen

1 Aanvrager

1a Vermeld de volledige naam en het volledige adres van de aanvrager. De aanvrager is degene aan wie de vergunning moet worden afgegeven.

1c Vermeld uw EORI-nummer. Uw EORI-nummer bestaat uit uw RSIN met een aanvulling. Heeft u nog geen EORI-nummer? Vul dan uw RSIN in.

1d Vermeld de naam, de functie en het telefoonnummer van de persoon met wie de Douane contact kan opnemen.

2 Soort aanvraag

Ten minste een van de volgende codes moet worden gebruikt:

1 = eerste aanvraag

2 = aanvraag voor wijziging van de vergunning (onder opgave van het nummer van de desbetreffende vergunning)

3 = aanvraag voor een grensoverschrijdende vergunning

3 Landen van bestemming

Vermeld de voorziene landen van bestemming van de door (of namens) uw onderneming uit te voeren goederen waarvoor zogenoemde oorsprongsverklaringen zullen worden opgesteld.

4 Onder douaneregeling uitvoer te plaatsen goederen GN-code

Vermeld de volledige code volgens de gecombineerde nomenclatuur (acht cijfers).

Omschrijving

Geef de handelsomschrijving en/of technische beschrijving.

5 Ondernemingen in andere lidstaten van de Europese Unie

Vermeld de volledige naam en het volledige adres van de onderneming(en) die in de andere lidsta(a)t(en) van de EU is (zijn) gevestigd die zogenoemde oorsprongsverklaringen zullen opstellen op basis van uw vergunning.

Noot: Alleen invullen als uw aanvraag betrekking heeft op een grensoverschrijdende vergunning.

6 Plaats van de boekhouding/administratie en soort boekhouding/administratie

Vul de plaats in waar de boekhouding wordt bijgehouden. Dit is de plaats waar de handels- en belastingdocumenten en andere boekhoudkundige bescheiden van de aanvrager worden bewaard of waar dergelijke stukken namens hem worden bewaard. Vermeld ook het soort boekhoudsysteem dat wordt gebruikt.

Vermeld ook de te gebruiken soort administratie (voorraadadministratie). Administratie betekent: de gegevens die alle nodige informatie en technische bijzonderheden bevatten aan de hand waarvan de douaneautoriteiten de zogenoemde factuurverklaringe kunnen controleren.

7 Ingangsdatum

Vermeld de datum waarop de vergunning in werking zou moeten treden.

8 Aanvullende inlichtingen

Vermeld alle andere gegevens die in verband met de hiervoor vermelde vragen nuttig worden geacht.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인증수출자, 특혜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시 안내 설명
1 신청자
1a 신청자의 성명 전체 및 주소 전체를 기재합니다. 신청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받는 당사자입니다.

1c 귀하의 EORI 번호를 기재합니다. 귀하의 EORI 번호는 귀하의 RSIN과 추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EORI 번호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귀하의 RSIN을 기입하십시오.

1d 관세청(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의의 성명, 직책,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신청의 종류
적어도 다음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1 = 첫번째 신청
2 = 인증수출자 자격의 변경 신청 (해당 인증수출자 자격의 번호 제시)
3 = 영외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3 통관지정국

이른바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물품으로써, 귀하의 업체에 의해(또는 대신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지정국이 될 국가를 기재하십시오.

4 관세규정 하에 수출이 시행되는 물품의 GN 코드 (8자리)

GN 코드 전체를 기재하십시오.
(*번역자 주 : GN 코드(Gecombineerde nomenclatuur)는 HS코드를 세분류한 네덜란드의 품목분류코드)

설명
교역에 대한 설명 및/또는 기술적 설명을 쓰십시오.

5 유럽연합 기타회원국에 있는 업체

기타 EU 회원국에 소재한 업체로써, 귀하의 인증수출자 자격에 근거하여 이른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업체의 상호 전체 및 주소 전체를 기재하십시오.
주 : 귀하의 신청이 영외 인증수출자 자격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하세요.

6 회계/행정업무의 소재지 및 회계/행정업무의 종류

회계관리가 수행되는 위치를 기입하십시오. 이는 신청자의 상업 · 세금서류 및 기타 회계문서가 보관되거나 그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서류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용 중인 회계시스템의 종류 또한 기재하십시오.

사용 중인 행정문서대장(재고행정관리)의 종류도 기재하십시오.
행정문서대장이란, 관세당국이 이른바 송품장 신고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요한 모든 정보 및 기술적 특이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말합니다.

7 개시일자

인증수출자 자격이 효력을 발휘해야 할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8 추가 정보
기재된 질문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든 기타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나. 독일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독일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세관에서 하고 있다.[59]

독일의 상공회의소(IHK)는 현재 80여개의 IHK가 존재하며, 중심 기관으로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DIHK, Association of 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이 독일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다.

독일의 다른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수공예 관련 사업(handicraft business), 프리랜서(free professions), 농업(farms)를 제외한 모든 등록 기업은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제6대 사업 분야는 지역 발전, 창업과 기업 프로모션, 직업 훈련, 혁신성과 환경, 국제 업무, 법적 문제와 공정성 등이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인증 수출제도 설명서(Merkblatt ermähtigter Ausfürer(Version 20. Januar 2015)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본 설명서는 신청 절차뿐 아니라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혜증명의 간소화 청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특혜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동의자가 “인증수출자”로서 법적으로 개입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그러나 광범위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청 절차 이외에도 업체 내부의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이 요구되고 이는 기업 구성원에의 지시사항을 나타내며, 관련 경영절차, 문서작성 및 책임소재의 확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9) 유럽공동체관세법(The Community Customs Code) EC Regulation No 2913/92의 관세법 집행규칙인 EC Regulation No 2454/93에 따라 독일의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독일의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독일의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신청 절차뿐 아니라 간략한 근로 및 조직 지침(A&O: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활동 과정을 문서화하는 작업과 기업의 최근 정보 기록을 확약하는 작업,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을 통해 문의한 후 개별 신청서 작성 필요하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① 인증수출자 권리

대부분의 특혜규정에는 “인증수출자” - 짧게는 (EA,ermähtigter Ausfürer) 로서의 특혜 제시 간소화 청구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가 해당 세관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수출자는 자체 인증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 수출가치와 관계없이 특혜법적인 원산지 증명을 자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그리고)
- 터키와의 무역교류(관세 동맹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있어서 사전 인증되거나 특별 스탬프 인쇄로 인증된 movement certificate(Certificate (EU 역내 또는 EU 가 FTA 체결시 EUR.1 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한 - EU FTA 와는 관련 없음) A.TR.을 사용할 수 있다.
- 동의권의 소유자로서 인증수출자는 세관을 통해 movement certificate A.TR, EUR.1 또는 EURO-MED 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과의 무역교류에 있어서는 원산지 증명이 견적에 독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품목의 가치가 6,000유로를 넘어설 때에는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가 필히 요구된다.

② 인증수출자의 의무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 획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가 뒤따른다.

첫째,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자유 유통 시점에 서명된 상품에 한해서만 사전준비된 무역인증서 A.TR.을 사용해야 한다(세법에 있어서의 “공동 품목”)

둘째 견적서에서의 원산지 증명은, 그 작성 시점에 각각의 특혜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관리 대장과 영수증을 통해 항상 원산지 증명 지위 및 터키의 수출에 있어서는, 장외 시장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절차의 적절한 활용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요구되는 지식과 업체 내부적인 관리 가능성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증수출자에 의해 특혜증명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복사본과 관련 문서들을 주어진 시기 이내에 보관하고 세관의 보관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 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셋째에게 특혜 증명 작성 규정의 준수하고 있음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업체 외부 검사와 기타 감독 조치도 포함한다.

독일에서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특정 신청 양식은 없다. 신청은 해당 세관에서 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업체가 위치해 있는 곳의 관할 세관을 말한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표 IV-8>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서류	상업등기 서류 또는 영업신고증 작업 및 조직운영지침 (이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조)
기입사항	업체명 및 주소지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주소지와 특혜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보관 주소지 유럽연합 이내 다른 나라의 주소지 또는 발송/운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하고, 해당 주소지와 국가도 기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 업체(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등록번호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는 보세창고 등록 번호 기재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간소화 절차 청구 예정인 월별 수출위탁 추정횟수와 존재할 경우 무서명 약정서
서명	EA(Ermähtigter Ausfürer)로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사 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EA 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 시 다음 전문을 통해 약정서 실행 선언을 해야 한다. “본 서명자는, 견적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증명 책임을 지며, 이로써 모든 필사 서명을 대신한다.(장소, 날짜, 서명”)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고자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제 조건 :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 “)을 두고 있다. “인증수출자” 는 업체 내부 조직을 통해 원산지 특성을 확실히 검사하고 감독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 AuO). AuO 는 업체 내부의 절차를 문서화 하는 한편, 관할 관세청에 업체의 최신 정보현황의 문서화를 제공한다. 60)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에 따르면 AuO 에 의해 만족되어야 할 최소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EA 는 업체 내부 조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0)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에 따르면 AuO 에 의해 만족되어야 할 최소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 특혜적인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만 견적서에 원산지 증명을 포함해야 하며

• 자유 유통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Movement Certificate을 적용시켜야 한다.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는 원산지 기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특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작업 및 조직 지침서가 - 이하 AuO가 조직내부의 절차 지시로서 작용한다. 이후 AuO는 인증수출자 허가의 구성요소가 되며, 업체 당사자 관련 조치로써, 특혜법적인 관점하에 절차 방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AuO를 통한 최소 요청 사항, 즉 기본 인증수출자 선정 조건

- 특혜권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총 책임자 명명
- 기업 활동의 종류(회사 소개 자료 등)
- 품목에 따른 원재료 내역
-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소재국 기입 및 해당 혜택 관련 규정
- 원산지 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 서류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공급자 증명과 관련된 요구사항, 평가 및 원산지 증명 작성 대장 비치)와 기타 중요 서류 (제품 생산공정 증명서 등)
- 원산지 확인 서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증명을 갖춘 원산지관리 책임자 명명

자료: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Bitte Zutreffendes ankreuzen ☒ oder ausfüllen

Eingangsstempel

Aufstellung betrieblicher Grunddaten zur Beantragung der Bewilligung einer Vereinfachung bei der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Ermächtigter Ausführer)

I. Allgemeine Angaben

1. **Antragsteller** (Name oder Firma, Anschrift (Sitz) lt. Handelsregistereintrag) — EORI-Nummer

2. **Gesamtverantwortlicher für die ordnungsgemäße und rechtskonforme Umsetzung der Bewilligung** — **Telefon, Fax, E-Mail**

3. **Verantwortlicher für die Ausfertigung und Unterzeichnung der Präferenznachweise** — **Telefon, Fax, E-Mail**

4. **Art der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Handel und/oder Produktion)**

5. **Ort an dem die Hauptbuchhaltung geführt wird** (genaue Anschrift)

6. **Ort, an dem die Unterlagen zu Präferenzzwecken aufbewahrt werden** (genaue Anschrift)
   - ☐ zentral (genaue Anschrift)
   - ☐ bei folgenden (rechtlich nicht selbständigen) Betriebsstätten bzw. Orten (genaue Anschrift ggf. mit EORI-Nr.):
   - ☐ siehe Anlage

7. **Die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erfolgt**
   - ☐ manuell
   - ☐ per EDV; eingesetzte/s Verfahren/Software:

   und
   - ☐ zentral (genaue Anschrift)
   - ☐ bei folgenden (rechtlich nicht selbständigen) Betriebsstätten bzw. Orten (genaue Anschrift ggf. mit EORI-Nr.):
   - ☐ siehe Anlage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특혜증명서발행간소화동의신청 (인증수출자)	해당시 x 표시 또는 기입
	개시 스탬프
1.일반항목	
1.신청자(성명 또는 상호명, 주소지, 상업등기번호)	EORI - 번호
2.원산지전담 관리자	전화, 팩스, 이메일
3.특혜증명서의 완성 및 서명 책임자	전화, 팩스, 이메일
4.업체 비즈니스 행위 종류 (영업/생산)	
5.중앙회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정확한 주소지)	
6.특혜 효력 문서 보관 장소 (정확한 주소지) 중앙(정확한 주소지) 다음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정확한 주소지, 필요한 경우 EORI 번호 첨부서류 확인	
7. 원산지 특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EDV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앙에서(정확한 주소지)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에서(정확한 주소지, 필요한 경우 EORI번호) -첨부서류 확인 요망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8. **Voraussichtliche Anzahl der monatlichen Exportsendungen, für die die Vereinfachung in Anspruch genommen werden soll**

9. **Bereits bewilligte Vereinfachungen und aktive und passive Veredelung oder Zugelassener Wirtschaftsbeteiligter (AEO)**
(Art, Zollstelle, Bewilligungsnummer)

10. **Wir beantragen Präferenznachweise im Einzelverfahren seit**

und haben bisher im Monat bei präferenzbegünstigten Ausfuhren durchschnittlich folgende Nachweise ausgestellt:

Ursprungserklärungen/Ursprungserklärungen EUR-MED (bitte Anzahl eingeb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EUR.1/EUR-MED (bitte Anzahl eingeb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bitte Anzahl eingeben)

11. **Der Gesamtverantwortliche besitzt ausreichende Kenntnisse im Präferenzrecht seit**

und hat an folgenden Schulungen/Fortbildungen teilgenommen:

II. Angaben zu Warensendungen, die mit Präferenznachweis ausgeführt werden (EUR.1/EUR-MED/Ursprungserklärung/A.TR.)

12. **Ich beantrage die Verwendung von:**

☐ vorausbehandelt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 mit Sonderstempeleindruck versehen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im Warenverkehr mit der Türkei (für andere als EGKS-Erzeugnisse und Waren, die nicht unter die Handelsregelung für Agrarwaren fallen).

(Hinweis: Der ***Sonderstempeleindruck*** darf nur von einer zugelassenen Druckerei vorgenommen werden, die Überprüfung des Probeabdrucks erfolgt durch das bewilligende Hauptzollamt.

13. **Verpackungs- und Verladeorte** (nur anzugeben bei Warenausfuhren im vereinfachten Verfahren mit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falls Ziffer 12 beantragt wurde)

Die Vorabstempelung soll erfolgen:

☐ zentral (genaue Anschrift) zuständige Zollstelle:

☐ bei folgenden (rechtlich nicht selbständigen) Betriebsstätten bzw. Orten (genaue Anschrift ggf. mit EORI-Nr.): zuständige Zollstelle:

☐ siehe Anlage

Seite 2 von 3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8. 간소화가 적용되어야 하는 수출 월별 예측 횟수
9. 이미 승인된 간소화 및 내부/외부화 또는 AEO(Approved Economic Operator) (형태, 세관, 승인번호)
10. 우리는 특혜 증명서의 개별 절차를 …(시점)으로부터 진행했으며 특혜 인증 수출의 경우, 달마다 평균적으로 다음 증명서를 제시했다. (원산지증명/원산지 증명 EUR-MED(횟수/부수 기입) Movement Certificate Eur.1/Eur-MED(횟수/부수 기입) Movement Certificate A.TR. (횟수/부수 기입)
11.총 책임자는 ….(시점)부터 특혜법에 능통하며 다음과 같은 기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특혜 증명을 통해 수출되는 배송물에 관한 진술(EUR.1/EUR-MED/원산지증명/A.TR.)
12.다음 증명서의 사용을 요청한다. □ 사전 승인된 movement certificate A.TR. □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 터키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우뭇가사리 협정에 포함된 EGKS - 재료 및 생산품 제외) (참고: 특별 스탬프 인쇄는 사전승인된 인쇄업체의 것이어야 하며, 시범 인쇄의 검사는 승인을 맡은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13.포장 및 적재 장소(Movement Certificate A.TR의 간소화 수출의 경우에만, 12번 항목이 요청된 경우에만) □ 사전 스탬프 인쇄는 다음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에서(정확한 주소지) 관할 세관: □ 다음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 관할 세관: □ 첨부 서류 확인 요망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14. **Die Vereinfachung soll in Anspruch genommen werden für die Ausstellung von:**

☐ Ursprungserklärungen mit allen Ländern für die das Verfahren vorgesehen ist

☐ Ursprungserklärungen EUR-MED mit allen Ländern für die das Verfahren vorgesehen ist

15. **Art und Beschaffenheit der Waren, die regelmäßig ausgeführt werden (mit Angabe der HS-Position)**

☐ siehe Anlage

16. **Die Ausfuhrwaren sind**

☐ Waren aus Eigenproduktion ☐ Handelswaren

17. **Antrag auf „Unterschriftsverzicht"** (nur ausfüllen, falls gewünscht siehe Merkblatt „Ermächtigter Ausführer" Seite 3)

„Ich, der Unterzeichner, verpflichte mich, die volle Verantwortung für jede Erklärung auf der Rechnung oder anderem Handelspapier zu übernehmen, die mich so identifiziert, als ob ich sie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hätte."

Ort, Datum, Unterschrift und Name:.....

18. **Ich versichere die Richtigkeit der Angaben.**

Ort und Datum	Unterschrift u. Name des Gesamtverantwortlichen in Druckbuchstaben
Ort und Datum	Unterschrift u. Name der Geschäftsleitung in Druckbuchstaben

Anlagen:

Formloser Antrag auf Bewilligung einer Vereinfachung bei der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Ermächtigter Ausführer) (2-fach),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 (2-fach),
ausgefüllter Vordruck „Aufstellung betrieblicher Grunddaten",
Musterrechnung mit Ursprungserklärung bzw. Ursprungserklärung EUR-MED,
ggf. Kalkulationsschema und Langzeit-Lieferantenerklärung

Seite 3 von 3

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14.간소화 승인은 다음 증명서에 대해 청구되어야 한다.
□ 절차가 적용될 모든 국가 관련 원산지증명서
□ 절차가 적용될 모든 국가 관련 EURO-MED 원산지증명서

15.규칙적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 첨부서류(문서) 확인

16. 수출 품목은
□ 자체 생산된 품목이다.
□ 영업 품목이다.

17.“서명 생략” 신청(“인증수출자” 매뉴얼 3페이지 참고, 원할 경우에만)
“나 서명자는 모든 회계서와 경영 문서에 대해 필사 서명을 했을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질 것을 선언한다. “

장소, 날짜, 서명 및 성명 : …….

18. 본 기재 항목의 정확성을 입증한다.

……. …… ……

장소와 날짜 총 책임자 서명 및 성명, 인쇄체로

…… …… …….

장소와 날짜 총 책임자 서명 및 성명, 인쇄체로

첨부서류:

특혜증명서 발행 간소화 승인에 대한 무형식 신청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AuO) (2부)
문서 서식 “업체 기본 데이터 발행”(채워진 채로)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증명 EURO-MED 회계 견본
필요한 경우, 평가 도식 그리고 장기 공급자 확인서

다. 영국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영국상공회의소(BBC: British 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영국 국세관세청의 원산지발급사무소(HMRC: HM Revenue and Customs Central Issuing Office)에서 발급하고 있다.

EU 회원국가 마다 원산지 관련 이행 규정이 다르긴 하나 EU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의 위임을 선호하지는 않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의 책임 하에 발행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영국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HMRC 인증수출자 신청양식을 작성하게 되며, 신청비용은 우편비용과 같은 단순한 행정비를 제외하면 별도로 요구되는 비용은 없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영국 역시 EU회원국으로 공통이사회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인증수출자는 EUR.1 대신 금액에 제한 없이 인보이스 신고서를 작성할 있다. 수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수출할 의사가 있고,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증수출자 허가를 신청할 있다. 영국 HRMC의 지역 사무소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세관은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보이스 신고서에 작성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영국의 원산지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Guide to Importing & Exporting breaking down the Barriers(2009년) 본문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내용은 A Guide To Export Procedures Section iii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61]. 그러나 동규정은 NOTICE 827로 개정되었고, 영국 수출입관한 내용은 동 법규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EUR1, APPROVED EXPORTER 관련 자세한 조건을 Notice 827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 허가(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는 영국 HMR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마련하여 인증수출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9> 영국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Rules)[62]

구분	주요 법적근거
1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s-Section 5&20
2	CIP (11) 67 Tariff Preference- More About Approved Exporter Applications
3	CIP (11) 15 Tariff Preference New EU -South Korea Agreement Approved Exporter Requirement

자료: http://www.strongandherd.co.uk/

먼저 영국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관세법상 따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HMRC가 제공하는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유럽연합특혜수출절차 5.1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시 비교적 완화된 개념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61)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62) http://www.strongandherd.co.uk/

먼저 section 5.1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소개 및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section 5.3에 부분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획득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세당국이 아래 사항을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역시 EU공통회원국에 적용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한다는 것, 둘째 수출대상상품이 특혜문서의 발급에 적합한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 셋째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적절히 보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서' 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한 다음 작성하여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로 제출해야 한다.

〈표 IV-10〉 영국 유럽연합특혜수출절차 Notice 827

구 분	영문	국문
Notice 827	《ECEP02150 - Control: approved exporters (Notice 827 - section 5)-HMRC》 Simplified Procedures for Approved Exporters. 5.1 Are there any special arrangements for traders who regularly export to preference giving countries? Yes. If you are a regular exporter you may qualify to become an 'approved exporter'. This means that subject to our authorisation you will be able to issue a 'no value limit' invoice declaration. This does not need to be presented to Customs, a Chamber of Commerce or 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 office for authentication prior to export.	통지 827 유럽연합특혜: 수출절차 5.1 FTA 에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위한 특별방안이 있는가? 그렇다. 정기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인증을 받으면 "가액제한 없는" 인보이스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신고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공인 운송주선업자협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통지 제827호 유럽연합특혜: 수출절차 2012년 4월 53면 중 18면 특혜문서의 범위와 사용에 관한 세부내

구 분	영문	국문
	Please refer to section 20 for full details on the scope and usage of preference documentation.	용을 보려면 제20절을 참고하시오.
	5.2 What is an invoice declaration? It is a statement of origin inserted o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by the approved exporter (see section 12). At the time of approval, you will be given an authorisation number and be advised of the wording of the declaration to be used. Please refer to section 20 for the value limits. Such declarations need not be signed, provided that the exporter undertakes in writing to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the declaration(s) as if it had been signed. The exporter must have been given approval by HMRC for this procedure as part of the general procedure for obtaining approved exporter status. Invoice declarations issued by 'approved exporter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hose issued in respect of low value exports. No prior approval is required for low value declarations (see paragraph 6.1 for further details), although these declarations must always be signed in manuscript. Any invoice declaration should be made out at the time of export, or after exportation, so long as it is presented in the importing country no longer than 2 years after the importation of the products to which it relates. Note: for Mexico and South Korea the time limit is 1 year from their date of issue	5.2 인보이스신고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증수출자가 인보이스, 인도전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에 삽입하는 원산지신고서이다(제12절 참조). 인증을 받을 때 인증번호를 부여 받고 사용할 신고서문구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인증수출자 제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제20절을 참조하시오.. 수출자가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신고서에의 서명이 면제된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한 일반절차의 일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수출자가 HMR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신고서를 금액이 낮은 수출물품에 관해 발급하는 신고서와 혼동하면 안 된다. 금액이 낮은 수출물품에는 항상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 없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6.1항을 참조하시오). 해당 제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그 수입국가에 제출되는 모든 인보이스신고서는 수출 당시나 수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주: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그 제한시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구 분	영문	국문
	5.3 How can I qualify for approval? You may be authorised as an approved exporter if we are satiied that: •you export or intend to export on a regular basis •the goods to be exported satisfy the relevant origin rules to qualify for the issue of preference documents •you will correctly complete the documents and take proper care of them If you are interested in applying for authorisation,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form C1454 from the HMRC website. When completed send to: HMRC Authorisation and Returns Team Peter Bennett House Redvers Close Lawnswood Business Park Leeds LS16 6RQ	5.3 인증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세당국이 아래 사항을 납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한다는 것. 수출대상상품이 특혜문서의 발급에 적합한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적절히 간수하겠다는 것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서' 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를 작성하여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로 발송한다.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Peter Bennet House Redvers Close Lawnswood Business Park Leeds

자료: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동 규정 영국 5.3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서'(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그 신청서를 작성(회사자료, 상품 관세율 분류 등)한 후 HMRC(인증 및 보고서 팀)에 제출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 양식은 총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HMRC가 신청서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신청자가 상품의 특혜원산지를 입증할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였는지를 점검한다.

HMRC가 그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면 AE 인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유보하고 추가 문서 또는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그림 IV-2> 영국 인증수출자 발급절차

한편 EU 회원국 전역으로 EC전역 대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이미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따로 HMRC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 분	영문	국문
Notice 827	5.4 EC wide approvals UK exporters who frequently export goods direct from other member states, but who wish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in the UK for the products concerned can apply to the HMRC Authorisation and Returns Team at the address shown at 5.3 for a new or extended authorisation to enable this to happen. It should be noted that exporters already approved for 'UK exports' are not automatically able to use this facility. They must apply to have their existing approval extended. UK Customs is obliged to refer any such application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from which such exports would be made. Once an authorisation is granted, a copy of the authorisation letter will be sent to the HMRC Preference Policy Team in Southend. There will be occasions when checks will be required of companies who are exporting goods direct from the UK, on behalf of commercial operators in other member states, who have applied to their own Customs authorities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for the directly exported goods concerned.	5.4 EC전역 대상 승인 다른 회원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영국 수출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신고서를 영국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5.3항에 그 주소가 나와 있는 HMRC 인증 및 신고서 팀에 이를 위한 신규 또는 연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영국 수출품" 승인을 받은 수출자가 이러한 방안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영국세관은 모든 신청서에 대해 그 수출이 이루어지는 회원국가의 관련당국에 이를 조회할 의무가 있다. 인증이 부여되면 그 인증서 사본이 Southend의 HMRC특혜정책팀에 발송된다.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자가 영국으로부터 직접 수출된 해당상품에 대한 인보이스신고서 발급을 자신의 관세당국에 신청한 경우, 그를 대신해서 영국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료: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영국 인증수출자 신청서[63] form C1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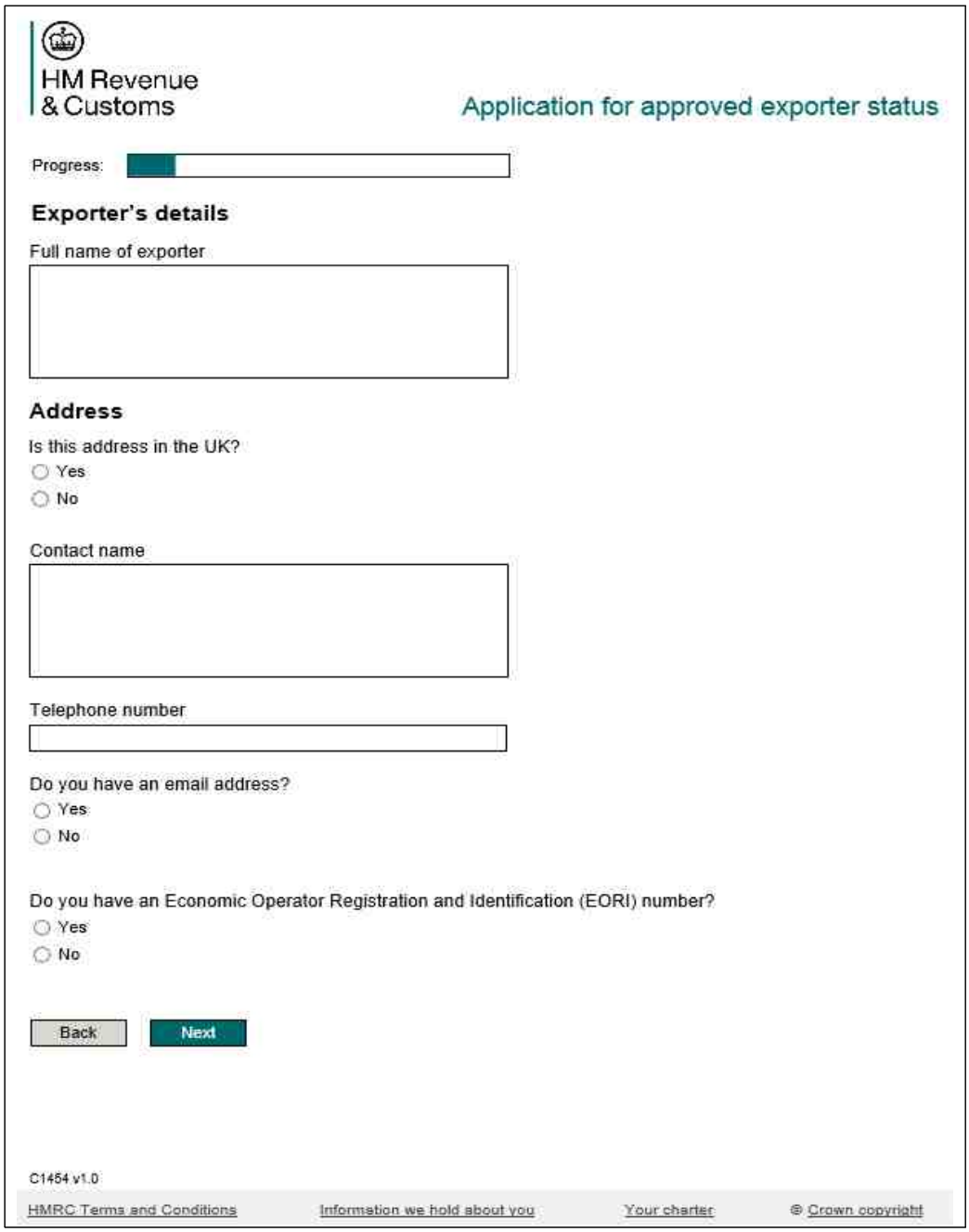

HM Revenue & Customs

Applic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Progress:

Exporter's details

Full name of exporter

Address

Is this address in the UK?

○ Yes
○ No

Contact name

Telephone number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 Yes
○ No

Do you have an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number?

○ Yes
○ No

Back Next

C1454 v1.0

HMRC Terms and Conditions | Information we hold about you | Your charter | © Crown copyright

63) 영국 HMRC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서식

라. 프랑스

프랑스는 관세법전 상에서 특혜원산지 혹은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앞에 기본 EU의 인증수추자 규정을 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회사정보, 상품 관세율 분류, 해당 원산지 규칙 등)하여 프랑스 관세당국에 발송한다.

관세당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청서에 적힌 원산지규칙이 정확한지를 점검한다. 추가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위(Approved Exporter)AE지위가 부여된다.[64] 수출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확정하고 목적지 국가에서 특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원산지 분야에서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송장 원산지 신고서 또는 상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업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수출자는 EURO1 증명서 또는 EURO-MED 증명서를 작성해서 수출세관의 매번 허가를 받는 서류절차를 피할 수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법체계

프랑스 역시 EU 28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 및 시행규칙을 따라고 있으며 인증수출자 제도 역시 EU공통이사회규칙을 따르고있다. 또한 지침사항으로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QUESTIONS/REPONSES SUR L'ACCORD DE LIBRE ECHANGE UE-COREE DU SUD)[65]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증수출자 지위획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하테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64)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65) 참조2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는 인증번호를 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이 인증을 보유하면, 수출자는 본인 스스로 관련 무역협정의 « 원산지 » 규약에서 정해진 송장 또는 기타의 무역서류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 기재 내용은 하기와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관련 협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기재 내용은 특히 유럽연합/칠레, 유럽연합/멕시코, 유럽연합/페루 및 유럽연합/콜롬비아의 협정은 다르다)

«본 자료의 상품 수출자는 (세관 인증 n° FR...../....), 분명한 다른 내용의 표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특혜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신고한다».

결론적으로, 인증은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 처리시 세관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 관련 정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statut d'exportateur agréé communautaire)를 얻고자 할때는,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수출상품이 특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 생산자 또는 무역인 등 모든 수출자는 프랑스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서를 작성(회사정보, 상춤 관세율분류, 원산지규정 등)하여 프랑스 관세당국에 보낸다. 이후 프랑스 세관은 자료를 충실히 살펴본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거나, 만약 자료가 충실하다고 여겨지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다.[66]

66)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수출자는 «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기 위한 원산지 사전 신고서 » (DPO) 양식을 2부를 작성해서 수출세관의 장소에 무관하게 프랑스 영토에서 유효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수출자 지위의 혜택을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으로 확장 신청하는 경우, 프랑스 세관이 관련국가에 알리는 방식이다. 수출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서 원산지신고서 서명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수출자는 본인 스스로 관련 특혜원산지의 « 원산지 » 규약에서 정해진 송장 또는 기타의 무역서류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 처리시 세관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 관련 정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마. 스페인

스페인은 198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EU 공동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스페인 관세청[67](agenciatributaria)에서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스페인 역시 EU 공통이사회규칙(Reglamento (CEE) n으 2913/92 del Consejo), de 12 de octubre de 1992, por el que se aprueba el Código Aduanero Comunitario. (DOUE 19-octubre-1992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역외 인증수출자 제도 EU 공통이사회규칙(CE) 제 1207/2001의 제8조에 따르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스페인에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이 회사에서 적법하게 서명 및 날인한 신청서를 제조세 부서 및 세관 부서 (원산지 관리청, 일반 세관 관리국, 주소: Avda. Llano Castellano, 17-28071 Madrid)에 제출하여 요청하면 된다.

또한 스페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때 스페인 신분증 번호(Electronic DNI, Spanish National ID), 전화확인 Electronic certificate, PIN24H 등이 필요하다.

마드리드가 아닌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서는 관세청의 지방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 사무소는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된 관계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제조세부서 및 세관부서(Departamento de Aduanas e II.EE)로 발생하게 된다.

67) 국세청 및 관세청 기능 수행.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으로 통칭.

또는 지위 획득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들을 일반 세관 관리청에 팩스[68]를 통해 직접 전송 할 수 있다. 이때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토하기 위해서 : 신청기업의 재정능력, 제품 공정과정, 원자재 공급자 파악, 수출대상지역, 연간수출규모 등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상품에 설명 및 네 자리로 된 해당 제품의 관세 품목에 대한 설명, 둘째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성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산국에 대한 설명, 셋째 수출의 대상인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된 비 원산지 재료의 비율, 상기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 스페인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한다.

□ 빈번한(정기적으로) 수출

□ 수출의 대상인 물품은 원산지 규정 및 관련 특혜 협정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준수

□ 세관 당국 또는 관할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으로 그러한 지위를 부여

□ (관리) 송장에 신고문구를 작성한 수출자는 수출국 세관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제품의 원산지의 성격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혜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68) 마드리드 관세청 팩스번호 91 729 20 65

스페인 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서식(예시)

ANEJO I: Modelo de instancia para la solicitud del estatuto de exportador autorizado

(NOMBRE), mayor de edad, con DNI.***, (CARGO) de la empresa (NOMBRE DE LA EMPRESA)., con NIF *** y sede social en (SEDE SOCIAL, TELÉFONO, FAX, EMAIL); en cuyo nombre y representación actúa, siendo las personas de contacto a los efectos de esta solicitud (NOMBRE, CARGO, TELÉFONO, FAX E EMAIL DE LAS PERSONAS DE CONTACTO)

DECLARA

Que la empresa (RAZÓN SOCIAL) se propone exportar mercancías por valor superior a 6.000 a la República de Corea,

Que los productos que se exportan son conformes a las normas de origen del Acuerdo de Libre Comercio de la UE con la República de Corea (enteramente obtenidos o suficientemente transformados).

Y por ello SOLICITA

Que le sea concedido el estatuto de exportador autorizado, en el sentido dado a la figura de exportador habitual en el artículo 16 del Protocolo 1 sobre reglas de origen del Acuerdo de Libre Comercio entre la UE y la República de Corea

(LOCALIDAD)

(FECHA)

(NOMBRE Y FIRMA DEL SOLICITANTE)

(SELLO DE LA EMPRESA)

SR. DIRECTOR DEL DEPARTAMENTO DE ADUANAS E IIEE

5 de 5

EMBAJADA DE ESPAÑA

OFICINA ECONÓMICA Y COMERCIAL DE ESPAÑA SEUL

스페인 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서식(예시)

부록I: 인증수출자의 지위 요청에 대한 신청서 예시

납세자 식별 번호(NIF)가 ***이며, 본사가 (본사,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에 있는 (회사명) 회사의 (직책)으로, 신분증 번호(DNI)가 ***인 성인, (성명)은; 본 요청을 위한 연락 담당자(연락 담당자의 성[69]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를 두며, 회사를 대리하여

다음을 신고합니다.

(회사명) 회사는 6,000 이상 금액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취득 또는 충분히 가공하여) 수출할 제품은 한국과 EU의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에,

한국과 EU의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프로토콜 1, 제 16조의 통상 수출자에 대하여 나타난 바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

(날짜)

(요청자의 성명 및 서명)

(회사의 날인)

제조세 부서 및 세관 부서의 담당자 앞

69) Spanish National ID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바.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인증수출자 제도 적용받고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이탈리아 역시 앞서 언급한 규정 실행 지침 90, 117조(Reg. Cee 2454/93, 후에 DAC을 따르고 있으며 제3국과 유럽 연합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연합 세관 관청은 자주 수출하는 어떤 업체라도 그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송장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출업자는 제품의 원산 특성의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을 세관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이탈리아의 경우, 각 주(州)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 등록 이전에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속되어있는 주의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만이 인증수출자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ufficio dogana, 본사는 로마에 위치) 역시 각 주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각 주에서 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 작성 후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각 업체당 고유 인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수출 시 인보이스에 기재한 고유 인증번호를 통해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70)]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역시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데 먼저 지속적인 수출을 해야 한다. 이때 당해 년도 안에 정기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증명을 요구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산지에 대한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 인증수출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원산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0) ITCCK(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문의내역을 토대로 작성

□ 지속적인 수출 시행

□ 제품의 원산 특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 제공

한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은 회사의 행정적 본사가 위치한 해당 주정부에 위치한 세관이다. 회사는 또한 인증수출자 지위의 확장할 경우에는 주 정부가 아닌 곳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에 언급한 요건들의 해당 여부를 준수하였는지 해당 지역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행한다.

동시에 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지역의 해당 세관은 위에 언급한 요건들을 기업이 잘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제 조건들의 크게 두가지 사항이다. 먼저 '수출 빈번도'에 대한 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한 대상자가 발행한 실제 송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관증명서를 비교해 본다.

이 결과를 통해 회사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세관 당국은 인증 수출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숫자 알파벳 조화 인증 코드를 부여한다.

종합해보면 이탈리아에서는 AE 신청서가 관세당국에 제출되면 관세당국이 회사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대상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을 알고 있는지 출자가 수출대상상품의 특혜원산지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당국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AE인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유보하고 추가 자료/문서를 요청한다.

EU 관세당국들은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팁은; 상품의 관세율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제조업체의 경우, 재고계정(Stock Account)으로 상품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71]

71)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이탈리아 세관 인증수출자 Q&A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Roma, 15 settembre 2015

A
e-mail :

e.p.c

All'Ufficio mutua assistenza e cooperazione amministrativa della DCAC
SEDE

All'Ufficio AEO, altre semplificazioni e rapporto con l'utenza della DCLPD
SEDE

Protocollo: 100881/R.U.

Rif.:

Allegati:

OGGETTO: Richiesta informazioni ai fini della concessione dello status di esportatore autorizzato ex art. 8 del Regolamento CE n. 1207/2001.

Si fa riferimento alla richiesta di cui in oggetto, pervenuta presso questo ufficio, competente per materia, con e-mail del 10 settembre 2015 e si rappresenta quanto segue.

Il Regolamento CE n. 1207/2001 ha stabilito determinate disposizioni e procedure, di carattere generale, intese a facilitare: a) il rilascio dei certificati di circolazione EUR 1 da parte degli Stati membri, la compilazione delle dichiarazioni su fattura da parte degli esportatori comunitari; b) la concessione della qualifica di esportatore autorizzato valida negli Stati membri; c) l'applicazione dei metodi di cooperazione amministrativa tra gli Stati membri.

In particolare, un soggetto esportatore che esporta frequentemente merci da uno Stato membro in cui non è stabilito, può richiedere di acquisire lo status di esportatore autorizzato presentando apposita domanda all'Autorità doganale dello Stato membro in cui è stabilito e nel quale conserva la documentazione relativa alla prova di origine.

Al riguardo, si segnala la possibilità di consultare le specifiche indicazioni ed istruzioni sulle modalità applicative dell'Accordo di Libero Scambio UE – Corea del Sud emanate da questa Agenzia e pubblicate sul portale internet agenziadoganemonopoli.gov.it (nota prot. 60019/RU del 18 maggio 2011 e nota prot. 77977/RU del 30 giugno 2011, entrambe disponibili solo in lingua italiana).

Al fine di ottenere notizie più dettagliate riguardanti le modalità di rilascio dei provvedimenti di autorizzazione allo status di esportatore autorizzato entro l'ambito del citato ALS UE – Corea del Sud, regolamentate a livello comunitario,

DIREZIONE CENTRALE LEGISLAZIONE E PROCEDURE DOGANALI

Ufficio applicazione tributi doganali
00143 Roma,Via M.Carucci 71 – Telefono +39 0650245216 – Fax +39 0650246057 - e-mail:
dogane.legislazionedogane.applicazione@agenziadogane.it

이탈리아 세관 인증수출자 Q&A

세관과 독점관련 기관 로마 2015.9.15

프로토콜 번호 100881/R.U. to.

이메일:

언급: DCAC 관련 공제 조합 지원 및 행정적 협력

사무소 앞 본부

첨부 DCLPD 관련자들과의 관계 및 다른 단순화,

AEO 사무소 앞 본부

관련 주제: CE 규정 번호 1207/2001의 전 8조항 인증수출자 지위 허가 목적에 대한 정보 요구

위에 있는 주제에 관해 해당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본 사무소에 2015.9.10일 이메일로 도착한 요구 사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한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CE규정 1207/2001은 일반적인 것과 아래의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약에 관해 일정한 조치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 설정해 놓았다. A) 회원국 측이 EURO1 증명서의 발행과 유럽 연합 수출업자들의 송장에 대한 증명서의 작성; B)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인증수출업자 자격허용; C)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력 방법의 적용.
특히 어떤 설정되지 않은 State 않은 회원국으로부터 물건을 자주 수출하는 업체는 이것에 관해서 본 부처에서 공포했고 agenziadoganemonopoli.gov.it (2011.05.18일자 프로토콜 30019/RU와 2011.06.30일자 프로토콜 77977/RU. 두 문서 모두 이탈리아어로만 되어있음)사이트를 통해 알린 UE와 대한민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적용 방법에 대한 특별한 표기와 방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언급한 ALS UE-대한민국 사이에서 유럽 연합 차원으로 규정한 인증 수출업자 자격 허가 조치에 대한 발행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소식을 얻을 목적으로 유럽 연합 이사회(Tazation and Customs Union/Directorate General/Unit B4; 이메일 TAXUD-UNIT-B4@ec.europa.eu)의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소장 친치아 브리카

V. 비교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4개, 51개 국가와 FTA를 발효했다. 신규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이행체계 효율화와 더불어 체약상대국의 FTA이행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도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주요 FTA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FTA 이행관련 주요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시행하였다. 특히 한-EU FTA 원산지 증명에 있어 인증수출자 제도(Approved Exporter)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 · 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 '인증수출자' 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된 상황에서 국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발급절차 및 세부내용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

한 · 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수[72]적이며 유럽 인증수출자 제도는 EU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EU는 각 회원국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법안 작성 및 운영의 세세한 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고 있다.

EU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자율발급은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과 관세동맹 국가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게 하고 있었다. 특히 송품장 신고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 6,000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만이 송장 및 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2) 한 · EU FTA의 경우, 한 · 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인보이스 신청서 작성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먼저 한국과 EU 인증수출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EU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한국)	원산지인증수출자(EU)
목적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원활화 촉진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원활화
범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권자	세관장	해당 국가별 인증수출자 담당자
대상자	업체/품목별	수출자, 생산자, 중도매인, 소매인, 중소기업 등 다양 포괄인증 (수출자, 생산자, 중도매인) *관세사는 제외되지만 고객 대신 인증을 요청 할 수 있다.
인증 조건	■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자(생산자 포함) ■ C/O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최근 2년간 FTA관세특례법 및 관세법 미위반 ■ 속임수 및 부정한 C/O 미 발급 ■ 최근 2년간 5회 이상 C/O 발급신청 반려사실 無	■ 정기적*으로 수출하고 수출자(생산자 포함)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할 의사가 있는자 *EU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음 ■ 상품의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 세관당국 요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담당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 ■ 기타 EU 각국별 조건 충족
인증 신청	■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 상이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각 국 세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인증 관리	인증서(번호포함) 교부, 3년간 유효 세관장의 사후관리	세관당국은 업체별로 세관인증번호 부여하고, 모니터링 실시
인증 혜택	■ 원산지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신청서만 제출) ■ 발급기관의 원산지확인 생략	수출금액에 상관없이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허용 (EUR.1 작성 할 필요가 없어 편리 세관인증번호 기재, 서명생략)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한국)	원산지인증수출자(EU)
	※인증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함(새로운 인증번호 부여)	■ 인보이스 증명관련 단순실수를 포함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됨 ■ 회사내 담당 세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연락자 지정 ■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에 협조의무
인증 취소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시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원산지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의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나 첩보 입수시	■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입증서류 미제출시 ■ 세관의 정한 조건 미충족시 ■ 인증수출자 자격의 부적절한 이용시

EU의 경우 인증수출자 발급은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상공회의소에 대한 기업등록을 요구 하고 있었다. 또한 EU 회원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각 국가별 운영지침을 두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독일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원산지 관리 운영 지침을 두어 철저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사실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는 EU 주요회원국인 6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10개 영역으로 비교 분석해 본 내용이다.

EU와 주요 6개국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1	공통법	NL	공통	관세법	· 관세법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규칙 제2913/92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DE			
		FR			
		UK			
		ES			
		IT		시행 규칙	· 시행규칙에 해당 유럽이사회 규칙 제 2454/93 (Council Regulation (EEC) No 2454/93)
2	EU 역내 역외 인증수출자 규정	NL	공통	인증수출자 관련유럽이사회 규칙 제 1207/2001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제8조)[73]	
		DE			
		FR			
		Uk			
		ES			
		IT			
3	국가별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	NL	일반관세법의 제1:1조, 제1:18조, 제8:2조, 제1:32조		
		DE	관세청	Merkblatt ermächtigter Ausführer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	
			상의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FR	지침사항으로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QUESTIONS/REPONSES SUR L'ACCORD DE LIBRE ECHANGE UE-COREE DU SUD)		
		UK	Notice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 export procedures		
		ES	-		
		IT	-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UK	approved exporter
		ES	EXPORTADOR AUTORIZADO
		IT	Esportatore Autorizzato
5	관세당국	NL	세관 (Belastingdienst)
		DE	세관 (Zoll)
		FR	세관 (Douane)
		UK	세관 (HMRC)
		ES	세관 (AGENCIA TRIBUTARIA)
		NL	세관 (AGNEZIA DELLE DOGANE)
6	인증수출자 발급기관의 심사	DE	상공회의소의 기업등록,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 서면 의견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또는 EUR-MED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유) 일반 데이터베이스 *예를들어 수출차 통관 내역, 점검보고서, 기타사항
		FR	최근 영업신고증 , 작업 및 조직 지침(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이하 AuO 가 조직내부의 절차 지시로서 작용)
		UK	빈번한 수출자 수출 시행, 제품의 원산 특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 관련 규정
		ES	
		IT	
		IT	이탈리아의 경우, 각 주(州)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 등록 이전에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속되어있는 주의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인증수출자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함
7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기입내역)	NL	* 홈페이지에 서식 게재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EORI번호, 원산지 관련 전담자)
		DE	홈페이지에 서식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경우 표준서식을 개별 제공. *(업체명 및 주소지,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주소지와 특례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보관 주소지, 유럽연합 이내 다른 나라의 주소지 또는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발송/운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 해당 주소지와 국가도 기재), “(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허가번호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는 보세창고를 위한 허가 번호 기재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월별 수출입 횟수(예상), 무서명 약정서 내용 포함)
		FR	DECLARATION PREALABLE D’ORIGINE EN VUE D'OBTENIR LE STATUT D'EXPORTATEUR AGREE (회사정보, 상품 관세율분류, 해당 원산지 규정 관련 자료)
		UK	c1454(* (회사자료, 상품 관세율 등 총8개 조항으로 구성)
		ES	신청기업의 재정능력, 제품 공정과정, 원자재 공급자 파악, 수출대상지역, 연간수출규모 등의 관련 서류 제출 『*① 상품에 설명 ②둘째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성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산국에 대한 설명, ③수출품의 사용된 비 원산지 재료의 비율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세청이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IT	-
8	인증수출자 심사 기간	NL	-
		DE	-
		FR	-
		UK	-
		ES	6개월
		IT	-
9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장 및	NL	■ 상공회의소와의 수출입 관련 문서 ■ 인증수출자 허가서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서명카드		■ 관리 보고서, (또는, 그리고) 빈도수 게재 ■ 정기 점검 보고서
		DE	작업 및 조직 지침(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이하 AuO)
		FR	-
		UK	-
		ES	-
		IT	-
10	증빙서류의 보존기관	NL	7년
		DE	증명 서류, 계산서, 원산지 증명, WVB 의 보관은 제출 또는 유효 시작 후 최소 6년간 회계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
		FR	5년[74]
		UK	5년[75]
		ES	5년[76]
		IT	5년[77]

73) Article 8 of Council Regulation (EC) N° 1207/2001 of 11 June 2001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4) 한국•EU FTA 질의/문답 Q&A
75) 상동
76) 상동
77) 상동

【참고 1】 네덜란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78)]

7 특혜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이드라인

7.1 일반 사항

수출자는 수출시, 조건에 충족할 경우 송품장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에 특혜 원산지에 관련된 신고를 기재하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대부분의 특혜 규정에서 송품장 신고서(factuurverklaring)을 가리킨다- 작성시 가격 제한은 구애받지 않는다. 송품장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라고 한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장 - 또는 회사의 부서를 이용하여- 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N.1207/2001의 제8조, (역내) 영외 '인증수출자' 규정에 정해져 있다. 7.2.18 참조 .

'인증수출자'(자율발급 원산지증명) 허가 이외에도 A.TR 물품운송(제조지 확인)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간소화 절차가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요하다. 조건을 충족하고 이 인증을 소지한 수출자를 '인증수출자(A.TR)'라고 한다.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터키에 물품을 수출하는 '인증수출자(A.TR)'에 대해서는, 유럽연합-터키간 관세동맹의 결정 제 1/2006호 제12조에 (역내) 영외 수출 규정이 정해져있다. A.TR 인증서 자율발급절차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절차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7.2.19에서 별도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집산시설type E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에게, 사전 서명한 대체 인증서에 추후 요구 자료를 보충하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4.4. 참조

7.1.1 인증수출자

특혜 규정에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송품장 신고) 작성을 하기 위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은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라고 한다. ' 예를 들어, 수출시 현지통관절차(local clearance procedure)와 같은, 다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에서 말하는 인증된 수출자와 '인증수출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형태의 인증수출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서통신 등에서 '인증수출자'(자율발급 원산지증명)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8) 본 보고서의 수록된 [참고] 한글 번역 자료는 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반드시 원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란 다음을 뜻한다:

■ 원산지 성격(character of origin)이 그의 회사 내에서 표시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수행하는 자(생산자);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자신의 행정문서대장에, 적용된 협정의 맥락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공급자).

통관 대행자는 생산자로도 공급자로도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통관 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와 마찬가지로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장소에 소재한 '인증수출자' 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인증수출자' 를 대신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7.1.2 회계상 및 경제적 이해

수출국에서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재정상 또는 회계상 이해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부담을 받지 않는다. 협정 당사국에서 수입시 원산지 신고서가 감세 또는 면세 권한을 부여하므로, 그 재정적 이해는 상대국에서 생긴다. 이는 여기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와 발급된 EUR.1 및 EUR-MED 인증서가 신뢰성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수혜국 및 협정 당사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기대하는 바도 동일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특혜는 - 유럽연합과 기타지역 모든 곳에서- 원산지 조건을 또한 실제 충족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7.1.3 특혜 규정에 정해진 '인증수출자규정'

모든 특혜 규정은 - 시리아와의 규정은 예외 - 유럽연합 내 '인증수출자' 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사용을 인정한다.

7.1.4 국가적 조항

일반관세법의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간소화 절차 부여에는 일반관세법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특히, 행정문서대장(일반관세법 제1:32조)에 관해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에서 정한 보완 조항과 행정행위결정(beschikking) 형태로의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일반관세법 제1:18조), 이의 신청 및 항소 가능성(일반관세법 제8:2

조)에 해당된다.

7.2 절차

7.2.1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대상자

빈번한 수출활동을 하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자이다. 이 요건은 수출자가, 기타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근거하여 이미 서류상 검증되거나 전자신고 현지통관절차(local clearance procedure)수출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서처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6.1.1 참조.

7.2.2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에는 신청 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서식은 www.douane.n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감독관에게 제출된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의 개요가 아래에 나와있다.

공급자/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권한있는 감독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가?(7.2.3.참조)

접수 확인 통보
상공회의소 의견 요청(7.2.4.참조)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 (7.2.5.참조)

초기 조사
1.일반 요건 (7.2.6 참조)
2.생산자의 행정문서대장 (7.2.7 참조)
3.공급자의 행정문서대장 (7.2.8 참조)
4.완전성 점검 (7.2.9 참조)
5.다양한 협정 구분 (7.2.10 참조)
6.증빙서류 구비 (7.2.11참조)

7.2.3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관세규칙 제 1:4조, 2003 국세청 수출규칙 제 5조 7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부여된 감독관에게 요청을 이첩하여야 한다. 요청의 이첩 관련 사항을,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을 한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인증수출자 자격 요청에는,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에서 수출자가 발급받은 최근자 상업등기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호(EORI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심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 상공회의소의 정보
-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
-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에 대한 초기 조사

7.2.4 상공회의소의 정보

조사의 일부분으로써,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MED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kvk.nl)에서 찾을 수 있다.

7.2.5 고객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다른 통관절차에 대한 점검보고서 같은, 수출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자의 역내가공절차 허가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그 경우에 수출시 과세미환급(no drawback) 규정 준수 여부를 행정문서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출시 과세미환급 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2.3.33. 참조.

7.2.6 초기 조사 - 일반적 요건

원산지 신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조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신고서 작성의 정당성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는 수출자 회사(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수출할 제품의 종류와 그에 대해 확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 외에도 회사의 행정조직 또한 중요하다. 이에 특히 답변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며, 내부 점검(내부 관리)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밖에도 몇 가지 위험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통관대행부서가 있는 기업은 관세국과 접촉이 많으므로, 판매부서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보다 위험요인이 더 적을 수 있다.
판매부와 같은 부서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더 강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법에 관하여 수출자가 그 절차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 절차 설명서로부터 몇 가지 사항이 명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자 회사 내부에서, 제품 신고서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자 신고서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누가 책임지는지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매부서)

그리고 회사 내 어느 부서가 원산지 신고서 발급에 권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구매부서 또는 수출부서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내부 점검의 시행 여부 및 그 사항의 기재 여부가 명확해야한다.

화물의 규격 및 그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행정조직에는 더 높은 요구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여건이 달라지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사에 완전한 책임이 있음을 수출자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7.2.7 초기 조사 - 생산자의 행정문서대장

생산자인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은, 우선,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다음의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

제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번변경) 재료 사용 기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물품에는, 제품별로 제조공정 설명과 함께, 가공된 재료의 HS 코드(4단위)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세번의 모든 재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가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협정 당사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행정문서대장에 존재해야 한다.

부가가치 요율 결정시 사용할 수 있는 계산모델이 부록 5에 수록되어있다.

가치기준

가치기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물품에는, 가공된 비원산지재료의 관세가격과 제작 및 수출된 제품의 공장도 가격이 행정문서대장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물품의 구성 또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공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특정한 HS 코드의 제한을 가치기준과 결합시킨 경우와 같이, 복합적인 기준이 제품에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제조공정 설명이 존재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였다고 주장하는 가공된 재료에 대하여는,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정 공정기준

특정 공정기준이 원산지 요건으로 적용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예. “섬유로부터 가공” 원산지 요건인 남자 상의) 마찬가지로 제조공정 설명이 존재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협정 당사국이 이미 원산지였다고 주장하는 가공된 재료에 대하여는,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정한 몇 가지 제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수 지침이 작성된다. 이에 관해서는 관세국 네트/전국관세팀/전국원산지업무팀 (DouaneNet/Landelijke Teams Douane/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을 참조한다.

"완전 획득" 기준

완전 획득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 지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수출제품이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와 관련될 경우,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한다.

수출자의 업체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면 신고로 충분하다.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 원칙과 특정 협정에서 허용되는 완화의 관점에서, 작업 및 가공이 특혜지역 외부에서 수행되어 발생하는 만일의 물품 이동 또한 행정문서대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7.2.8 초기 조사 - 공급자의 행정문서대장

공급자인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에서, 유럽연합(또는 EEA) 내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납품자가 발급한 납품자 신고서를 통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드러나야 한다.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7.2.9 초기 조사 - 완전성 점검

초기조사시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측면은 완전성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다. 점검 수행시에 어느 원산지 신고서를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그에 대한 입증으로, 원산지 신고서 사본 (그와 같은 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 사본)이 행정문서대장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발급된 원산지 신고서의 완전성이 담보되도록 행정문서대장이 그와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무 관리와 통계 개요, 수출 보고서가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7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2.10 초기 조사 - 다양한 협정의 구분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생산자와 공급자 모두-의 행정문서대장에는, 어느 범주

내에서 수출 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특혜 규정이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 원산지규정 및-특히-여러 누적조항에 의해, 다른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서는 원산지가 유럽연합인 제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한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서는 때로는 원산지가 유럽연합인 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다.

7.2.11 초기 조사 - 증빙서류 구비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는 순간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함을, 조사 중에 수출자에게 지적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시점에 원산지가 표시될 수 없었던 것으로 점검에서 드러난다면(예를 들면,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순간에 납품자 신고서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점검 중에 수중에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7.2.12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시 초기조사의 모든 소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물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 또는 표시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보고서는 부여할 인증수출자 자격 및 점검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로 사용된다.

7.2.13 인증수출자 자격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시에는 ‘서식집’에서 정한 인증수출자 자격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한다.

팩스(팩스번호(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의 내부 전자우편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NAW-자료), EORI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요청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의해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은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고서에 확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항소 가능한 결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43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7.2.14 관리 프로그램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과 동시에 관리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점검 빈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업체의 성격 : 품목 변화가 많은 공급자보다 제품 종류 및 제조 공정이 일정한 생산자에게는 원산지 점검빈도가 낮게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장 인근에서 확보한 강의 진흙으로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가 갑자기 제 3국의 진흙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항상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 물품의 성격 : 예를 들어, 생산자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제작할 때, 가격기준(예를 들어 40% 규정)이 적용될 때보다 원산지 변경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납품자가 사용한 재료의 획득으로 인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윤폭 축소와 연료가격 및 환율 파동으로 인해 원산지 제품이 비원산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7년)

■ 납품자 신고서의 유효기간 (최대 1년)

■ INF4 정보증명서를 통한 납품자 신고서 검증 (7.3.8.참조)

7.2.15 서류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 조사 보고서

■ 상공회의소 문서

■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자격서

■ 관리 프로그램

■ 정기 점검 보고서

■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사후 점검 요청에 관한 보고서 및 통신 문서

7.2.16 정기 점검

‘인증수출자’ 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점검은 관리 프로그램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납품자 신고서에 대한 점검 또한 정기점검의 일부분이다. 7.3.8.참조

원산지 관련 점검 소견은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그 보고서 사본(공개된 부분)을 받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해당 인증기간 동안에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였음이 명시될 경우, 보고서 사본을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 에 송부하여야 한다. LTO는,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통관지정국의 세관 당국에 전달할 지 여부를 (필요시 점검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점검 공무원에게는 이 정보 전달 사항이 제공된다.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결정되면,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LTO로부터 이의신청 가능 결정 사항을 통보받는다.

7.2.17 외국 세관 당국의 요청에 대한 검증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또는 무작위 선정에 의해, 외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인증수출자에 대한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접수된 다음, 인증수출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원산지 전문가에게 이첩된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조사는 7.2.16에서 의미하는 만일의 정기점검과는 구별된다. 여러 협정에 따른 의정서에 기재된 기간과 연계하여, 사후점검 요청 접수 후 늦어도 6개월에는 조사가 마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조사 소견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물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음이 명시될 경우, 이전 시기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들에도 이러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는지 심층조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이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국가

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의 2.3.33, 16.00.00의 일부분, 9.1.3.~9.1.8. 참조), 환급 금지 (no drawback) 규정을 만족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역내가공으로 취득한 물품이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 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밖에도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216조에 근거한 관세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환급 금지 (no drawback) 규정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여전히 관세 면제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면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을 뜻한다.

보고서는 사후 검증 요청 접수 후 즉시-6개월 이내까지라 하더라도 - LTO에 송부해야 한다. LTO는 보고서를 평가하고 외국의 검증요청에 회신한다. LTO의 평가에 의거하여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점검 공무원의 결론이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LTO는 보고서에 질문사항 또는 의견을 보충하여 돌려보낸다.

7.2.18 영외 '인증수출자' 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1207/2001호의 제8조는 (역내)영외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출자가 소재지에서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영외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는,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문서대장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7.2.19 A.TR 인증수출자

유럽연합-터키간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제 11조에는, 특정한 수출자에 의한 A.TR 물품운송(3.2.5 참조) 관련하여 인증 (자율)발급에 대한 간소화 절차가 수록되어있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수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인증수출자 자격은 문서통신 등에서 'A.TR 인증수출자'로 표기한다.

주의
이 규정은 농업생산물, 철 · 강철 제품을 제외한, 이 지침서의 부록 3에 수록된 기타 제품에 한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품들에 대하여는 말하자면 제품이 터키로 수출될 경우 유럽연합이 원산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적용되는 것이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범주 내에서 정해진 사항이 이 제품들에 준용된다.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A.TR)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자의 관할 소재지 감독관에게 허가 신청될 수 있다. 이에는 신청 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신청 서식은 www.douane.nl에서 다운로드한다. 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요청은 일반관세규칙 제 1:4조 및 2003 국세청 수출 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감독관에게 이첩되어야 한다. 요청의 이첩에 관해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대상자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에 적합한 수출자는 다음과 같다.

■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이 요건은, 수출자의 소재지와 세관 사이의 거리가 수출자의 기업경제적 이해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융통성은, 수출자가 전자발급 역내가공절차 수출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인증수출자' 허가(자율발급 원산지증명)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기타 간소화된 통관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으로 점검되는 경우에 발휘될 수 있다.

■ 물품이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상태에 있는지, 따라서 A.TR 인증 발급 조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는 수출자.

■ 관세 · 세금관련 법률상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수출자.

■ 관세 당국을 만족시키고자, 물품의 유럽연합 공통 관련 사항에 관련된 모든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자.

통관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 역시 - 감독관이 제시한 조건하에서, 네덜란드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은, 수출자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를 대신하여 A.TR-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A.TR-인증서로부터 수출 배송별로 제품

의 원산지가 도출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절차

이를 위해 언급된 요건들은, 유럽연합공통의 통관운송 범주 내 간소화규정(인증 배송자)에 관하여 유럽연합공통관세 적용규칙(Tvo.CDW) 제399조에서 제시된 요건과 대부분 일치하며, 담보설정 관련 조항은 예외이다. A.TR 인증의 특성으로 인해 (해제 서류가 아니다) 그 측면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에는 ‘인증배송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시와 동일한 절차가 수반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LTO에 인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팩스(팩스번호 (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_Postbus) 인트라넷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자료 및 EORI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A.TR 인증서 서명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1/2006호의 제11조는 A.TR인증의 발급(서명)을 두 단계로 나눈다.

1. 첫번째 단계는 ‘인증수출자’ 자신이 12번 칸에 특수한 스탬프를 찍어서 A.TR 인증을 갖출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수 스탬프의 모델은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부록 Ⅲ에 수록되어 있다. 스탬프의 규격, 모델, 칸 분할, 기재와 관련하여 변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 스탬프를 찍어서 사전에 인증을 인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두 번째 단계는 관세국이 업무용 철제 스탬프를 찍고(날짜 표시 없이) 공무원이 수기 서명하여 사전에 12번 칸에 A.TR 인증을 확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절차 적용시 ‘인증수출자’가 8번 칸(의견)에 “간소화된 규정”이라는 문안을, 터키어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23개 공식언어 중 하나로 적어야 한다. 이어서 ‘인증수출자’는 인증서에 자신의 서명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 절차는 통관대행자, 관세사, 물류운송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하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수출자를 대표하여 A.TR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들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서식 인증수출자 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영외 ‘인증수출자(ATR)’의 인증수출자 자격

2006년 7월 26일자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제 12조는 (역내) 영외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출자의 소재국가에서가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서 터키로 물품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상황이 규정되어있다. 영외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는,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 경유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부터의 제조지” 지위가 행정문서대장에 표시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관세당국은 그에 대한 준수 점검의 책임이 있다. 물품이 터키로 수출되고 수출 절차가 수행되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절차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 다음 문구가 기재된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인증수출자 자격은 또한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에 의해 (회원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LTO에 인증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팩스(팩스번호 (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_Postbus)의 내부 이메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자료), EORI 번호, 다른 회원국 소재 업체의 이름 및 주소 자료,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LTO에 의해 부여된다.

7.3 상세 조항
7.3.1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의 모든 특혜 규정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사용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리아와의 협정시 원산지 의정서에는 당분간 원산지 신고서 사용의 가능성이 제외된다. 그 경우에는 세관이 발급한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 다음의 문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된 문안은 부록 4 참조)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N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1. 원산지 신고가 작성된 서류가 유럽경제지역(EEA) 의정서 제 38조의 맥락상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CM" 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2. 원산지 신고서가 스위스와의 무역에 사용될 경우, EEA 기재시 "/EU" 를 추가하여야 한다.

서명 생략

다양한 특혜 규정에서,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수출자'가 서명할 필요가 없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서면 신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를 위한 조건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는 그에게 부여된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인하여 그의 업체 내부에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당성에 대해 이미 완전히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당연히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허용해 줄 수 있다.

7.3.2 사본 - 사후 발급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의 수출 후 발급(소급발급) 및 EUR.1 인증서 사본 교부에 관한 조항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규정 내에서 적용된다.

7.3.3 납품자 신고서

일반사항

EUR.1 및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과 유럽연합 물품 수출시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 1207/2001호의 납품자 신고서 및 INF 4 정보증명서가 적용된다.

납품자 신고서는 유럽연합 내 교역의 납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내의 납품에 대해서도 납품자가 발급할 수 있다. 납품자 신고서의 취지는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최

종 목적지인 유럽연합 외부 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간의 물품 납품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협정 당사국에서 수입시 물품이 특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증서 발급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양식뿐만 아니라 아직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산지특성을 획득-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경우에 쓰일 것이다.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는 수출자가 상공회의소에 인증서 발급 신청시 및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에 물품의 특혜 원산지특성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자는 납품자 신고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일회용 납품자 신고서

납품자 신고서는 송품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물품의 명세가 기술되어 식별될 수 있는 기타 상업서류에 작성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납품자 신고서는 송품장의 별도 첨부서류나 별도 문서에 작성할 수도 있다.
납품자 신고서는 사전인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문서양식은 아니다. 특혜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 1207/2001호의 부록 1에 수록되어있다. 원산지가 아닌 제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1207/2001호의 부록 3에 수록되어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 1207/2001호의 제 3조 및 제 5조)

납품자 신고서(반복 사용 가능)

일회 납품에만 적용되는 납품자 신고서 외에도, 반복사용을 위한 납품자 신고서을 발급할 수도 있다. 이는 납품자가 그 특성이 -특혜 원산지에 관련되는- 변형없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특정 구매자에게 규칙적으로 납품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납품자 신고서들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특혜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반복사용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이사회규칙(EC) 제 1207/2001호의 부록 2에 수록되어있으며, 특혜 원산지가 아닌 제품에 대한 반복사용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이사회규칙(EC) N. 1207/2001의 부록 4에 수록되어있다. (유럽연합이사회규칙 (EC) 제 1207/2001호 제 4조)
납품자 신고서 서명

납품자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한다. 송품장 및 납품자 신고서가, 예를 들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성되거나 전산으로 송부될 때에는, 납품자가 자신

의 업체 내부에서 작성된 납품자 신고서 각각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서면 신고를 구매자에게 수행하였다면 납품자의 서명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유럽연합이사회 규칙(EC) N. 1207/2001 제 5조 3항)

납품자가 소재한 국가의 관세 당국은 이에 조건사항을 적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발급된 신고서에서 어떤 사항이 증명될 필요는 없다.

납품자 신고서 사후 작성

납품자는 납품자 신고서를 구매자에게 사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물품이 구매자에게 실제 납품된 후 제출하여도 좋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납품자 신고서의 사후 제출은 언제나 원산지 신고서 작성 또는 EUR.1(또는 EUR-MED) 인증서 발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7.3.4 EEA의 납품자 신고서

납품자 신고서에는 유럽연합내부거래(intra-Community supply)용 이외에도, 유럽경제지역(EEA) 내 비원산지물품 납품용도 있다. 4.2.8. 참조. 여기에는 두 가지 양식이 정해져있다. 부수적인 납품용 양식과, 납품된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장기간 변형없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납품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규칙적으로 납품하는 상황을 위한 양식이다. 이를 장기 납품자 신고서라고 한다. 양식은 EEA 협정 의정서 4호의 부록 V, VI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납품자 신고서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며 EEA 협정이 정한 완전 누적의 범주 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납품자 신고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7.3.5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납품자 신고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의 제휴협정 의정서 4호에서도, 이들 국가(또한 상호간)와 유럽연합 간 완전 누적을 위해 납품자 신고서가 도입되어 있다. 납품자 신고서 양식은 이 협정에 수반된 원산지 의정서의 부록 VI에 기재되어 있다.

7.3.6 카리브공동체, ACP, OCT의 납품자 신고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EC) 제 1528/2007호는 이 규칙의 부록 1에 언급된 ACP 국가 상호간의 누적, 카리브공동체(Cariforum) 국가 상호간 누적 및 카리브공동체국 · 기타 ACP국 · OCT간의 누적 범주 내에서 뿐만아니라 카리브공동체 · 기타 ACP국 · 유럽연합간의 누적 범주 내에서도, 납품자 신고서의 사용을 정하고 있다. 납품자 신고서 양식은 유럽연합 이사회규칙(EC) 제 1528/2007호의 부록VI A(원산지

물품) 및 부록 VI B(작업 및 가공 수행)와 카리브공동체와의 협정시 의정서 1호의 부록 V A와 부속서V B에 수록되어 있다.

OCT 결정의 부록 III에는 OCT · 유럽연합 · 카리브공동체 · 기타 ACP국간의 누적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납품자 신고서가 사용된다. 양식은 부속서 III의 부록 5 A 와 부록 5 B에 수록되어 있다.

7.3.7 터키의 납품자 신고서

PANEURO 범주 내에서(유럽연합 · 노르웨이 · 아이슬랜드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페로 제도 · 모로코 · 튀니지 · 알제리 · 이집트 · 시리아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자치구 · 리바논 · 요르단 · 터키간의 누적) 유럽연합-터키 제휴위원회 결정 제1/2006호에 의거하여 터키를 원산지로하는 물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서, 더 가공하거나 변형없는 상태로, 언급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터키 원산지 증명으로, 세부 통관지정지를 고려하여 납품자 신고서가 있으면 터키 납품자는 유럽연합의 구매자에게 또는-반대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납품자는 터키 구매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7.3.3의 내용이 준용된다.

주의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터키에서 발급된 EUR.1 인증서 제출 하에서는, 관세 납부없이 유럽연합에 수입될 수 없다. 물품이 범유로지중해 구역의 한 국가를 통관지정국으로 하여 운송될 경우 터키에서 발급된 EUR.1 인증서는 유럽연합에서 다른 EUR.1 인증서로 대체될 수 있다.

7.3.8 납품자 신고서 검증 : INF4 정보증명서

'인증수출자'에게 실시되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납품자 신고서의 진위성 및 정당성이 의심될 경우 검증이 시행될 수 있다. 이는 무작위 선정에 근거하기도 한다. 이에 INF4 정보증명서가 사용된다.

'인증수출자'에게 INF4 정보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납품자에게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INF4 정보증명서는 납품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이나 국가의 관세당국이 발급하며, 정보증명서가 발급된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서 당연히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INF4의 2번 칸에 기재된 국가 또는 국가들에 해당된다.

'인증수출자'가 INF 4 정보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INF 4 정보증명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한 부서단위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인증

수출자’ 는 INF 4 정보증명서 발급 요청시 -그 INF 4에 해당되는 - 납품자 신고서의 정당성을 판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상공회의소는 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INF 4를 발급받은 부서단위는 INF 4 정보증명서의 사본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한다.

7.3.9 물리적 구분

물리적 구분의 의미는 2.3.30.에 이미 대략 기술되어 있다.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범주 내에서 다음 사항은 여전히 중요하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이라는 개념은, ‘인증수출자’ 역시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이는 창고에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고관리와 같은 회계업무에도 적용된다.

7.4 예외사항

7.4.1 회계 구분

물리적 구분의 일반 원칙을 확장하여, 대부분의 특혜 규정에는 회계상 구분의 형태를 허용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있다. (2.3.31 참조) 제품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수출자는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이미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허가는 자격있는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회계 구분’ 허가서는 (‘서식집’ 에 미수록) 개인적 조건사항의 하나로써,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가 아닌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허가를 신청한다.

7.4.2 회계 구분 - 일반 조건

‘회계 구분’ 허가 취득의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자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물리적 구분에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구분 회계 시행이 부득이함을 제시해야 한다.

■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동일한 종류· 상업적 품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기술적 · 물리적 특질을 지녀야 한다. 재료는 최종제품으로 가공된 후 원

산지 규정 적용시 서로 구분될 수 없어야 한다.

■ 구분 회계의 적용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제작에 사용된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7.4.3 회계 구분 – 추가 요건

기업의 회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매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보관 중인 재료 및 – 필요시 – 재료의 가격이 수록된 자료를 기재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다음에 대한 수량이 기재되어야 한다.

■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와 – 필요시 – 사용된 재료의 전체 가격

■ 제조된 최종제품

■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구매자에게 납품된, 제조된 제품

■ 특혜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자에게 납품된, 제조된 제품

동시에, 제조시 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원산지 재료가 존재함이 재고관리상 나타나야 한다.

이 자료들을 적시할 때에는 회계에 명시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참작해야 한다. 제품에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 또는 발급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재고의 잔고는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차변에 기입되어야 한다.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 또는 발급되지 않고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이 재료의 잔고가 충분히 있는 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재고의 잔고만 차변에 기입할 수 있다. 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의 잔고를 차변에 기입하여야 한다.

원산지 결정 시점

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는 시점(제조 시점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자 내지는 EUR.1(또는 EUR-MED) 인증 발급일자)은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와 협의하여 확정

된다. 이 시점은 허가서에 수록된다.

초기 재고 결정

허가가 부여되기 전 관세국은 재고관리표에 근거하여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에서 어느 잔고를 재고로 보는지 결정한다.

허가소지자의 의무

허가소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다.

■ 허가서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와 납품자 신고서 및 만일의 부정한 EUR.1(또는 EUR-MED) 인증서 발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세관의 요청시, 서류, 문서, 계산서를 제공한다.

허가 거부 / 취소

회계 구분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담보하는 모든 담보 및 보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허가 발급은 거부되어야 한다.

허가소지자가, 제시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결정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향후 절차는 7.2.16 참조. 허가의 취소 또는 거부는 항소 가능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및 9조, 관련 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관련조항 제8:2조, 일반행정법 제 7:1조)
7.4.4 사전 서명 대체인증서 허가

Type E 보세창고(douane-entrepot type E) 허가를 보유한 업자에게, 보세창고 체계 상에 있고 그 업자의 창고에 보관된 비유럽공동체 물품(특혜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특정 경우와 조건 제시 하에서 EUR. 1 · EUR-MED 또는 FORM.A 인증서의 사전 서명 대체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허가가 부여된 후, 관세국이 미리 서명한 (일자 표시 및 공무원 서명이 없는 철제 업무용 도장) EUR.1 인증서 및 FORM A 인증서가 허가 소지자에게 처분되며 허가 소지자 자신이 – 관련 안내 설명에 따라 – 누락된 정보를 인증서에 추가 기입해야 한다. 인증서의 사전 서명 시와 대체 인증서 발급 사후에 – 회사의 행정문서대장

에 근거하여 - 관세국이 점검을 수행한다.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나와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 위치한 통관지정지로 운송될 경우에 허가서- ‘서식집’에 수록된 서식으로 작성된- 가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허가 신청

“FORM. A, EUR. 1 및 EUR-MED 사전 서명 대체인증서“ 허가는 Type E 보세창고 허가를 발급한 감독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 부여 대상자

이 허가에 전적으로 적합한 업자로는 Type E 보세창고 허가를 보유한 자, 그리고

■ 관세국의 경력자료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교체/분류를 요청하면서, 권한 있는 세관에 빈번하게 조회하는 자. 이 명문화로 인해 모든 Type E 보세창고 허가소지자에게 이 규정이 일반적,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배제된다.

■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발급된 대체인증서의 정당성을 간단한 방법으로 적시할 수 있는 자. 이는 행정문서대장이 최소한 보세창고 체계상의 물품 배치 보고서에 기재된 물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적시사항은 배송시마다 다음의 정보와 함께 추가 기재되어야 한다.

- 원래의 원산지 인증서 종류 및 번호 (적용될 경우에)

- 원산지 신고서가 제시된 상업서류의 번호 및 일자

- 대체인증서의 종류 및 번호

7.5 벌칙

7.5.1 일반사항

정기점검 또는 사후점검 중에,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국에 물품이동 관련하여 부정한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부정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일반관세법 및 일반관세규칙에 근거한 제재

■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수입국에 통보(네이메이헌 세관 전국 원산지업무팀 경유)하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

제재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을 채택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행정적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EUR.1 또는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관세당국에 A.TR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정하거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관세규칙 제 10:2조(부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일반관세규칙 제 1:16조(물품운송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부정하거나 미비한 자료), 내지 일반관세법 제 9:4조(허가의 의무사항 미이행))

물품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납품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EUR.1,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위한 납품자 신고서를 발급할 경우, 이는 행정적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관세규칙 제 10:2조(부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7.5.2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

모든 특혜 규정에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의 어떤 경우라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원산지 점검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수출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허가서에 제시된 특별 조건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허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허가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행정문서대장이 요건에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에 연관된 제한사항 또는 지시시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공통관세규칙(CDW) 제 8,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및 A.TR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지속적으로 부주의함을 보일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는 항소 가능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제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1:1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 통보는 취소 결정문 사본을 송부하면 된다.
7.5.3 수입국에 대한 통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든 사안을 통지 받아야 한다. 통지는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을 경유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LTO는 보고서를 평가하여 외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한다. 이에는 7.2.16에 설명된 절차를 준용한다.

【참고 2】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가이드라인

Merkblatt ermächtigter Ausführer

(Version 20. Januar 2015)

인증수출자 제도 설명서(매뉴얼)

(2015 년 1월 20일 자 버전)

Der ermächtigte Ausführer – seine Rechte und Pflichten

➢ Was ist ein ermächtigter Ausführer?

In den meisten Präferenzregelungen ist das Verfahren zur Inanspruchnahme von Vereinfachungen bei der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 kurz: EA – vorgesehen, für dessen Nutzung eine Bewilligung durch das für Sie zuständige Hauptzollamt erforderlich ist.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sind Sie im Rahmen der Selbstzertifizierung berechtigt,

- präferenzrechtliche Ursprungserklärungen auf Handelsdokumenten ohne wertmäßige Beschränkung eigenverantwortlich auszufertigen und/oder
- im Warenverkehr mit der Türkei (für unter die Regelungen der Zollunion fallende Waren) vorausbehandelte oder mit einem Sonderstempeleindruck versehene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zu verwenden.

Als Inhaber der Bewilligung entfällt für Sie die Notwendigkeit,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EUR.1 oder EUR-MED durch Ihre Zollstelle ausstellen zu lassen.

Für die Bewilligung des Verfahrens spielt es keine Rolle, ob Sie die betreffenden Waren in Ihrem eigenen Herstellungsbetrieb erzeugt haben oder als Handelswaren ausführen. Für Dienstleister (Zollagent, Spedition etc.) steht das Verfahren nicht zur Verfügung.

Hinweis:
*Im Warenverkehr mit der **Republik Korea** ist ausschließlich die Ursprungserklärung auf der Rechnung vorgesehen. Der Status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ist daher zwingend erforderlich, wenn der Wert der in einer Sendung enthaltenen Ursprungserzeugnisse 6.000 € überschreitet.*

➢ Welche Pflichten hat ein ermächtigter Ausführer?

Den Rechten, die mit der Erlangung des EA-Status einhergehen, stehen insbesondere die Verpflichtungen gegenüber,

- bei Exporten in die Türkei vorausbehandelte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nur für solche Waren zu verwenden, die sich im Zeitpunkt der Ausfertigung im zollrechtlich freien Verkehr befinden („Gemeinschaftswaren" im Sinne des Zollkodex);
- Ursprungserklärungen auf der Rechnung nur für solche Waren auszufertigen, die im Zeitpunkt der Ausfertigung die Ursprungseigenschaft im Sinne der jeweiligen Präferenzregelung besitzen;
- durch entsprechende Buchhaltungsunterlagen und Belege jederzeit die Ursprungseigenschaft bzw. bei Exporten in die Türkei die Freiverkehrseigenschaft nachweisen zu können;
- die Verantwortung für die korrekte Anwendung des Verfahrens zu tragen und darauf zu achten, dass die damit betrauten Beschäftigten Ihres Unternehmens über die erforderlichen Kenntnisse und innerbetrieblichen Steuerungsmöglichkeiten verfügen;
- Durchschriften oder Kopien der von Ihnen im Rahmen der Bewilligung ausgefertigten Präferenznachweise und alle zugehörigen Unterlagen innerhalb der vorgeschriebenen Zeiträume aufzubewahren und unter Beachtung der dafür geltenden Aufbewahrungsbestimmungen (insbesondere § 147 Abgabenordnung) der Zollbehörde bei Bedarf zur Verfügung zu stellen;
- der Zollbehörde die Einhalt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usfertigung der Präferenznachweise jederzeit nachweisen zu können, auch im Rahmen von Außenprüfungen oder anderen Überwachungsmaßnahmen in Ihrem Unternehmen.

인증수출자 – 그 권리와 의무

▷ 인증수출자의 정의는?

대부분의 특혜규정에는 “인증수출자” – 짧게는 (EA) 로서의 특혜 제시 간소화 청구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가 해당 세관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수출자는 자체 인증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 수출금액과 관계없이 특혜법적인 원산지 증명을 자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그리고)
- 터키와의 무역교류(관세 동맹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있어서 사전 인증되거나 특별 스탬프 인쇄로 인증된 movement certificate(Certificate (EU 역내 또는 EU 가 FTA 체결시 EUR.1 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한 – EU FTA 와는 관련 없음) A.TR.을 사용할 수 있다.
- 인증수출자는 세관을 통해 movement certificate A.TR, EUR.1 또는 EUR-MED 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해당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했는지, 또는 매매 상품으로 취급했는지 여부는 동이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관련 종사자(세관 직원, 운송업체 등)에는 그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지시사항:
특히 대한민국과 교역시. 수출물품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는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가 필히 요구된다.

▷ 인증수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인증수출자 (이하 EA) 로서의 지휘 획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가 따른다.

-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자유 유통 시점에 서명된 상품에 한해서만 사전준비된 무역인증서 A.TR. 을 사용해야 한다(세법에 있어서의 “공동 품목”)
- 계산서에 원산지 증명은, 그 작성 시점에 각각의 특혜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한다.
- 적절한 관리 대장과 영수증을 통해 항상 원산지 증명 지위 및 터키의 수출에 있어서는, 장외 시장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 절차의 적절한 활용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요구되는 지식과 업체 내부적인 관리 가능성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관련 증명서류(모든 복사본)와 관련 문서들을 보관해야 하며, 세관이 정한 보관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시 이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또한 인증수출자는 세관에게 특혜 증명 작성 규정의 준수하고 있음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업체 외부 검사와 기타 원산지관련 관리 및 감독 역시 포함한다.

Der Antrag

➢ Wie ist der Antrag zu stellen?

Der Antrag auf Bewilligung des Verfahrens „ermächtigter Ausführer" ist schriftlich zu stellen. Ein besonderes Antragsformular ist hierfür nicht vorgesehen.

➢ Wo ist der Antrag zu stellen?

Der Antrag ist an das für Sie zuständige Hauptzollamt zu richten. Zuständig ist im Regelfall das Hauptzollamt, in dessen Bezirk Sie Ihren Unternehmenssitz haben.

➢ Welche Unterlagen sind dem Antrag beizufügen?

Fügen Sie Ihrem Antrag

- einen aktuellen Auszug aus dem Handelsregister oder eine Gewerbeanmeldung und
- ein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bei *(vgl. dazu nächste Seite!)*.

➢ Welche Angaben muss der Antrag enthalten?

- Name und Anschrift Ihres Unternehmens;
- die Ansprechperson im Unternehmen mit den üblichen Kontaktdaten;
- den Ort, an dem die präferenzrechtlich relevanten Unterlagen aufbewahrt werden, falls dieser vom Unternehmenssitz abweicht;
- wenn Sie Waren auch von Betriebsstätten oder Versand-/Verladeorten in ander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ausführen, beantragen Sie eine Bewilligung nach Artikel 8 VO (EG) Nr. 1207/2001 (auch als „grenzüberschreitende EA-Bewilligung" bezeichnet) und geben die entsprechenden Orte und Mitgliedstaaten an;
- die Bewilligungsnummer einer ggf. bereits bestehenden Vereinfachung als „Zugelassener Wirtschaftsbeteiligter (AEO)" bzw. für die sogenannte „buchmäßige Trennung" oder für wirtschaftliche Zollverfahren wie die aktive Veredelung oder das Zolllagerverfahren;
- Ihre EORI-Nummer
  (EORI =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ystem);
- die voraussichtliche monatliche Anzahl der Exportsendungen, für die die Vereinfachung in Anspruch genommen werden soll und
- ggf. die Verpflichtungserklärung zum **Unterschriftsverzicht**.

➢ Wie funktioniert der „Unterschriftsverzicht"?

Ursprungserklärungen, die Sie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ausfertigen, müssen grundsätzlich handschriftlich unterschrieben werden. Sie können sich jedoch von der Pflicht zur Unterschriftsleistung befreien lassen. Dazu ergänzen Sie Ihren Antrag um eine Verpflichtungserklärung mit folgendem Wortlaut:

»Ich, der Unterzeichner, verpflichte mich, die volle Verantwortung für jede Erklärung auf der Rechnung oder einem anderen Handelspapier zu übernehmen, die mich so identifiziert, als ob ich sie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hätte.

(Ort, Datum, Unterschrift)«

▷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인증수출자" 로서의 허가 신청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신청 양식은 없다.

▷ **어디서 신청하는가?**

신청은 해당 세관에서 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업체가 위치해 있는 곳의 관할 세관을 말한다.

▷ **신청시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최근 상업등기 서류 또는 영업신고증
- 작업 및 조직지침 (이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조!)

▷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업체명 및 주소지
- 업체 담당자 및 통상적인 연락처
- 주소지와 특혜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보관 주소지
- 유럽연합 이내 다른 나라의 주소지 또는 발송/운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하고, 해당 주소지와 국가도 기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 업체(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허가번호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는 보세창고를 위한 허가 번호 기재
- 수출입업자 EORI번호
- 간소화 절차 청구 예정인 월별 수출위탁 추정 횟수와 존재할 경우 무서명 약정서

▷ **"무서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인증수출자(EA)로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 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수출자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 시 다음 전문을 통해 약정서 실행 선언을 해야 한다. "본 서명자는, 견적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증명 책임을 지며, 이로써 모든 자필 서명을 대신한다.
(장소, 날짜, 서명)

Di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

➢ Was ist ein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müssen Sie durch Ihre innerbetriebliche Organisation sicherstellen, dass

- Ursprungserklärungen auf der Rechnung nur für präferenzielle Ursprungswaren bzw.
- vorausbehandelte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nur für Waren des zollrechtlich freien Verkehrs

ausgefer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Ursprungserklärungen ist es unerlässlich, die Regeln für den Ursprungserwerb einzuhalten und die Ursprungseigenschaft jederzeit zweifelsfrei nachweisen zu können.

Dabei dient die sogenannt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 kurz: AuO – als innerbetriebliche Verfahrensanweisung.

Sie wird später Bestandteil der Bewilligung und legt als **verbindliche** Vorgabe an die Angehörigen Ihres Unternehmens die Abläufe, Verfahrensweisen und Verantwortlichkeiten unter präferenzrechtlichen Aspekten fest.

➢ Gibt es ein Muster für die AuO?

Kein Unternehmen ist mit einem anderen vollständig vergleichbar!

Unterschiede im Warenkreis, in der Unternehmensgröße und -struktur, den internen Hierarchien und Verantwortlichkeiten, in Lager-, Produktions- und Vertriebsabläufen, den eingesetzten IT-Verfahren, der internen Logistik und vieles mehr erfordern es, Ihre AuO individuell an den Gegebenheiten **Ihres** Unternehmens auszurichten.

Deswegen ist für die AuO weder ein Formular vorgesehen noch kann es dafür eine „Muster-AuO" geben. Von der „Übernahme" ggf. im Internet enthaltener Mustervorlagen wird abgeraten.

➢ Was muss die AuO enthalten?

Die AuO muss wenigstens die folgenden Angaben/Festlegungen enthalten:

- Welche unternehmerische Tätigkeit üben Sie aus (Handel und/oder Herstellung)?
- Wer ist „Gesamtverantwortliche/r"?
- Wer ist für die Ausfertigung und ggf. Unterzeichnung der Präferenznachweise verantwortlich?
- Wie und ggf. mit welcher Software erfolgt die Erfassung der Wareneingänge?
- Wie sind die zur Ursprungsbestimmung notwendigen Unterlagen für Vorlieferungen anzufordern und zu prüfen?
- Wie ist die Ursprungseigenschaft bzw. Freiverkehr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zu prüfen und zu dokumentieren?
- Wie ist die Archivierung der ausgefertigten Präferenznachweise und zugehörigen Nachweisunterlagen vorzunehmen?
- Wie stellen Sie sicher, dass der für das Präferenzrecht erforderliche Informationsaustausch zwischen den unterschiedlichen Abteilungen Ihres Unternehmens erfolgt?

Die nachfolgenden Seiten sollen Sie dabei unterstützen, die für Ihr Unternehmen passende AuO zu erstellen.

In Abhängigkeit von Ihren betrieblichen Gegebenheiten können weitere Festlegungen erforderlich sein. Auch aus diesem Grund empfiehlt es sich, einen ersten Entwurf Ihr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vor der Antragstellung mit dem zuständigen Sachbearbeiter Ihres Hauptzollamts zu besprechen.

작업 및 조직 지침서("AuO")

▷ 작업 및 조직 지침서의 정의는?

▷ 인증수출자는 업체 내부 조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특혜적인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만 견적서에 원산지 증명을 포함해야 하며
- ❍ 자유 유통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Movement Certificate 을 적용시켜야 한다.
- ❍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는 원산지 기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특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여기에는 이른바 (원산지) 작업 및 조직 지침서가 - 이하 AuO는 승인의 구성요소가 되며 업체 당사자 관련 조치로써, 특혜법적인 관점 하에 절차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AuO(이하 원산지관련 조직 및 조직 지침)의 샘플이 존재하는가?

- ❍ 완전하게 비교 가능한 두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상품군, 업체규모 및 구조, 내부 서열과 책임소재, 보관, 생산, 영업 절차, IT 행위, 내부 논리를 포함한 수많은 요소에서 차이로 인해 AuO는 신청 기업의 정황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
- ❍ 이에 따라 AuO 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AuO 샘플" 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샘플 양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 AuO 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AuO 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업체는 주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가?(생산/판매/유통 기타 등등…)
- ❍ "총 책임자" 는 누구인가?
- ❍ 특혜증명의 작성과 필요한 경우 서명 책임자는 누구인가?
- ❍ 상품 입하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파악하고 있는가?
- ❍ 시험 배송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서류는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검사하는가?
- ❍ 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과 자유 유통 자격은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문서화 하는가?
- ❍ 작성된 특혜 증명과 관련 증명서류 보관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 특혜 증명에 관해 요구되는 부서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다음 내용은 신청 업체에 맞는 AuO 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신청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초기 AuO 는 신청 전, 관할 세관 담당자와 논의 할 것을 추천한다.

Inhalt d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 Liegt die unternehmerische Tätigkeit im Handel und/oder in der Herstellung der Ausfuhrwaren?

Bei reinen Handelsgeschäften spielen für den Nachweis der Ursprungseigenschaft die Dokumente für die von Ihnen bezogenen Vorlieferungen die zentrale Rolle. Stellen Sie hingegen die Produkte selbst her, sind die Regeln für den Ursprungserwerb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tellen Sie deshalb in der AuO die Art Ihrer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dar. Für die Bewilligung ist es hilfreich, wenn Sie auch den Warenkreis angeben (Warenbezeichnung, HS-Kapitel oder HS-Position, Unterscheidung zwischen Handel und Eigenfertigung).

➢ Wer ist Gesamtverantwortliche/r und was sind ihre/seine Aufgaben?

Der/die Gesamtverantwortliche ist die Person, die in Ihrem Unternehmen die ordnungsgemäße und rechtskonforme Umsetzung des Verfahrens ermächtigter Ausführer verantwortet.

Deshalb kommt nur eine in Ihrem Unternehmen beschäftigte Person in Frage, die nicht nur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s Präferenzrechts verfügt, sondern zudem auch die Befugnis besitzt, in die betrieblichen Abläufe so weit steuernd einzugreifen, wie dies für die Einhaltung der präferenziellen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ist. Ferner hat er/sie die Tätigkeit der mit der Ausfertigung der Präferenznachweise befassten Beschäftigten zu überwachen und sicherzustellen, dass diese die Ursprungsregeln kennen, verstehen und richtig anwenden.

Geben Sie daher in der AuO neben dem Namen und den Kontaktdaten der/des Gesamtverantwortlichen auch die Funktion im Unternehmen und die Befugnisse an.

➢ Wer ist für die Ausfertigung der Präferenznachweise verantwortlich?

Ursprungserklärungen dürfen nur durch dazu befugte Beschäftigte ausgefertigt werden.

Benennen Sie die befugten Beschäftigten in der AuO namentlich unter Angabe ihrer innerbetrieblichen Funktion und berücksichtigen Sie bei der Auswahl, dass diese Personen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s Präferenzrechts verfügen und innerbetrieblich Zugriff auf die erforderlichen Daten besitzen müssen.

Alternativ kann hier auch die für die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zuständige Organisationseinheit mit allen dort beschäftigten Personen als verantwortlich benannt werden. Bei dieser Variante muss aus den Unterlagen des Unternehmens hervorgehen, welche Beschäftigten zu dieser Organisationseinheit gehören.

➢ Wer ist für die Unterzeichnung der Präferenznachweise verantwortlich?

Ursprungserklärungen auf der Rechnung müssen nur dann handschriftlich unterschrieben werden, wenn der Unterschriftsverzicht nicht bewilligt ist.

Benennen Sie die zur Unterzeichnung befugten Beschäftigten namentlich in der AuO.

▷ **비즈니스 행위란 수출품목의 생산에 있는 것인가? 또는 취급에 있는 것인가?**

순수 영업행위에 있어서 원산지 특성 증명에는 신청 업체의 입하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수출품목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 규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신청 업체는 AuO 에 해당 비즈니스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 품목 디테일(품목명, HS 코드 또는 HS 분류 영업과 자체(생산 구분)을 기재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는가?**

총 책임자는 신청 업체에서 인증수출자 절차의 적절/적법한 실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신청 업체 직원 중 한 명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인은 특혜법 관련 지식에 능통할 뿐 아니라 특혜법적인 전제 조건 만족을 위해 경영 절차에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인은 특혜증명 관련 인력의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하며, 이들이 원산지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AuO 에는 총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업체 내부에서의 역할과 권한도 명시해야 한다.

▷ **특혜 증명 완성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원산지 증명에는 관련 권한자만 관여해야 한다.

AuO 에는 그들의 이름과 업체 내부에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책임자들이 특혜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요구되는 데이터로의 접근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혜 원산지 증명과 관련 책임 조직체와 구원성들이 대안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인사들이 조직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출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특혜증명의 서명은 누가 책임지는가?**

견적서의 원산지 설명에는 무서명 허가가 없는 경우에만 자필 서명되어야 한다.

AuO에는 서명 권한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Inhalt d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 Wie werden die Wareneingänge erfasst?

Stellen Sie in der AuO dar, wie und mit welcher Software die Wareneingänge in der Bestandsbuchhaltung, im Warenwirtschaftssystem usw. erfasst werden.

Legen Sie fest, ob und wie neben dem Wert (bezogen auf welche Mengen) auch Angaben zur Einreihung der Wareneingänge zu erfassen sind.

Treffen Sie Regelungen, mit denen Sie sicherstellen, dass die Wareneingänge so erfasst werden, dass sie als Waren

- mit Urspr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 Europäischen Union,
- mit Ursprung in einer anderen Vertragspartei (bei Anwendung einer Kumulierungsregel) oder
- ohne Ursprungseigenschaft

erkennbar sind.

Für Vorerzeugnisse, die Sie mit einem präferenziellen Ursprung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 Union oder in einer anderen Vertragspartei beziehen, muss dieser Vor-Ursprung durch sogenannte **präferenzielle Vorpapiere nachgewiesen** sein, wenn diese Waren in Ihrem Unternehmen

- nicht be- oder verarbeitet sondern nur gehandelt werden oder
- bei einer weiteren Be- oder Verarbeitung als Vorerzeugnisse mit Ursprung eingesetzt werden sollen.

Nehmen Sie in die AuO auch verbindliche Verfahrensweisen zur Erfassung weiterer präferenzrechtlicher Merkmale der Wareneingänge mit Ursprungseigenschaft auf.

Bei Lieferantenerklärungen können dies beispielsweise etwaige Kumulierungsvermerke bzw. das Fehlen solcher Vermerke sein oder die Angabe von Warenverkehren, für die die dokumentierte Ursprungseigenschaft Gültigkeit hat.

➢ Was ist hinsichtlich der Anforderung, Prüfung und Archivierung der präferenziellen Vorpapiere zu beachten?

Als präferenzielle Vorpapiere kommen in Frage:

- Lieferantenerklärungen (Einzel- oder Langzeit-Lieferantenerklärungen) für Waren mit Präferenzursprungseigenschaft, die auf der Eingangsrechnung oder auf einem Vordruck abgegeben sein können (im Einzelfall kann auch ein durch die Zollverwaltung ausgestelltes Auskunftsblatt INF 4 zum Nachweis der Richtigkeit einer Lieferantenerklärung vorliegen);
- Präferenznachweise bzw. Zollbescheide für importierte Vorerzeugnisse.

Legen Sie in der AuO fest, in welcher Weise die **präferenziellen Vorpapiere** anzufordern, zu prüfen und zu archivieren sind, insbesondere

- wie die Gültigkeit von Langzeitlieferantenerklärungen zu überwachen ist,
- wie sicherzustellen ist, dass diese Vorpapiere rechtzeitig angefordert werden;
- wie und durch wen die darin enthaltenen Angaben zu prüfen sind;
- in welcher Form (Papier oder elektronisch) und wie lange diese Vorpapiere zu archivieren sind. (Beachten Sie dabei § 147 der Abgabenordnung.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EUR.1 und EUR-MED sowie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e Ursprungserklärungen auf der Rechnung müssen im Original aufbewahrt werden!).

➢ Was ist hinsichtlich der Lagerung der Waren und deren Entnahme in die Produktion zu beachten?

Treffen Sie Regelungen, die eine zweifelsfreie Identifikation der Lagerbestände und der in die Produktion entnommenen Waren ermöglichen. Es muss möglich sein, diese den präferenziellen Vorpapieren (Lieferantenerklärungen/Präferenznachweise) auch im Nachhinein genau zuzuordnen.

AuO의 내용

▷ 재고관리는 어떻게 파악되는가?

신청업체는 AuO 에 재고입하가 어떻게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재고기록, 재고관리체계 등에 파악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그 가치(양적으로)와 더불어 재고 입하 분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재고 입하가 다음과 같이 파악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라 :

- ❍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연합의 원산지의 품목으로
- ❍ 기타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 품목으로 (누적 원칙 적용시)
- ❍ 원산지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유럽공동체/연합 또는 기타 체약 당사국에서 원재료의 경우, 이러한 원재료-원산지는 이른바 특혜적인 예비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 업체의 품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

- ❍ 가공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만 이루어질 경우
- ❍ 후속 가공 절차에서 원산지를 포함한 원재료로써 투입될 경우.

AuO 에는 원산지 특성과 함께 후속적인 재고 입하의 특혜법적 특성에 대한 파악 절차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공급자 확인에 있어서 만일의 누적 비고(備考)및 그 누락에 해당되거나 문서화된 원산지 특성 유효성을 가진 상품 흐름 제시에 해당할 수 있다.

▷ 특혜법적인 예비 서류의 요구, 보관, 검사에 관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특혜법적인 예비 서류는 다음을 말한다:

- ❍ 초기 견적 또는 초기 납부시 제출된 특혜 원산지의 특성을 가진 품목의 공급자 확인서(단기 또는 장기 공급자 확인서)(1회성 공급자의 경우 세관이 발행한 안내서 INF4 가 공급자 확인서의 유효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 ❍ 수입된 원재료의 특혜 증명 및 관세사정 문서 AuO 에는 특혜증명 예비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요구, 검사 및 보관되어야 하는지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 ❍ 장기 공급자 확인서의 유효성이 어떻게 감독되어야 하는지
- ❍ 이러한 예비 서류가 적절한 시점에 요구됨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검사되어야 하는지
- ❍ 예비 서류가 어떠한 방식으로(전자, 종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야 하는지. (여기에는 세법 147조(Abgabenordnung 147)를 참고하라. Moving Certificate EUR.1 과 EUR-MED 및 견적서에 필사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원본이 보관되어야 한다!)

▷ 품목 보관 및 생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보관 재고와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을 정의/구분 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이후에는 특혜적 예비 서류(공급자 확인서/특혜증명서)에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Inhalt d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 Wie wird die Ursprung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erworben?

Obgleich die einzelnen Präferenzabkommen einer vergleichbaren Ursprungssystematik folgen, bestehen dennoch Unterschiede in der Ausgestaltung der Ursprungsregeln. Der Ursprung einer Ware ist daher stets abkommensbezogen im Sinne einer ganz bestimmten Präferenzregelung zu prüfen und nicht ohne weiteres auf eine andere Präferenzregelung übertragbar.

Legen Sie daher fest, dass die Ursprungsprüfung immer auf Grundlage der für das jeweilige Bestimmungsland der Ausfuhrware geltenden Präferenzregelung zu erfolgen hat.

Die weitere Prüfung erfolg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rsprungssystematik**. Legen Sie in der AuO fest, welche der nachfolgenden Ursprungsregeln zur Ursprungsprüfung heranzuziehen sind:

- vollständige Gewinnung oder Herstellung,
- ausreichende Be- oder Verarbeitung,
- Kumulierung.

Legen Sie auch fest, wie innerbetrieblich die Ermittlung und Beachtung der zutreffenden und aktuellen Ursprungsregeln sicherzustellen und zu dokumentieren ist.

Weitere Fragen, die sich aufgrund der Gegebenheiten Ihres Betriebes stellen könnten, **finden Sie auf der nächsten Seite!**

➢ Wie wird die Freiverkehr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erworben?

Die Verwendung von vorausbehandelt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für Exporte in die Türkei setzt voraus, dass die Ausfuhrwaren aus dem zollrechtlich freien Verkehr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stammen. (Achtung: Die hierfür zugrundeliegende Zollunion mit der Türkei gilt jedoch weder für Waren der Agrarregelung noch für sogenannte EGKS-Waren. Bei solchen Waren kommt auch beim Export in die Türkei eine Ursprungspräferenzregelung zur Anwendung.)
Im zollrechtlich freien Verkehr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finden sich

- Waren, die in der Gemeinschaft hergestellt wurden, einschließlich der Waren, die dort vollständig oder teilweise unter Mitverwendung von Waren aus dritten Ländern hergestellt worden sind, welche ihrerseits in den zollrechtlich freien Verkehr überführt wurden;
- Waren aus dritten Ländern, für die die Einfuhrförmlichkeiten erfüllt und die anfallenden Zölle und Abgaben gleicher Wirkung erhoben und nicht ganz oder teilweise rückvergütet worden sind.

Legen Sie daher in der AuO fest, wie in Ihrem Unternehmen die Freiverkehr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zu prüfen und zu dokumentieren ist.

➢ Wie wird die innerbetriebliche Kommunikation sichergestellt?

Die vorgenannten Punkte sind nicht nur bei der Erstellung der AuO von Bedeutung. Menge, Art, Wert und Herkunft der eingesetzten Vormaterialien sowie die vorgenommenen Be- oder Verarbeitungen spielen auch dann eine entscheidende Rolle, wenn die Bewilligung bereits erteilt wurde.
Die innerbetriebliche Kommunikation muss gewährleisten, dass die für das Präferenzrecht erforderlichen Informationen zwischen den unterschiedlichen Abteilungen Ihres Unternehmens ausgetauscht werden.

Treffen Sie daher in der AuO Regelungen, wie sicherzustellen ist, dass alle ursprungsrelevanten Informationen den für die Ausfertigung der Präferenznachweise Verantwortlichen ebenso zur Verfügung stehen wie den im Einkauf und ggf. auch in der Fertigung beteiligten Beschäftigten. Legen Sie auch fest, ob und ggf. in welcher Form eine betriebsinterne Überwachung stattzufinden hat.

AuO의 내용

▷ 수출품목의 원산지 지위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특혜 협정이 비교 가능한 원산지 분류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각) 원산지 규정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품목의 원산지는 이에 따라 특정 특혜 규정과 관련지어서 검사되어야 하며 여타 특혜 규정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업체는 품목의 원산지 검사가 해당하는 각 나라의 특혜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해야 한다.

후속적인 검사는 원산지분류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 업체는 AuO 에 다음 중 어떤 원산지 규정이 검사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완전한 획득 및 생산
- ❍ 충분한 가공
- ❍ 축척

신청 업체는 또한, 해당하는 현재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의와 고려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고 문서화 되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신청 업체에 대한 기타 질문은 다음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수출 품목의 자유 유통 지위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사전조율된 movement certificate A.TR. 의 사용은 수출 품목이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조심: 여기에 해당하는 터키와의 관세 동맹은 그러나 우뭇가사리 규정과 이른바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품목이 터키로 수출될 경우에는 원산지특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체계에는 다음 품목이 포함된다.

- ❍ 제 3국의 품목을 사용하여 (유럽 공동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되어 제 3국에서 자유 유통 체계에 편입된 경우
- ❍ 제 3국에서 왔으며, 수입 절차가 통과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닌 관세가 징수되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환불 되지 않은 상품.

따라서 신청 업체는 AuO 에 수출품목의 자유 유통 지위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 및 문서화 되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 업체 내부의 소통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앞서 언급한 점들은 AuO의 작성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입된 원재료의 양, 종류, 가치, 그리고 유래와 가공 절차는 허가가 났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부 의사 소통은 특혜권에 요구되는 정보의 부서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AuO 규정에 따라 신청 업체는 모든 원산지 관련 정보가 특혜 증명 책임 인력뿐 아니라 구매부서 및 완성에 관련된 인력들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업체는 또한, 내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가공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 Was ist zum Erwerb der Ursprung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außerdem zu beachten?

Aufgrund der individuellen Gegebenheiten Ihres Betriebes kann sich die Notwendigkeit ergeben, zum Erwerb der Ursprung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zu folgenden beispielhaften Fragen Regelungen zu treffen:

- Liegen für Ausfuhrwaren verbindliche Ursprungsauskünfte vor, ggf. für welche?
- *Wenn Be- oder Verarbeitungen an mehreren von der Bewilligung erfassten Unternehmensstandorten erfolgen:* Wie hat der Informationsaustausch zu erfolgen bzw. wie sind die erforderlichen Daten zur Verfügung zu stellen?
- In welcher Form sind Kalkulationen zur Bestimmung der Ursprungseigenschaft der Ausfuhrwaren durchzuführen und zu dokumentieren?
- Wie wird sichergestellt, dass eine IT-gestützte Präferenzkalkulation nicht „überschrieben" werden kann?
- Werden gleiche Vormaterialien mit und ohne Ursprung verwendet, so müssen diese Vormaterialien unterscheidbar sein und getrennt gelagert werden.

  Wie wird die Unterscheidbarkeit / getrennte Lagerung sichergestellt?
- Wie wird die ordnungsgemäße Einreihung der Ausfuhrwaren in die zutreffende HS-Position und damit die korrekte Zuordnung in der Verarbeitungsliste sichergestellt?
- Das Nämlichkeitsprinzip erfordert es, dass den hergestellten Ausfuhrwaren die bei ihrer Herstellung konkret verwendeten Vormaterialien zugeordnet werden können bzw. genau die in der Kalkulation aufgeführten Vormaterialien verwendet werden. Dies ist insbesondere dann von Bedeutung, wenn
  -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ggf. auch Vormaterialien mit Ursprungseigenschaft) zu unterschiedlichen Einstandspreisen bezogen werden;
  - Vormaterialien mit Ursprungseigenschaft von unterschiedlichen Lieferanten – mit inhaltlich unterschiedlichen Lieferantenerklärungen – bezogen werden.

  Eine nur buchmäßige Trennung ist dabei ebenso wenig anwendbar wie eine Verwaltung nach dem FIFO-Prinzip.

  Wie soll die Einhaltung des Nämlichkeitsprinzips sichergestellt werden?
- *Wenn Bearbeitungsschritte außerhalb des eigenen Unternehmens durchgeführt werden (Lohnveredelungen, „verlängerte Werkbank"):* Legen Sie fest, wie in diesen Fällen die Dokumentation dieser Be- oder Verarbeitungen zu erfolgen hat (Lieferantenerklärungen, sonstige Unterlagen).
- *Wenn Bearbeitungsschritte außerhalb der jeweiligen Präferenzzone durchgeführt werden (Ausnahmen vom Territorialitätsprinzip):* Legen Sie fest, wie in diesen Fällen die Dokumentation dieser Be- oder Verarbeitungen zu erfolgen hat.
- *Wenn die Verarbeitungsliste als anwendbare Bedingung einen sogenannten Positionswechsel vorsieht* (Das hergestellte Erzeugnis muss einer anderen HS-Position zugewiesen werden als die für die Herstellung verwendeten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In der Regel müssen alle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den Positionswechsel erfüllen, sofern nicht eine Toleranzregel anwendbar ist.):
  - Wie ist die ordnungsgemäße Einreihung der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in die zutreffende HS-Position sicherzustellen? Ist auf dem Zugangsbeleg (Einkaufsrechnung, Lieferschein) die Beschaffenheit der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so genau beschrieben, dass eine Einreihung zweifelsfrei möglich ist und so die Verarbeitungsstufe nachgewiesen werden kann?
  - Legen Sie fest, ob und ggf. wie Toleranzklauseln genutzt werden dürfen.
- *Wenn die Verarbeitungsliste als anwendbare Bedingung eine Wertklausel* (der höchstens zulässige Wert der verwendeten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ist festgelegt als Prozentsatz in Relation zum Ab-Werk-Preis des hergestellten Erzeugnisses.) *oder einen Vergleich zwischen dem Wert der verwendeten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und dem Wert der verwendeten Vormaterialien mit Ursprung vorsieht:*
  - Treffen Sie Regelungen, die sicherstellen, dass in der Präferenzkalkulation der tatsächlich für die konkrete Ausfuhrware anwendbare Ab-Werk-Preis sowie die tatsächlichen Werte der eingesetzten Vormaterialien ohne Ursprung und ggf. die tatsächlichen Werte der eingesetzten Vormaterialien mit Ursprung angewendet werden (Nämlichkeitsprinzip).
  - Wie werden dabei Preisänderungen (z.B. Rabatte, Schwankungen in Währungskursen) berücksichtigt?

    Eine Durchschnittspreiskalkulation ist dabei nicht zulässig (Ausnahmen gelten nur für Exporte zu Kumulierungszwecken in Entwicklungsländer im Rahmen des Allgemeinen Präferenzsystems und in Überseeische Länder und Gebiete). Schaffen Sie ggf. Worst-Case-Regelungen zur Wahrung der präferenzrechtlichen Erfordernisse.
- *Wenn diagonale Kumulierungen zur Anwendung kommen:* Treffen Sie verbindliche Regelungen, die eine korrekte Anwendung der jeweiligen Matrix sicherstellen.

AuO의 내용

▷ **수출 품목의 원산지지위 획득에 또 어떤 것들이 고려해야 하는가?**

원산지 지위 획득에 있어서 각 업체별 상황이 다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 수출품목에 있어서 원산지 정보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가?
- 다수의 허가 업체의 주소지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 교환은 어떻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해 제공되는가?
- 수출품목 원산지 특성의 평가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는가?
- IT 형식으로 보호된 특혜평가가 "덮어쓰기" 되지 않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원산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예비재료(원재료)가 사용 될 경우 이러한 재료는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수출품목의 해당 품목분류는 어떻해 이루어 지는가
- 동일 원리에 의해, 생산된 수출물품은 생산과정에 있어 사용된 원산지에 대한 품목분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원산지가 없는 원재료를(어떤 경우 원산지 지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원가와 관련시키는 경우
- 원산지 지위가 존재하는 원재료가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자 확인과 함께 - 관련되는 경우

여기에 있어서 회계 분리는 선입 선출 원칙만큼이나마 쓸모가 없다.

- 동일 원리에의 준수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가공 절차가 신청 업체 외부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공계약서, "하청계약서(extended workbench)" 신청 업체는 이러한 경우 가공 절차의 문서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공급자 확인서, 기타 문서 등)
- 각각의 특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공 절차가 행해지는 경우 (영토주의의 예외적인 경우): 신청 업체는 이러한 경우 가공 절차의 문서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가공목록이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이른바 지위 변경이 예정된 경우(생산품은 기존의, 원산지가 없는 예비재료의 생산과 다른 HS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가 없는 모든 예비재료는 지위 변경을 해야 한다):
- 원산지가 없는 예비 재료의 해당 HS 지위로의 적절한 분류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초기 서류(매입서, 납품서)에 원산지가 없는 예비 재료의 특성이 그것의 분류가 확실히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이어서 가공 단계가 입증이 가능한가?
- 예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가공목록이 사용 가능한 조건으로 가액약관(원산지가 없는 원재료의 최고 허용 가치는 생산품의 공장인도가격과 관련해서 퍼센트 비율로 정해진다.) 또는 원산지가 없는 원재료 가치와 원산지가 존재하는 원재료의 가치 비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특혜 평가에 있어서 활용 가능성, 정확한 공장도 가격,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실질적인 가치 그리고 투입된 원산지에 대한 가치가 활용 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함
- 여기에 있어서 가격 변동은(예를 들어, 할인, 환율 변동) 어떻게 고려되는가?
- 여기에 평균가격책정은 불가능하다.(예외는 개발국의 누적효과 관련 수출에만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인 특혜체계와 해외에서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혜법적인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해 최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사누적조항이 활용되는 경우: 각 매커니즘의 정확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Verwendung der Bewilligung

➢ Wie wird die Bewilligung verwendet?

Sie bekommen von Ihrem zuständigen Hauptzollamt eine Bewilligung, sofern die Voraussetzungen dafür erfüllt sind, und eine Bewilligungs-Nummer. Nehmen Sie alle zugehörigen Unterlagen (wie z. B. den Antrag, die Bewilligung, spätere Änderungen) zu einem Belegheft.

Die Bewilligung ist zeitlich unbegrenzt gültig und gilt für alle Präferenzregelungen (Bestimmungsländer), in denen die Vereinfachung des ermächtigten Ausführers vorgesehen ist.

Wenn das Hauptzollamt in der Bewilligung keine abweichende Regelung getroffen hat, können Sie von der Vereinfachung bereits ab dem Datum der Antragstellung Gebrauch machen (sofern zu diesem Zeitpunkt das Abkommen bereits in Kraft ist oder anderenfalls vorbehaltlich und ab de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Änderungen des Namens oder der Rechtsform Ihres Unternehmens sowie in der Person des Gesamtverantwortlichen müssen Sie Ihrem Hauptzollamt unverzüglich schriftlich mitteilen.

➢ Was ist bei der Ausfertigung einer Ursprungserklärung zu beachten?

Der jeweilige Wortlaut der Ursprungserklärung bzw. der Ursprungserklärung EUR-MED im Warenverkehr mit dem jeweiligen Bestimmungsland ist verbindlich. In der Ursprungserklärung ist die Bewilligungsnummer einzutragen.

Eine Ursprungserklärung kann bei der Ausfuhr der Erzeugnisse oder nach deren Ausfuhr ausgefertigt werden. Sie ist maschinenschriftlich, gestempelt oder gedruckt auf allen Ausfertigungen Ihrer Rechnung, Ihres Lieferscheins oder eines anderen eigenen Handelspapiers auszufertigen.

Die Erzeugnisse sind so genau zu bezeichnen, dass die Feststellung der Nämlichkeit möglich ist.

Besteht das Handelspapier aus mehreren Seiten, muss jede Seite dieselbe (Lieferschein- / Rechnungs-) Nummer sowie die jeweilige Seitenzahl enthalten. Die Ursprungserklärung ist auf der letzten Seite abzugeben, wobei ersichtlich sein muss, auf welche Erzeugnisse / Positionen sie sich bezieht. Waren ohne Ursprungseigenschaft müssen eindeutig gekennzeichnet werden. Haben die in der Rechnung oder dem sonstigen Handelspapier genannten Waren ihren präferenziellen Ursprung in verschiedenen Ländern oder Gebieten, sind die Namen oder offiziellen Abkürzungen der Länder oder Gebiete anzugeben.

➢ Was ist bei der Verwendung vorausbehandelter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zu beachten?

Legen Sie Ihrer Zollstelle – die in den Feldern 1 und 13 bereits ausgefüllten –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zusammen mit einer Aufstellung vor, aus der Anzahl und Nummern der Formblätter hervorgehen. In Feld 8 („Bemerkungen") ist der Vermerk „Vereinfachtes Verfahren" anzubringen. Ihre Bewilligungsnummer geben Sie in dieser Aufstellung an.

Ihre Zollstelle versieht für einen Monat im Voraus die „Bescheinigung der Zollstelle" in Feld 12 mit Dienststempelabdruck und Unterschrift. Im Zeitpunkt der Ausfuhr müssen Sie dann die A.TR. in allen Pflichtfeldern unter Beachtung der Anmerkungen auf der Rückseite der Formblätter vervollständigen.

➢ Was ist bei der Verwendung vo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A.TR. mit Sonderstempeleindruck zu beachten?

Die Formulare mit Sonderstempeleindruck sind von einer zugelassenen Druckerei zu beziehen *(vgl. nächste Seite)*.

Im Zeitpunkt der Ausfuhr müssen Sie dann die A.TR. in allen Pflichtfeldern unter Beachtung der Anmerkungen auf der Rückseite der Formblätter vervollständigen.

허가의 활용

▷ 허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해당 업체는 관련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을 관할 세관에서 허가와 허가 번호를 받게 된다. 업체는 모든 관련 서류(예를 들어, 신청서, 허가서, 차후 변경사항) 를 모아서 보관해야 한다.
허가의 유효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증수출자의 간소화가 예정되어 있는 모든 특혜 규정(규정국)에 적용된다.

관할 세관의 기타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업체는 신청일로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이 시점에 협정이 유효한 경우, 또는 여타 방법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은 경우)
업체 명 또는 법적 형식 및 총 책임자 변경은 지체 없이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 원산지 증명 절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각 원산지 증명 및 유통에 있어서 EUR-MED 원산지 증명은 각각의 규정국과 관련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허가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품목의 수출 시점 또는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이는 계산서, 납품서, 또는 기타 자체 문서에 타자기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되어야 한다.
생산품에 대한 서술은 동일 원리에 부합할 정도로 정확해야 한다.

서류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시, 모든 페이지는 동일한(납품-/계산) 번호 및 각각의 페이지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생산품/지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서술되어야 한다. 계산서 및 기타 서류에 언급된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가 여러 지역에 있다면, 그 나라의 이름 또는 공식적인 약어가 서술되어야 한다.

▷ 사전조율된 movement certificate A.TR. 활용에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업체는 해당 세관에 항목 1과 13이 이미 채워져 있는 movement certificate A.TR. 을, 서식용지의 수와 번호가 언급되어 있는 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덟번째 항목 (코멘트) 에는 "간소화된 절차" 가메모가 있어야 한다. 이 목록에는 업체의 허가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세관은 우선적으로 한달 동안 항목 1의 "세관 증명서"를 공식적인 마크와 서명으로 채울 것이다. 수출 시점에서는 업체가 A.TR. 을 모든 필수항목에 완성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서식 용지 뒷 페이지의 참고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 의 활용에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서류는 (특별히) 허가된 인쇄업체와 관련이 있다(다음 페이지에). 업체는 수출 시점에 서식용지 뒷 페이지의 참고사항의 고려하에 A.TR.을 모든 필수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참고 3】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작업 및 조직 지시사항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für das präferenzielle Nachweisverfahren als Ermächtigter Ausführer

Vereinfachte Fassung, nur nutzbar für EU-Ursprungsware ohne Kumulation

Dieses Muster ein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kann Ihnen als Vorlage zur Erstellung der eigenen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die Ihre innerbetrieblichen Arbeitsabläufe darstellt, dienen.

Da jedes Unternehmen anders strukturiert ist, können Sie dieses Muster nicht unmittelbar auf Ihr Unternehmen übertragen. Es muss daher noch **angepasst** werden:

- Die mit ⓘ gekennzeichneten
  - Hinweise sollten in Ihr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übernommen werden,
  - Tipps stellen Anregungen dar, um Ihnen die Anpassung der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zu erleichtern und sollten nicht wiedergegeben werden.
- Bei verschiedenen Varianten ist die zutreffende auszuwählen und angepasst wiederzugeben.
- **Diese vereinfachte A&O-Fassung ist einsetzbar für Unternehmen, die ausschließlich Waren mit dem präferenziellen Ursprung EU (bzw. EG oder denen Mitgliedsstaaten) nutzen wollen und auch keinen Gebrauch von der Kumulation machen. Sollte der präferenzielle Ursprung anderer Länder (z.B. Schweiz) genutzt werden sollen, dann muss das im Einzelverfahren ohne Vereinfachung erfolgen.**
- Um Ihr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so kurz und präzise wie möglich zu halten, sind alle Textbausteine, die nicht benötigt werden, zu entfernen. Beispielsweise kann ein Handelsbetrieb die Ursprungsprüfung eigengefertigter Waren löschen; werden keine Waren in die Türkei ausgeführt, kann der Punkt Freiverkehrspräferenz entfallen.
- Gewähr für die Aktualität und Richtigkeit der Angaben wird nicht gegeben, auch wenn di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mit der gebotenen Sorgfalt erstellt wurden.

작업및조직지시사항

인증수출자로서의 특례법 증명 절차를 위하여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이하 AuO)의 견본은 신청 업체 내부의 작업 절차를 나타내는 AuO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업체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 견본은 즉각적으로 신청 업체에 적용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I 로 표시된

지시사항은업체의 AuO 에 적용되어야 한다,

힌트는업체의 AuO 작성을 쉽게하며 복제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변형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수정 된체 다시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된 AuO 버전은 특혜법적인 유럽 원산지 품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누적 원칙은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적용 가능하다. 다른 나라(예를 들어, 스위스) 의 특혜법적인 원산지가 사용되려면 개별 절차가 간소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의 AuO 를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필요한 어구가 삭제되어야 한다.

G L I E D E R U N G

I. VORBEMERKUNG

II. ALLGEMEINES
- 1. Gesamtverantwortlichkeit
- 2. Abkürzungen / Begriffsbestimmungen
- 3. Einreihung
- 4. Aufbewahrung von Belegen
- 5. Änderungsanzeigen

III. URSPRUNGSPRÄFERENZ
- 1. Geltungsbereich
- 2. Ursprungsprüfung für Eigenfertigung
- 3. Ursprungsprüfung für Handelswaren
- 4. Lieferantenerklärungen
- 5. Kumulation
- 6. Einfuhr-Präferenznachweise
- 7. Gleiche Waren (Vormaterialien/Ausfuhrwaren) verschiedenen Ursprungs
- 8. Draw-Back-Verbot
- 9. Ursprungserklärung

IV. FREIVERKEHRSPRÄFERENZ
- 1. Geltungsbereich
- 2. Prüfung der Freiverkehrseigenschaft
- 3. Warenverkehrsbescheinigung A.TR.

V. VERPFLICHTUNGSERKLÄRUNG

VI. UNTERSCHRIFTEN

VII. ANLAGEN
- 1 Länder- und Warenkreis
- 2 Kalkulationsschema
- 3 Musterrechnung

목차

I. 머리말
II.개괄
1. 총책임
2. 약어/용어 정의
3. 분류
4. 서류 보관
5. 변경 공시

III. 원산지 특혜
1. 유효범위
2. 자체완성을 위한 원산지 검사
3. 상품을 위한 원산지 검사
4. 공급자 확인
5. 누적 원칙
6. 수입 특혜 증명
7. 서로 다른 원산지에서 온 동일 상품(원재료(예비재료/수출품목)
8. 중단(철회) 금지
9. 원산지 설명

IV. 자유 유통 특혜
1. 유효범위
2. 자유 유통 지위 검사
3.Movement Certificate A.TR.

V. 의무 약정서
VI. 서명
VII.첨부
1. 국가 및 상품 범위
2. 평가 서식
3. 계산서

I. VORBEMERKUNG

Aufgrund von Präferenzabkommen, welche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 Europäische Union (nachfolgend EU) mit zahlreichen Ländern und Gebieten geschlossen hat, bleiben im Warenverkehr zwisch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und diesen Ländern oder Gebieten die meisten Waren zollfrei oder unterliegen nur noch einem ermäßigten Zollsatz.
Voraussetzung für die Inanspruchnahme der Zollfreiheit oder Zollermäßigung ist jedoch, dass die Waren Ursprungs- bzw. Freiverkehrswaren im Sinne des jeweils in Betracht kommenden Abkommens sind.
Der Nachweis, dass ein Erzeugnis eine Ursprungs-/Freiverkehrsware ist und damit präferenzberechtigt in das Bestimmungsland eingeführt werden kann, ist in jedem Einzelfall von uns eindeutig zweifelsfrei belegmäßig und jederzeit nachprüfbar zu führen.
Dies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 ist eine innerbetriebliche Verfahrensdokumentation über Aufbau und Ablauf unserer betrieblichen Kontrolle der Ursprungs- und Freiverkehrseigenschaft und Nachweisführung. Sie regelt außerdem die Verantwortlichkeiten der Abteilungen und Mitarbeitern unseres Betriebs, die an der Ursprungs- und Freiverkehrskontrolle beteiligt sind.

Ziel der AuO ist es,

- eine ordnungsgemäße Ursprungs-/Freiverkehrskontrolle und Nachweisführung zu gewährleisten;
- die Fehlverwendung von Präferenznachweisen und die damit verbundenen Schadensersatzforderungen, straf- und bußgeldrechtlichen Folgen sowie den Widerruf der Bewilligung auszuschließen;
-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Vereinfachung bei der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zu schaffen.

II. ALLGEMEINES

1. Gesamtverantwortlichkeit

Für die Koordination aller beteiligten Stellen und die Kontrolle der ausgestellten Präferenznachweise ist Herr/Frau ... als Gesamtverantwortliche/r von der Geschäftsleitung eingesetzt. Ihm/Ihr ist nach Absprache mit der Geschäftsleitung die Befugnis erteilt, durch organisatorische Maßnahm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sicherzustellen. Herrn/Frau ... sind alle Pflichten, die ihm/ihr durch die Bewilligung der Vereinfachung obliegen, auch durch seine/ihre umfangreichen Kenntnisse des Präferenzrechts, bekannt.

2. Abkürzungen / Begriffsbestimmungen

AuO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WP	Ab-Werk-Preis
EU	Europäische Union bzw. Europäische Gemeinschaft
HS	Harmonisiertes System
LE(en)	Lieferantenerklärung(en)
LLE(en)	Langzeitlieferantenerklärung(en)
UE(en)	Ursprungserklärung(en)
WVB(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Ⅰ. 머리말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이하 EU) 가 수많은 나라와 지역과 맺은 협정에 의해 유럽 공동체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상품교류에 감액된 관세 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된다.

무관세 또는 감세 청구의 감세 조건은 그러나 각 원산지 품목 및 자유 유통 품목이 각 해당하는 협정의 의미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품목이 원산지/자유유통 품목이며 이로써 특혜법적으로 규정국에 수입 될 수 있다는 증명은 상공회의소에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검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AuO 는 대한 상공회의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및 자유 유통 특성 그리고 증명 과정의 착수 및 절차에 관한 업체 내부적인 문서화이다. 이는 이외에도 원산지 및 자유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의 책임 소재를 규정한다.

AuO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원산지/자유 유통 관리 및 증명 절차를 보증하기 위해서;

특혜 증명과 관련 예비 조치, 벌금형 및 허가 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 증명에 있어서 간소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Ⅱ. 개괄

1. 총책임

모든 관련 인력의 협력과 특혜 증명서 발급의 책임자는 (이름)…. 이며 이는 경영진에 의해 총책임자로 선출되었다. …. 에게는 경영진과의 합의 하에 조직적인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 에게는 간소화 동의를 통해 주어지는 책임이 있으며 책임자는 특혜법에 능통해야 한다.

2. 약어/용어 정의

AuO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

AWP 공장인도가격

EU 유럽 연합 및 유럽 공동체

HS 관세 및 통계 통합 분류표

LE(en) 공급자 확인서

LLE 장기 공급자 확인서

UE 원산지 설명

AWP:
Ist der Preis der Ware mit Lieferbedingung ab Werk, den wir bei einem Verkauf mit Bestimmungsort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rzielen. Die Umsatzsteuer ist nich enthalten; Rabatte (z.B. Mengenrabatte oder Sonderrabatte, um den Auftrag zu erhalten müssen ebenfalls aus dem Rechnungspreis heraus gerechnet werden; Skonti und Boni sinc unschädlich.

Wert der Vormaterialien:
Ist der von uns für eine bestimmte Lieferung gezahlte Preis. Bei in die Gemeinschaft eingeführten Waren kann der angefallene Zoll außer Betracht gelassen werden. Ist es nicht möglich, den tatsächlich gezahlten Preis in Ansatz zu bringen, wird der Preis über das worst-case-Prinzip (hier: höchster Preis) gebildet.

Beispiel für eine Umsetzung nach dem Worst-Case-Prinzip:
Im Bereich der Warenwirtschaft wird streng nach FIFO-Prinzip verfahren. Aufgrund unserer Recherchen, die im Übrigen fortlaufend aktualisiert werden, werden Vormaterialien durchschnittlich alle Monate umgeschlagen. Um dem worst-case-Prinzip Rechnung zu tragen, ermitteln wir zu jedem Neuzugang an Vormaterialien den höchsten Einkaufspreis der letzten Monate. Dabei ist ein Zuschlag von Monaten einberechnet, um eine längere als durchschnittliche Lagerdauer zu berücksichtigen. Damit kommt nicht der Ist-Preis sondern der höchste Preis, der für ein Vormaterial nach einem definierten Zeitraum gezahlt wurde, in Ansatz.

HS-Position:
Die ersten vier Stellen der Warennummer. Diese kann z. B. unter http://auskunft.ezt-online.de nachgeschlagen werden. Die HS-Position ist maßgeblich für die Bedingung, welche die Ware erfüllen muss, um als Ursprungsware im Sinne der Präferenzabkommen zu gelten.

Kumulierung
Kumulierung ("Anhäufung") im Präferenzrecht bedeutet, dass im Handel zwischen präferenziellen Partnerstaaten Bearbeitungen, die in einem Land durchgeführt werden, beim Ursprungserwerb in einem anderen Land mit angerechnet werden. Vorerzeugnisse, die "kumuliert" werden können, müssen nicht ausreichend be- oder verarbeitet werden.

Um im Rahmen der Vereinfachung den Prüfungsaufw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wenden wir keine Kumulierungen an und geben die Präferenz nur für EU-Ursprungswaren weiter. Im Einzelfall können wir auf unserem zuständigen Zollamt die Einzelabfertigung beantragen.

AWP:

공장인도가격을 가지는 상품을 뜻하며, 상공회의소(이하 본사)가 유럽 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사들인 것들을 의미한다. 거래액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할인(예를 들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량 거래 할인 또는 특별 할인) 또한 결산 단가에서 빠져야 한다; 할인 및 추가이익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

원재료의 가치:

본사에서 특정 상품 공급을 위해 지불한 가격이다. 공동체에 수입된 품목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지불된 가격을 평가 할 수 있다면, 이 가격은 최악-원칙(여기서는 최고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최악-원칙에 따른 거래의 예시

상품관리의 분야에 있어서는 선입선출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외에 시간에 따라 현실화 되는 본사의 연구에 따르면, 원재료는 (몇 - 비었어요) 달 마다 뒤집힌다. 최악 원칙 계산을 하기 위해 본사는 원재료가 새롭게 입하될 때마다 지난 (몇 - 비었음) 달 중 최고의 구매 가격을 책정한다. 여기에는 평균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보관 기간을 고려 하기 위해 몇 달의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에는 Ist-가격 이 아니라 원재료를 위해 특정 기간 이후에 지불된 최고 가격이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HS

상품번호의 첫 네 자리 수를 말한다. 이는 예를 들어, http://auskunft.ezt-online.de에서 참조 할 수 있다. HS 지위는 특혜협정의 의미에서 원산지 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의 기준인 것이다.

누적원칙

특혜 법에서의 누적원칙(누적)이라 하면, 특혜가 적용되는 파트너 국가간의 거래에서 하나의 국가에서 행해진 작업들이 원산지 획득에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누적” 될 수 있는 원재료는 충분히 가공 될 필요가 없다.

간소화의 테두리 내에서 검사 비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본사는 누적 원칙을 활용하지 않으며 유럽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를 이어 넘긴다. 개별적인 경우 본사는 일을 관할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3. Einreihung

Zur Ermittlung der für die Ausfuhrwaren gültigen Listenbedingungen ist es notwendig, sie in die richtige Position des HS einzureihen. Dies wird von Herrn/Frau ... ggf. unter Mitwirkung der Abt. ... (z.B. Entwicklung, Technik) durchgeführt. Bei zweifelhafter Einreihung wird von uns eine verbindliche Zolltarifauskunft beim HZA Hannover, Sachgebiet B, Arbeitsbereich Verbindliche Zolltarif- und Ursprungsauskünfte, Waterloostr. 5, 30169 Hannover beantragt.

Hinweis:
Derzeit ist es erforderlich, die Waren für die Prüfung der Verarbeitungsregeln den Warennummern des Jahres 2006 zuzuweisen, da die Verarbeitungslisten den Änderungen des HS 2007 noch nicht angepasst wurden. Abweichungen zwischen den HS-Positionen sind daher möglich - vgl. http://www.zoll.de/a0_aktuelles/wup_aenderung_hs/index.html

4. Aufbewahrung von Belegen

Sämtliche Nachweisunterlagen, Rechnungen mit Ursprungserklärung und Kopien der WVBen bewahren wir getrennt von den Buchhaltungsunterlagen mindestens sechs Jahre nach Ausstellung bzw. Gültigkeit auf und legen sie den Zollbehörden auf Verlangen vor. Aufbewahrungsfristen aufgrund anderer Vorschriften werden von der hier genannten Regelung nicht überlagert.

5. Änderungsanzeigen

Diese AuO wird regelmäßig dem tatsächlichen Arbeitsablauf gegenübergestellt und überprüft.
Jede Änderung (z.B. des Arbeitsablaufes) oder Erweiterung der AuO bzw. der Bewilligung wird, ggf. nach Rücksprache, dem Hauptzollamt ... mit der berichtigten AuO angezeigt.

III. URSPRUNGSPRÄFERENZ

1. Geltungsbereich

Länderkreis
Diese AuO gilt für den Ursprungsnachweis mit den in Anlage 1 genannten Ländern. Für präferenzielle Exporte in andere Länder können wir die Einzelabfertigung auf unserem zuständigen Zollamt beantragen oder eine Erweiterung der Bewilligung prüfen.

Eigengefertigte Waren
Dieses Verfahren nehmen wir für die in Anlage 1 aufgeführten eigengefertigten Waren in Anspruch. Die Listenbedingungen zur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ergeben sich aus den jeweiligen Abkommen (abrufbar unter www.wup.zoll.de) und sind für alle Abkommensstaaten ebenfalls in Anlage 1 aufgeführt. Ändern sich die Präferenzabkommen, prüfen wir, ob die Listenbedingungen abweichen.

Handelswaren:
Außerdem soll dieses Verfahren für Handelswaren, für die uns gültige Lieferantenerklärungen vorliegen, in Anspruch genommen werden.

Hinweis:
Werden gebrauchte Waren, für die keine förmlichen Nachweise mehr vorliegen, ausgeführt, stellen wir keinen Präferenznachweis im Rahmen unserer Vereinfachung aus sondern beantragen die Einzelabfertigung einer Warenverkehrsbescheinigung bei unserem zuständigen Zollamt.

3. 분류

수출 품목에 유효한 목록 상품 전제 조건의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이 정확한 HS 지위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름)에 의해, 필요한 경우 … 부서(예를 들어, 개발, 기술) 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분류에 의문이 가는 경우는 본사에서 30169 하노버 관세청, 워털루가 5번지 관세 및 원산지 안내 부서에 문의된다.

i 참고사항: 이 경우 작업 규정의 검사를 받는 품목이 2006년의 품목 번호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2007년 분류 체계의 수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S 지위가 불일치 할 수 있다.

4. 문서 보관

증명 서류, 계산서, 원산지 증명, WVB 의 보관은 제출 또는 유효 시작 후 최소 6년간 회계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며 이는 업체가 관세청 직원에게 요구하라 수 있다. 기타 규정에 의한 보관 기간은 여기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

5. 변경 공시

본 AuO 는 규칙적으로, 실제적인 작업 절차와 비교 검사 된다. (작업 절차) 를 포함한 모든 변경 또는 AuO 와 허가의 확대는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지역) 관세청에 수정된 AuO 로 변경 공시되어야 한다.

III. 원산지 특혜

1. 유효 범위

해당국가

본 AuO 는 1 항목에 언급된 국가의 원산지 증명에 해당된다. 타국으로의 특혜적인 수출에 있어서는 개별 케이스의 경우 본사가 각 해당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범위의 확대를 검사할 수 있다.

자체생산된품목

이러한 절차는 1 항목의 자체 생산된 품목에 관한 매뉴얼을 따른다. 원산지 특성 검사의 조건은 각각의 협정(www.wup.zoll.de참고)으로 발생하며 모든 협정국에 한해 항목 1 에 제시되어 있다. 특혜 협정이 변경되는 경우 본사는 상품 전제 조건이 일치 하지 않는지 검토하게 된다.

상품

이러한 절차에는 본사에 유효한 공급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상품 절차에 적용 되어야 한다.

참고: 형식적인 증명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중고 상품이 수출되는 경우, 본사는 간소화에 따른 특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를 개별 케이스로 취급, 관할 관세청의 Movement Certificate을 신청하게 된다.

2. Ursprungsprüfung für Eigenfertigung
Empfehlenswert bei wenigen Sendungen!!!!!

Variante 1 – Prüfung im Einzelfall vor allem über die eigene ausreichende Be-/Verarbeitung

Bei Eigenfertigung wird die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im Rahmen jeder einzelnen Ausfuhr von Abt./Herrn/Frau ... anhand des als Anlage 2 beigefügten Kalkulationsschemas durchgeführt.
Mit bewerteten Stücklisten ermitteln wir, welche Vorprodukte verwendet wurden. Über das Kalkulationsschema prüfen wir, ob die für die Ware geltende Listenbedingung (z.B. Wertkriterium, Positionswechsel) erfüllt wird. Ist dies der Fall, handelt es sich um ein Ursprungserzeugnis.
Stellt sich heraus, dass die Be-/Verarbeitung in unserem Betrieb alleine nicht ausreichend ist, werden LEen/LLEen für Vormaterialien mit uneingeschränktem Ursprung der EU herangezogen. Die berücksichtigten LEen/LLEen werden im Kalkulationsschema eingetragen. Wird nun die Listenbedingung erfüllt, handelt es sich ebenfalls um ein Ursprungserzeugnis, andernfalls um Nichtursprungsware.
Das Ergebnis der Ursprungsprüfung wird im Kalkulationsschema vermerkt.

Wir weisen die ausreichenden Be- oder Verarbeitung anhand folgender Unterlagen nach:

- Kalkulationsschema
- Stücklisten
- Eingangs- und Ausgangsrechnungen
- LEen und LLEen

In Punkt 4 ist die Anforderung und Behandlung von LEen/LLEen erörtert.

Permanente Kalkulation bei häufigeren Sendungen

Variante 2 – Prüfung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vor allem anhand von LEen/LLEen

Bei Eigenfertigung wird die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bei maßgeblichen Änderungen (Ab-Werk-Preis, Wert der Vormaterialien u. ä.) sofort, von Abt./Herrn/Frau ... durchgeführt. Änderungen der Ursprungseigenschaft der Waren werden nachvollziehbar protokolliert.
Mit bewerteten Stücklisten ermitteln wir, welche Vorprodukte verwendet wurden. Aufgrund der Zuordnung der Lieferantenerklärungen im Artikelstamm (siehe Punkt 5 b)) kann nun geprüft werden, ob alle eingesetzten Vormaterialien Ursprungswaren sind. Ist dies der Fall, handelt es sich bei unserer Ware um ein Ursprungserzeugnis.
Sind auch Nicht-Ursprungswaren als Vormaterialien eingegangen, wird im nächsten Schritt geprüft, ob wir diese ausreichend im Sinne der Verarbeitungsregeln be- oder verarbeitet haben. Hierzu prüfen wir die maßgebliche aufgeführte Listenbedingung (z.B. Positionswechsel, Wertkriterium) anhand der bewerteten Stücklisten. Ist sie erfüllt, handelt es sich bei unserer Ware um ein Ursprungserzeugnis, andernfalls um Nichtursprungsware.

Das Ergebnis der Prüfung wird im Artikelstamm, der laufend aktualisiert wird, dokumentiert. Waren, welche die Ursprungseigenschaft erfüllen, sind mit **„EU"**, Nicht-Ursprungswaren mit **„NU"** gekennzeichnet.

Wir weisen die ausreichenden Be- oder Verarbeitung anhand folgender Unterlagen nach:

- Stücklisten
- Eingangs- und Ausgangsrechnungen
- LEen und LLEen

In Punkt 4 ist die Anforderung und Behandlung von LEen/LLEen erörtert.

2. 자체 생산의 원산지 검사
소규모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변형 1 – 개별적인 경우의 검사, 특히 자체적으로 충분한 가공/작업이 가능한 경우

자체 생산의 경우 원산지 특성의 검사는 개별적인 경우로 취급, ….(이름 또는 부서) 에 의해 항목 2의 평가 서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된 목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평가 서식을 통해서는 (해당) 품목에 유효한 상품 전제 조건(예를 들어, 가치 분류, 지위 변경) 이 만족 되었는지 평가하게 된다. 만족 되었을 시 원산지 발생이 일어난다.

우리 업체의 작업/가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의 LE와/LLE 가 무제한적인 유럽 원산지와 함께 개입하게 된다. 관련 LE/LLE는 평가 서식에 함께 포함 된다.

우리는 다음 문서의 제출과 함께 작업/가공이 충분함을 증명한다:

■ 평가 서식

■ 품목 목록

■ 초기 계산서, 결산서

■ LE 및 LLE

항목 4에는 LE/LLE 의 처리와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다.

다량 거래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평가

변형 2 – 규칙적인 간격의 검사, 특히 LE/LLE

자체 생산의 경우 원산지 특성 검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서 또는 이름)에 의해 이루어지며, 중요한 변화의 경우(공장 인도가격, 원재료 가치 등), 즉각적으로 ….(부서 또는 이름) 에 의해 이루어진다. 품목의 원산지 특성 변경은 이해가 가능하게 기록 되어야 한다.

평가된 품목 목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 되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기본항목의(5b 참고) 공급자확인 분류에 따라 투입된 원재료가 원산지 품목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상품에는 원산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원산지 상품이 원재료에 투입되었다면, 이는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작업 및 가공 되었는지 검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준적인 상품 전제 조건(예를 들어, 지위 변경, 가치 분류)) 를 평가하게 된다. 상품 전제 조건 이 만족되는 경우 원산지가 발생하며, 아닌 경우는 무 원산지 품목인 것이다.

검사의 결과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기본 항목에 문서화된다. 원산지 특성을 만족시키는 품목은 “EU”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서류와 함께 작업/ 및 가공 절차가 충분했음을 증명합니다.

■ 품목 목록

■ 초기 계산서, 결산서

■ LE 그리고 LLE

항목 4에는 LE/LLE 의 처리와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다.

Tipp:
Wie die Kennzeichnung erfolgt, ist egal, die oben genannte Kennzeichnung EU bzw. NU ist beispielhaft zu verstehen. Es kann auch ausschließlich die präferenzberechtigte Ware gekennzeichnet werden z.B. mit einem *. Wichtig ist, dass dies einheitlich und konsistent geschieht und in der A&O entsprechend beschrieben ist.
Tipp:
Alternativ kann das Ergebnis der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auch in einer Ursprungsliste o. ä. dokumentiert und für die anschließende Ausstellung der Präferenznachweise als Information herangezogen werden.

Tipp:
Bei Präferenzkalkulation mit EDV ist die eingesetzte Software zu benennen und die Ursprungsprüfung sowie die Dokumentation des Ergebnisses in Anlehnung anhand der o. a. Ausführungen darzustellen.

3. Ursprungsprüfung für Handelswaren

Handelswaren sind Erzeugnisse, welche ohne weitere Be- oder Verarbeitung geliefert werden. Für Waren, die präferenzberechtigt ausgeführt werden sollen, liegen uns gültige LEen/LLEen vor. Liegen keine entsprechenden Nachweise vor, wird die Handelsware nicht mit Präferenznachweis ausgeführt.

Empfehlenswert bei wenigen Sendungen!!!!!

Variante 1 – Prüfung bei jedem Ausfuhrvorgang
Die Prüfung des Ursprungs der verkauften Handelsware wird bei jedem Ausfuhrvorgang durchgeführt und die maßgebliche Lieferantenerklärung auf der einbehaltenen Ausgangsrechnung bei der jeweiligen Ware vermerkt.

Bei häufigeren Sendungen Einbindung in Artikelstamm

Variante 2 – Prüfung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Die Prüfung des Ursprungs und die Erfassung im Artikelstamm sind im Rahmen der weiteren Behandlung von Lieferantenerklärungen beschrieben. Sollten sich Änderungen der Ursprungseigenschaft von Waren ergeben, werden diese nachvollziehbar dokumentiert.

In Punkt 4 ist die Anforderung und Behandlung von LEen/LLEen erörtert.

Hinweis:
Waren, die wir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m Lohn fertigen bzw. be- oder verarbeiten lassen, werden wie Handelswaren behandelt.

4. Lieferantenerklärungen

Grundsätzlich werden die erforderlichen LLEen von Abt./Herrn/Frau ... rechtzeitig zum Jahreswechsel von den Lieferanten neu angefordert. Bei der ersten Bestellung von neuen Materialien bzw. von einem neuen Lieferanten wird eine LE/LLE unterjährig angefordert. Stellt sich bei der Ursprungsprüfung heraus, dass wir weitere LEen/LLEen benötigen, werden diese unverzüglich angefordert. Den Eingang der Rückläufe überwachen wir.

Eingehende LEen/LLEen prüft Abt./Herrn/Frau ... auf folgende Angaben:

1. formelle Richtigkeit (z.B. nach VO (EG) Nr. 1207/2001);
2. Identität der gelieferten Ware, genaue Warenbezeichnung und ggf. Warennummer;
3. Ursprungsland; nur EU oder Mitgliedsstaat der EU
4. die Abkommenspartner; mindestens die in Anlage 1 genannten Länder sind enthalten
5. Kumulationsvermerk; LEen in denen eine Kumulation angewandt wurde, werden nicht berücksichtigt;
6. Gültigkeitszeitraum bei LLEen (maximal 1 Jahr);
7. Ausstellungsort, -datum und Unterschrift des Lieferanten; mit EDV erstellte LEen/LLEen sind auch ohne Unterschrift gültig, sofern darin die verantwortliche Person namentlich genannt ist und sie sich gem. Art. 5 Abs. 3 VO (EG) Nr. 1207/2001 verpflichtet hat.

i 조언: 표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는 사관 없다. 우에 언급된 EU 또는 NU 는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특혜를 가지는 품목에만 * 을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시가 일관성 있게, AuO 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IP : 대안적으로 원산지 특성 검사의 결과는 일정 간격을 두고 원산지 리스트 또는 비슷하게 문서화 될 수 있으며, 후속적인 특혜 증명에 있어서 참고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조언 : EDV 를 통한 특혜 평가에는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언급되어야 하며 결과의 원산지 검사와 문서화는 다른 여타 검사와 문서화와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상품 원산지 검사

상품이란 더 이상의 작업/가공 절차 없이 배송 될 수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 특혜권이 적용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효한 LE/LLE 가 제시되어 있다. 적절한 증명이 없을 시 상품은 특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소량 거래때의 권고 사항
변형 1 - 모든 수출 행위를 일일이 검사
판매된 상품의 원산지 검사는 모든 개별 수출 행위시 이루어지며, 결산서에는 각 상품에 대해서 공급자 확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량 거래 때의 기본 항목으로의 적용
변형 2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
원산지 검사와 기본 항목으로의 적용은 후속적인 공급자 확인의 테두리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상품의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4번 항목에 LE/LLE 의 요구 및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다.
i 지시사항: 우리가 유럽 공동체에서 임금을 주고 생산 또는 가공한 제품들은 '상품'으로서 다뤄진다.

4. 공급자 확인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LLE 는 …(이름 또는 부서)에 의해 새해에 맞춰서(매년 1월 1일) 공급자에게 새롭게 요구된다. 새로운 재료의 주문 또는 새로운 공급자와의 첫 주문에 있어서는 LE/LLE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 된다. 원산지 검사에 있어서 LE/LLE 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 이는 즉각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회귀 과정은 우리에 의해 감독된다.

초기의 LE/LLE 는 다음 항목에 있어서 …(이름 또는 부서) 에 의해 검사된다.

1. 형식적인 정확성(예를 들어, VO(EG) Nr. 1207/2001 에 따라()
2. 입고된 상품의 동일성, 정확한 상품 표시 및 상품번호
3. 원산지국; 유럽 연합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만
4. 협정 파트너, 최소한 항목 1에 언급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누적 원칙 여부; 누적 원칙이 적용된 LE 는 고려되지 않는다.
6. LLE 의 유효 시간 (최대 1년)
7. 교부 장소, 날짜, 공급자 서명; EDV를 통해 작성된 LE/LLE 는 책임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동일인이 5조 3항 VO (EG) nr. 1207/2001 에 의무 선언(약정) 한 경우, 서명 없이도 유효하다.

Ungültige oder nicht ausreichende LEen/LLEen (z.B. fehlende Abkommen, Waren) werden dem Lieferanten zur Berichtigung zurückgegeben.

Empfehlenswert bei wenigen Sendungen!!!!!

Variante 1 – Prüfung bei jedem Ausfuhrvorgang
Gültige Lieferantenerklärungen werden gesammelt und bei einer Ausfuhr zur Ursprungsprüfung herangezogen.

Bei häufigeren Sendungen Einbindung in Artikelstamm

Variante 2 – Prüfung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Das Ergebnis der Prüfung der LEen/LLEen wird in den Artikelstamm eingetragen. Waren mit Ursprung „EU" werden mit **„EU"**, Nicht-Ursprungswaren mit **„NU"** erfasst.

Abt./Herrn/Frau ... kontrolliert sämtliche Geschäftspapiere unserer Lieferanten im Rahmen unserer Rechnungsprüfung auf präferenzrechtliche Vermerke. Werden entsprechende Vermerke gefunden, leitet er/sie die Papiere an Abt./Herrn/Frau ... zur Auswertung weiter. Diese/r prüft die Auswirkungen der einzelnen Vermerke.

Empfehlenswert bei wenigen Sendungen!!!!!

Variante 1 – Prüfung bei jedem Ausfuhrvorgang
Bei Änderung der Ursprungseigenschaft wird dies auf der betroffenen Lieferantenerklärung mit einem Verweis auf das Geschäftspapier des Lieferanten vermerkt.

Bei häufigeren Sendungen Einbindung in Artikelstamm

Variante 2 – Prüfung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Bei Änderung der Ursprungseigenschaft wird der Artikelstamm sofort angepasst. Handelt es sich bei diesen Waren um Vormaterialien, erfolgt außerdem eine Ursprungsprüfung bei allen Ausfuhrwaren, in die dieses Vormaterial eingeht. Eventuelle Änderungen werden ebenfalls im Artikelstamm eingetragen.

Soweit Zweifel an der Richtigkeit von Lieferantenerklärungen bestehen, ist von Abt./Herrn/Frau ... für die betreffenden Waren vom Lieferanten ein Auskunftsblatt INF4 zu verlangen.
Wir behalten uns vor, stichprobenweise für einzelne Waren Auskunftsblätter INF4 einzuholen, auch wenn keine Zweifel vorliegen.

Hinweis: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eist darauf hin, dass Langzeit-Lieferantenerklärungen, die aufgrund einer Ausschlussklausel mit Bezugnahme auf Angaben in den Handelsrechnungen oder sonstigen Handelspapieren hinsichtlich ihrer Aussage nur eingeschränkt gültig sind, vom Regelungsgehalt der Verordnung (EG) Nr. 1207/2001 **nicht** abgedeckt werden - vgl. http://www.zoll.de/a0_aktuelles/wup_lieferantenerkl/index.html

Tipp:
Die Lieferantenerklärungen sollten mindestens für alle Abkommensländer, die bewilligt sind, gültig sein. Dadurch lässt sich das Ergebnis (Ursprungsland) einfacher dokumentieren, Automatismen leichter erarbeiten.
Sofern von Ihnen Lieferantenerklärungen, die nicht für alle bewilligten Länder gültig sind, verwendet werden sollen, ist auf die Verarbeitung des Ursprungskennzeichens gesondert einzugehen.

5. Kumulation

Zur Erlangung der Ursprungseigenschaft unserer Ausfuhrwaren können wir teilweise auch Vormaterial heranziehen, die den präferenziellen Ursprung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rlangt haben. Davon machen wir keinen Gebrauch. Wir nutzen für den präferenziellen Ursprung ausschließlich Ursprungserzeugnisse der EU.

6. Einfuhr-Präferenznachweise

Sofern UEen, WVBen vorliegen, nutzen wir diese nicht für den präferenziellen Ursprung.

유효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LE/LLE (예를 들어, 협정, 상품 누락)은 수정을 위해 공급자에게 되돌려 준다.
소량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변형 1 - 개별 수출 행위마다 검사
유효한 공급자 확인서가 한데로 모아지고 수출 시 증명서 검사에 사용된다.
다량 거래의 경우 기본항목으로의 적용
변형 2 - 일장한 간격을 두고 검사
LE/LLE 의 검사 결과는 기본 항목에 포함된다. 원산지가 있다면 "EU" 로, 무 원산지 상품은 "NU" 로 표시되어야 한다.
….(부서 또는 이름) 은 회계 검사의 틀 안에서 우리 공급자의 경영 문서를 총 관리한다. 이에 적절한 특혜 법적이니 사항이 발견 될 시, 이 문서는 평가를 위해 …(부서 또는 이름) 에 전달된다. 이는 각 항목의 효력을 검토한다.
소량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소량 거래의 경우 모든 수출 행위 검사
변형 1 - 모든 개별 수출 행위 검사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는 확인서에 업무용 서류 미비(오류)로 표시된다.
다량 거래시 기본 품목 목록의 적용
변형 2 - 다량 거래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기본 항목이 적용된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이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출품을 검사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변화 또한 기본 항목에 등록된다.
공급자 확인서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서 또는 이름) 가 해당 상품 공급자에 대해서 안내문서 INF4 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 임의 추출 방법을 통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INF4 를 입수하기 위해 보류되며, 이는 공급자 확인서에 문제가 없을 시에도 그러하다.
I 참고사항: 독일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거래 회계서 또는 기타 거래 문서의 진술로 인한 예외 조항 적용으로 제한적으로만 유효한 장기 공급자 확인서의 경우, 법령 (EG) Nr.1207/2001 의 규정 내용에 의해 고려 되지 않는다. 참고 (홈페이지…..)
i 조언: 공급자 확인서는 최소한 허가된 모든 협정국에 대해서 만큼은 유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원산지국)은 더 쉽게 문서화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더 쉽게 입력될 수 있다. 업체에 의해 모든 허가국에 유효하지 않은 공급자 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에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
5. 누적원칙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 획득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특혜적 원산지를 유럽 공동체 밖에서 획득한 원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럽 원산지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 원칙만을 고수한다.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 원칙만을 고수한다.
6. 수입 특혜 증명
UE, WVB 가 있는 경우, 이를 특혜적인 원산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7. Gleiche Waren (Vormaterialien/Ausfuhrwaren) verschiedenen Ursprungs

Alternative 1
Waren mit gleicher Artikelnummer, die unterschiedlichen Ursprung haben, werden nach dem Prinzip des ungünstigsten Falles behandelt, d.h. sämtliche Produkte derselben Artikelnummer sind als Nicht-Ursprungsware anzusehen.

Alternative 2
Soweit gleiche Waren, die unterschiedlichen Ursprung haben, vorhanden sind, werden die Ursprungs- und Nichtursprungswaren getrennt gelagert bzw. entsprechend gekennzeichnet (z. B. verschiedene Artikelnummern). Durch die Lagerbuchführung weisen wir eindeutig nach, dass nur für Ursprungswaren Präferenznachweise ausgestellt werden. Die richtige Auswahl der Waren (Ursprungsware bzw. Nicht-Ursprungsware) erfolgt in Abstimmung von Abt./Herr/Frau ... mit Abt./Herr/Frau ....

8. Verbot der Zollrückvergütung oder Zollbefreiung (Draw-Back-Verbot)

Einige Präferenzabkommen sehen vor, dass sich alle Vormaterialien im Freien Verkehr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finden müssen. Dies ist bei uns immer der Fall.

9. Ursprungserklärung

Ein Präferenznachweis darf nur ausgestellt werden, wenn der Ursprung der Ware zweifelsfrei nachgewiesen ist und alle Nachweisunterlagen vorhanden sind.

Alternative 1 –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Punkte 2 + 3) bei jedem Ausfuhrvorgang
Ursprungserzeugnisse werden mit „**EU**“, Nicht-Ursprungswaren mit „**NU**“ gekennzeichnet.

Alternative 2 – Prüfung der Ursprungseigenschaft (Punkte 2 + 3)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Bei Rechnungen in die o. a. Staaten wird auf die Daten aus dem Artikelstamm zugegriffen.
Ursprungserzeugnisse werden mit „**EU**“, Nicht-Ursprungswaren mit „**NU**“ gekennzeichnet.

Abweichend davon werden im Warenverkehr innerhalb des EWR (Island, Norwegen, Liechtenstein) EU-Ursprungserzeugnisse als **EWR**-Ursprungserzeugnisse gekennzeichnet

Die UE wird mit dem für das Bestimmungsland gültigen Wortlaut an das Ende der Rechnung gedruckt. Gegebenenfalls erläutern wir zusätzlich die Kennzeichnung (z.B. wenn die Rechnung auch Ware ohne Präferenzursprung umfasst, verwendete Abkürzungen). Die UE wird von Herrn/Frau ... unterzeichnet.

Hinweis:
Bei Änderung eines Abkommens wird der Wortlaut der UE unter www.zoll.de auf Richtigkeit geprüft.

Tipp:
Sie können auf die handschriftliche Unterzeichnung der UE verzichten, sofern sie sich gegenüber den Zollbehörden verpflichten, die volle Verantwortung in gleicher Weise zu übernehmen wie bei handschriftlicher Unterzeichnung und für möglicherweise entstandene Folgen aufkommen werden.

7. 서로 다른 원산지의 동일한 품목(원재료/수출품목)

옵션 1
서로 다른 원산지의 동일한 품목은 부적절한 경우의 원칙에 의해 다뤄지는데, 이는 동일 품목들이 무 원산지 품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옵션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을 경우, 원산지 품목 및 무원산지 품목이 분리된 채 보관되며 이에 맞게 표시 된다(예를 들어, 서로 다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재고자산회계를 통해 우리는 원산지 품목만 특혜증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품목 구분/선택은 (유 원산지 품목, 무 원산지 품목) 은 …. (이름 또는 부서)와 ….. (이름 또는)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8.관세환급 금지 및 면세 금지(Draw-back 금지)

몇몇 특혜 협정은 모든 원재료가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상품 자유 이동)에서 온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적 규정이다.

9. 원산지 증명

특혜 증명은 품목의 원산지가 명확히 증명되었고 모든 증명 서류가 제시될 시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옵션 -1 모든 개별 수출 행위에 대한 원산지 특성(2번 및 3번 항목) 검사

원산지 물품은 “EU” 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된다.

옵션 -2 일정한 간격을 둔 규칙적은 원산지 특성(2번 및 3번 항목) 검사

…. 한 국가로의 회계에 있어서는, 재고 목록의 데이터가 활용된다. 원산지 물품은 “EU” 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된다.

이와는 다르게 EWR(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내부의 물품 거래에 있어서, EU 원산지 품목은 EWR 원산지 품목으로 표시된다.

UE 는 규정국에 유효한 본문으로 계산서 마지막 부분에 인쇄된다. 필요한 경우, 표시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예를 들어, 계산서가 원산지 특혜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UE 는 …(이름 또는 부서)에 의해 서명된다.

i참고사항: 협정 변경의 경우 UE 의 본문은 www.zoll.de에 의해 그 정확성을 검사 받는다

i팁: 관세청에 필사 서명을 했을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책임 약정서가 있을 경우 필사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IV. FREIVERKEHRSPRÄFERENZ (nur für den Warenverkehr mit der Türkei erforderlich)

1. Geltungsbereich

Diese AuO gilt für die Ausfuhr aller Waren im Rahmen der Zollunion EU – Türkei, ausgenommen für EGKS-Waren (im Elektronischen Zolltarif im Bereich "Einfuhrhinweise" mit "EGKS" gekennzeichnet) und Waren, die unter die mit der Türkei vereinbarte Handelsregelung für Agrarerzeugnisse (betroffen sind Waren der Kapitel 1-24, 45 und 53 vgl. Protokoll Nr. 3 Anhang II) fallen. Hinsichtlich dieser Waren gewähren sich die Vertragsparteien ausschließlich für Ursprungswaren Präferenzen.

2. Prüfung der Freiverkehrseigenschaft

Die Freiverkehrseigenschaft wird von uns anhand aller uns vorliegenden Geschäftsunterlagen (z. B. Eingangs- und Speditionsrechnungen, Frachtbriefe, Verzollungsunterlagen) kontrolliert. Wir gehen davon aus, dass Waren, die uns ohne Überwachungsdokument (Versandbegleitdokument, Carnet TIR, Carnet ATA u. ä.) geliefert werden, aus dem freien Verkehr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stammen. Der Wareneingang ist angewiesen, Zolldokumente unmittelbar Abt./Herrn/Frau ... zur Auswertung vorzulegen. Waren, die sich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vorübergehende Verwahrung, Nichterhebungsverfahren und Zollverfahren mit wirtschaftlicher Bedeutung – ausgenommen Passive Veredelung) befinden, werden vor Ausstellung einer WVB A.TR. in den freien Verkehr überführt. Auf der Kopie für den Aussteller wird die Registriernummer des Verzollungsbelegs vermerkt.

3. Warenverkehrsbescheinigung A.TR.

Zur Vorabstempelung tragen wir in Feld 1 unsere Firmenbezeichnung und Anschrift sowie in Feld 8 den Vermerk „Vereinfachtes Verfahren" ein und versehen die WVB in Feld 13 mit dem Datum sowie einer rechtsverbindlichen Unterschrift. Die Abt./Herr/Frau ... legt die für einen Monat benötigten WVBen A.TR. und eine Aufstellung (zweifach), aus der Anzahl und Nummern der WVBen hervorgehen, dem Zollamt ... zur Vorabstempelung vor.
Die vorabgefertigten WVBen A.TR. bewahren wir sicher auf und füllen sie bei einer Ausfuhr in die Türkei ordnungsgemäß aus. Die Kopie für den Aussteller bewahren wir mit den übrigen für die Anerkennung von Präferenznachweisen notwendigen Unterlagen auf.

ⓘ Tipp:
Es ist nicht möglich, die dem Zollamt zur Vorabfertigung vorgelegten Warenverkehrsbescheinigungen durch einen Vertreter unterzeichnen zu lassen.

Ⅳ. 자유유통특혜(터키와의 무역에만 해당)

1. 유효범위

본 AuO 는 터키 – EU 관세 동맹에 있어서의 모든 수출품목에 해당되며, EGKS 상품(전자 관세율에 있어서, “수입 지시 사항” 에서 “EGKS” 로 표시된), 그리고 터키와 합의된 우뭇가사리 규정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품목에는 협정 당사자가 원산지 특혜품만 보증한다.

2. 자유유통특성 검토

자유 유통 특성은 제시된 모든 경영 문서(예를 들어, 매입서, 발송서, 운송장,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무서)를 통해 관리된다. 우리는 관리문서(transit accompanying document), TIR 카르텟, ATA 카르넷 등) 없이 우리에게 온 품목은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에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 상품 수입은 평가를 위해 즉각적으로 …(이름 또는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관세청의 관리(일시적 보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유예 및 관세 절차 – 외부화 과정(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외)를 받는 품목은 WVB A.TR의 발행 전에 자유 유통 체계로 건네진다. 발행자를 위한 사본에는 관세문서의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ß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3. Movement Certificate A.TR.

사전 날인(스탬프)에 있어서 우리는 1번에 회사 상호명과 주소 및 8번 항목 “간소화 절차” 에 기입하며 13번 항목에 날짜를 기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으로 채운다. …(이름 또는 부서)는 한달 간 요구되는 WVB A. TR 과 WVB 개수에서 알 수 있는 교부서를 (두 번) 사전 스탬프를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완성된 WVB A.TR 은 우리가 보관하며 업체는 이를 터키로의 수출시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를 위한 사본은 여타 문서와 함께 특혜 증명 인정에 필요한 문서를 위해 우리가 보관한다.

i 팁: Movement certificate 의 완성을 위해 세관에 제출된 서류는 대리 서명할 수 없다.

V. VERPFLICHTUNGSERKLÄRUNG

Der Ausführer verpflichtet sich,

Präferenznachweise nur für die Waren auszustellen, für die er im Zeitpunkt der Abgabe der Präferenznachweise alle erforderlichen Belege oder Buchungsunterlagen besitzt,

in vollem Umfang für die Verwendung der Präferenznachweise zu haften, insbesondere im Fall falscher Präferenznachweise oder bei unzulässigem Gebrauch dieser Bewilligung,

dafür Sorge zu tragen, dass die für das Ausstellen der Präferenznachweise zuständige Person die Präferenzregeln kennt und versteht,

alle Unterlagen, die zum Nachweis der Ursprungs- bzw. Freiverkehrseigenschaft eines Erzeugnisses oder Vormaterials erforderlich sind, ab dem Datum der Ausstellung der Präferenznachweise gerechnet, mindestens sechs Jahre lang aufzubewahren,

den Zollbehörden die Belege jederzeit vorzulegen und zu akzeptieren, dass sie jederzeit von denselben Behörden kontrolliert werden können und

die volle Verantwortung für jede Erklärung auf der Rechnung oder anderem Handelspapier zu übernehmen, die ihn so identifiziert, als ob er sie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hätte.

ⓘ Tipp:
Manche Hauptzollämter fordern die Abgabe dieser Verpflichtungserklärung. Begründet wird dies mit den Erläuterungen zu Artikel 23 –Ermächtigter Ausführer–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 den Ursprungsprotokollen Paneuropa-Mittelmeer in dem auf die Verpflichtungen hingewiesen wird. Sofern erforderlich, ist es sinnvoll, die Verpflichtungserklärung in die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fzunehmen.

VI. UNTERSCHRIFTEN

Verantwortliche/r für die Ausstellung von Präferenznachweisen (s. Punkte III 9 und IV 3):

Herr/Frau: _____ _____ _____
Ort, Datum Unterschrift

Gesamtverantwortliche/r (s. Punkt II 1):

Herr/Frau: _____ _____ _____
Ort, Datum Unterschrift

Die Geschäftsleitung

Herr/Frau: _____ _____ _____
Ort, Datum Unterschrift

Ⅴ. 의무약정서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특혜 증명 제출 시점에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회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만 특혜 증명을적용할 것,

특혜 증명 관련 모든 사항을 보증할 것, 특히 특혜 증명에 오류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는 적용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질 것,

원재료 또는 생산품의 원산지 및 자유 유통 증명에 쓰인 모든 문서를 특혜 증명 날짜로부터 최소한 6년 동안 보관할 것,

세관 직원에 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음을 인정할 것,

회계 또는 여타 문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필사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질 것,

특혜 증명 발행 담당자가 특혜규정에 관해 능통한 사람임을 보증하는 것

i 팁: 몇몇 세관이 본 의무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는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범 유럽 지중해 원산지 프로토콜, 유럽 위원회 제 23항 -인증수출자- 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런 경우, 의무 약정서는 작업 및 조직 지시사항(AuO)에 포함시켜야 한다.

Ⅵ.서명

특혜 증명 발행의 책임자(Ⅲ 9와 Ⅳ 3 항목 참고)

Mr/Mrs. _____ _____(장소, 날짜) _____(서명)

총책임자 (Ⅱ 1 참고)

Mr/Mrs. _____ _____(장소, 날짜) _____(서명)

업체 대표

Mr/Mrs_____ _____(장소, 날짜) _____(서명)

Anlage 2 – Kalkulationsschema

Nachweis der Präferenzursprungseigenschaft eigengefertigter Waren

Warenbezeichnung _____

Artikelnummer _____

Warennummer _____

Verkaufspreis ab Werk (AWP)	EUR
Wert aller eingesetzten Vormaterialien	EUR
Wert der Vormaterialien ohne Präferenzursprung (VoU)	EUR
Wert der Vormaterialien mit nachgewiesenem Präferenzursprung (VmU)	EUR

Listenbedingung (zutreffendes ankreuzen):

☐ Wert der VoU max. % vom AWP
Wert der VoU in % des AWP: EUR
Listenbedingung erfüllt JA NEIN

☐ Wert der VoU der Position max. % vom AWP
Wert der VoU der Position in % des AWP: EUR
Listenbedingung erfüllt JA NEIN

☐ Wert der VoU max. = Wert der VmU
Wert der VoU EUR
Wert der VmU EUR
Listenbedingung erfüllt JA NEIN

☐ Positionswechsel
Listenbedingung erfüllt JA NEIN

☐ Herstellen aus
Listenbedingung erfüllt JA NEIN

Ergebnis der Ursprungsprüfung:

Ursprung JA NEIN

Vormaterial mit nachgewiesenem Ursprung:

Lieferant	**Nachweis** (LE/Einfuhrbeleg, Nr.)	**Wert** (Vormat. i. EUR)

첨부 - 평가 서식

자체 생산된 품목에 관한 특혜 원산지 증명

상품 표시 _____--

상품 번호 _____

품목 번호 _____

공장인도가격(AWP) 유로

투입 원재료 총 가치 유로

원산지특혜를 받지 않는 원재료 가치(VoU) 유로

원산지 특혜가 증명된 원재료 가치(VmU) 유로

상품 전제 조건

☐ VOU 가치, AWP 의 최대 %

AWP % 안에서의 VO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코드 … 의 VOU 의 가치, AWP 의 최대 %

AWP % 안에서의 코드 …. 의 VO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최대 VOU 가치 = VmU 가치

VoU 가치 유로

Vm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코드 변경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생산 원재료(또는 생산국/장소)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원산지 검사 결과

원산지 증명 예 아니오

원산지 증명된 원재료

공급자	증명(LE/수입 문서, 번호)	가치 (단위: 유로화)

【참고 4】 유럽연합-EU국가 인증수출자 지위 관련 질의/문답

① 인증수출자 신청 시기

질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
답변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EA)를 가져야만 한다: ■ 수출자가 유럽연합과 특혜 관계 (ALE: 자유무역협정 또는 GSP: 일반 특혜 관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 6 000유로 이상을 발송하는 경우; 고객을 위한 상품/국가 묶음에 관세혜택이 있는 경우 또는 누적의 조건에서 수출자가 수출하는 자재가 유럽연합 (EU)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② 인증수출자 혜택

질문	인증수출자 지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답변	세관이 매번 서류를 인증해야만 하는 EUR1와 다르게, 인증수출자 (EA)는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 발급할 때 세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EUR1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인증수출자는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고 동일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번의 수출에만 유효한 EUR1 증명서와 다르게, 사전 원산지 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인증수출자 지위 신청서의 사전 원산지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에 기재된 상품과 국가에서의 모든 거래에 유효하다.

③ 심사기관

질문	인증수출자 (EA)의 신청을 심사하는가?
답변	인증수출자 심사는 세관부서(경영절차 본부 사무실) 또는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부서의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단지 개별 위원회가 한다.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 작성을 위해서 세관이 도움을 준다.

④ 서류제출

질문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어디에 제출하는가?
답변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기업 (수출자 사업장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의 세관에 제출한다.

⑤ 원산지 사전 신고서

질문	생산지에서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답변	아니다. 수출자는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원산지 증명자료가 있는 기관의 장소에서 제출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안에서 사업자가 다수의 생산지를 보유한 경우, 한번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유럽연합 인증수출자 지위가 발급될 것이다. 세관본부의 부서 E1이 유럽연합 다른 세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수출하는 유럽연합 사무실 또는 관련 회원국가)를 명시해야만 한다.

⑥ 원산지 정보 관련

질문	관련상품의 어떤 정보를 통보해야만 하는가?
답변	영토주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지 주소는 필요하다. 결국, 원산지로서 간주되기 위해서, 상품은 유럽연합 (EU)의 영토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⑦ 생산자 표시

질문	왜 생산지를 명시해야만 하는가?
답변	영토주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지 주소는 필요하다. 결국, 원산지로서 간주되기 위해서, 상품은 유럽연합 (EU)의 영토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⑧ 제출서류

질문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 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세관은 단지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만 요구하며 송장 신고서의 서명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서약서를 요청한다. 공급자 신고서와 같은 서류는 보유하고 보관해야만 하며, 검사가 있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⑨ 원산지 사전 신고서 심사기간

질문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의 심사기간은 얼마인가?

⑩ EUR1＆원산지신고서(DOF)

질문	사업자에게 EUR1증명서보다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를 작성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가?
답변	사업자에게 EUR1증명서보다 송장 원산지 신고서 (DOF: INVOICE DECLARATION)를 작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특혜 원산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⑪ 송품장신고서 이점

질문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답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세관에 의해서 승인될 필요가 없다; ■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송장 또는 거래자료에 기재될 수 있지만, EUR1증명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양식의 형식, 양식의 색, 등등); 인증수출자가 서명 면제를 신청한 경우,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의무적인 서명이 필요 없다;

⑫ 송품장신고서 거부 사례

질문	송품장신고서 (DOF : INVOICE DECLARATION)가 대상국가에서 거부될 수 있는가?

	(예: 양식의 색상이 부정확). 반면에, 원산지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정확히 표기된 언어로 (역자 첨부: 작성하고) 원산지 규약에서 규정한 양식을 준수해야만 한다. 어떤 추가 조항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송장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표기해야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출 사무실의 명칭과 인증 발급의 명칭의 표기는 없다.

⑬ 송품장신고서 전산화

질문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가 전산화 될 수 있는가?
답변	자유무역 협정에서 의무적으로 종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 될 수 없는 EUR1증명서와 다르게, 송품장신고서 (DOF: INVOICE DECLARATION)는 전산화 될 수 있다. 검사가 있는 경우, 종이양식 또는 전산화된 송품장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를 세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파일을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이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를 통해서 회사의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관련국의 법체계에 따라서. 역자 설명 : 내용상 국가별 규정이 다르다는 의미).

⑭ 공급자 신고서 유효기관

질문	공급자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답변	생산, 공급 및 상품의 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장기 공급자 신고서는 1년간 유효하다. DACM의 경우에 장기 신고서는 3년간 유효하다.

⑮ 공급자 신고서 내용

질문	공급자 신고서의 사용을 간소화 시킬 수 있을까?
답변	유럽연합의 법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의 공급자 신고서 (DF)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 변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급자 신고서 (DF) 양식이 규정 n° 1207/2001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장 흔한 경우인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자재를 구매한 경우에 2009년 07월 20일자 세관공식공고 (BOD)의 부록 6(일회적인 거래-일회적인 공급자 신고서 (DF)) 및 6 bis(정기적인 거래-장기 공급자 신고서)에 있는 공급자 신고서 (DF)를 사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자 신고서가 아니고, 사업자가 원산지 규정과 사실적으로 공급자 신고서 (DF) 양식에 따르는 각각의 상황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공급자 신고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⑯ 공급자신고서 양식

질문	유럽연합 (EU)의 다양한 언어로 된 공급자 신고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답변	(유럽)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Europa 에 규정 번호: 언어선택 프랑스 외의 유럽연합 회원국가에 위치한 공급자의 공급자 신고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언어로 작성된 공급자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공급자 신고서를 얻기 위해서, (유럽)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europa)에 온라인상에서 규정 n° 1207/2011 부록을 열람한다: 공급자 신고서는 검사 시에 특혜 원산지를 증명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업자의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과 사이에 규정된 계약 보증)

	수입국가의 차후의 검사 요청에 의해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 원산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계약적 문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상국가: 수입에 대한 관세지불; 협정국가에 가공 후 수출자가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세지불.

⑰ 인증수출자 RISK

질문	어떤 수출위험이 있는가?
답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세관의 EUR1증명서가 원산지 인정과 동일한 인증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EUR1 증명서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수출자는 상품이 원산지 자격이 있고 그것에 (상품의 원산지 자격)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자가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EUR1 증명서 또는 원산지 공급자 신고서 (DOF : INVOICE DECLARATION)에 관련해서 협정국가들이 유럽연합 세관에 유럽에 위치해 있다는 증거에 관련해서 다수의 사후 검사 요청이 있다. 유럽연합 (EU)에 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신고된 특혜 원산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유럽연합의 관세를 징수해야만 한다.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이해 덕분에 기업은 더 높은 안정성을 보장받고 협정국가가 요청한 검사 이후 설정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는 위험을 감소시켜서 거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 (EA)의 발급을 통해서 원산지 규정의 올바른 이해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의 바이어가 유럽연합의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게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소 또는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특혜 원산지 증명의 상품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특혜 원산지 개념을 물류행정절차 및 통관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즉 기업의 사업정책 수립단계에서 파악해야 한다 (상품이 원산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급처 선택).

⑲ 관세사 인증수출자 발급

질문	인증수출자 지위 (EA)는 관세사에게 발급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사눈 인증수출자 지위(EA)를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다. 반면에, 고객의 이름으로 고객을 대신해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원산지 개념에 관련된 통관문제에 대해서 자문인 역할을 수행해서 이 지위를 얻으려는 기업에 절차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품, 부속품의 관세종류의 결정 및 세관에서의 가치 평가…… 등등). 어떤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의 서명자, 즉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의 책임을 진다.

【참고 5】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

① 협정세율 확인 하는 법

질문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이다. 내 상품에 적용된 관세율을 확인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유럽연합 위원회 데이터 베이스 (http://madb.europa.eu/mkaccdb2/datasetPreviewFormATpubli.htm?datacat_id=AT&from=publi)를 통해서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산지신고서 관련 작성

질문	한국에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
답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신고를 작성해야하고 인증수출자 만이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세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의 세관에 원산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주소는 하기의 세관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uane.gouv.fr/menu.asp?id=455

③ 이미 인증수출자인 경우

질문	나는 이미 인증수출자인데 한-EU FTA 협정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변	귀하가 이미 인증수출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귀하의 담당 세관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상국으로서 대한민국(KR)을 추가로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79]귀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즉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생긴다. 변경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 귀하의 관할 세관과의 미팅 시에 원산지 사전 신고서와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추가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④ 원산지 신고서 차후 제출 문제

질문	유럽연합/대한민국의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차후에 제출할 수 있는가?
답변	유럽연합(EU)으로 수입할 경우, 사업자가 통관 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 상품이 통관 이후 2년의 기간 이내에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규약 제 16-6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 (déclaration d' origine: DO 영문 declaration of origin: DO) 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유럽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능한 빠르게 신청해서 고객이 특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경우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서, 사업자가 미리 지불한 관세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침서: CDC 제 236 조 및 유럽연합의 관세법 적용 규정: DAC 제 890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대한민국 세관에 연락해야 한다 (KCS).

⑤ 원산지신고서 유효

질문	2011년 07월 01일 이후에 통관하기 위해서 2011년 06월에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했다. 이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한가?
답변	아니다. 협정이 2011년 07월 0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사전에 획득한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서는 2011년 07월 01일부터만 발급될 수 있다.

79) 유럽연합회원국으로수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았고, 이미 유럽연합과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한-EU FTA로 확대하여 수출하고 싶다면 세관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함

⑥ 이미 통관된 물품

질문	자유무역 협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미 통관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답변	협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통관된 상품에 적용된다. 이 날짜 이전에 통관된 상품은 특혜 원산지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⑦ 협정세율 확인 하는 법

질문	내 상품은 이미 대한민국으로 발송되었고, 나는 아직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대상국가에서 내 고객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가 되는 것이 늦었는가?
답변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인증수출자 지위는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수출자는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 차후 원산지 신고서 (DO)를 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관은 수입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야만 한다.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할 경우, 당연히 새로운 인증수출자는 이미 수출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⑧ 선접수/ 후총관

질문	2011년 07월 01일 이전에 세관에 접수되었고 (보세창고 제도)그 이후에 통관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상품 수출자가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증수출자인 경우 수출상품이 관세의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시조치 (원산지 규약 제 34조)에 의해서 특혜 원산지 증명은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⑨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질문	이 협정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기간은 무엇인가?
답변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원산지 규약 제 18-1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2011년 07월 01일 이후 – 2011년 06월 유럽연합 공보 JOUE L168 du 28 juin 2011) 상품이 통관되었고, 특혜 원산지 신고서와 같은 송장 원산지 신고서 또는 어떤 거래서류 원산지 신고서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하기와 같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12개월 이내)를 1년 이내에 제출한다 (협정서 원산지 규약 제 16-6조). 유럽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 (12개월 이내)을 2년 이내에 제출한다 (협정서 원산지 규약 제 16-6조). 상품이 2011년 07월 01일 이전에 보세창고에 있었고 그 날짜 이후에 통관된 경우 유효한 증명 (12개월 이내)을 제출하기 위해서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있다 (규약 34조).

⑩ 직접운송원칙

질문	직접 해상운송 라인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직접운송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가?
답변	많은 상품이 싱가포르에서 환적이 이루어진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직접운송을 규정한다. (제 13조) 상품은 한 번에 발송되어야만 하고 (규약 제 1-K조 규정에 따라서 « 발송 »은 동일한 수출자가 동일한 대상국가에 수출자의 유일한 운송서류, 만약 이 서류가 없는 경우 유일한 송장에 의해서, 동시에 상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적이 있는 경우, 환적은 (환적)국가의 세관의 감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운송이 준수되었는가 특히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류 특히 제 3국의 세관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⑪ 직접운송원칙(EU 회원국과의 관계)

질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부속품의 물류비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완벽히 채워진 컨테이너를 발송할 수 있도록, 기업은 유럽의 한 장소에 유럽의 다양한 국가로부터 오는 선적물량을 모으게 된다. 직접운송 규정이 준수되었는가?
답변	유럽연합= 하나의 유일한 관세 영토. 대한민국으로 떠나기 이전에 아브로(Havre)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문제는 없다. 유럽연합의 다수의 회원국가에서 상품이 오는 경우에도 직접운송 규정은 준수된 것이다.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회원국가 사이에 어떤 국가적 차별 없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했다.

⑫ 분쟁

질문	유럽과 대한민국 세관의 분류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답변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장 (SH2), 위치 (SH4) 또는 하부위치(SH6)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에 동의한다.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경우, 협정의 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자적 문제(OMD) 이다

⑬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원산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유럽연합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답변	수출자 (6 000유로 이상의 가치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유럽연합: Union européenne (영어 European Union) 특혜 원산지를 표기한다. 영어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할 문구는: « 이 문서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자 (통관 허가 No FR000000 / 0000)는, 명백히 반대로 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은 유럽 연합(EU) 특혜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FR000000/0000)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 ». 예전의 명칭 (Communauté européenne, CE, European Community, EC……등등)은 대한민국에 수입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결국 상품의 관세적 특혜가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⑭ 분쟁

질문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대한민국 세관이 특혜 원산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불만사항의 등록 (모든 협정에 관련해서- http://madb.europa.eu/madb_barriers/complaint_home.htm)이 유럽연합 위원회 DG Trade가 관리하는 시장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관할 세관의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에서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⑮ 제3국 송장

질문	상품의 유통과 서류의 흐름이 다른 것 (제 3국에서 보내진 송장)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세관분야에서는 물질적 흐름만 중요하다. 특혜 원산지 신고서는 유럽의 수출자가 발급해야만 하며, 송장은 제 3국에 위치한 또 다른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다.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약 제 제 15-1조에 의해서 유럽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화물 인도 지시서 또는 다른 모든 거래서류에 작성한다.

⑯ 비원산지재료

질문	내 상품이 전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다. 상품의 일부는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 (예: 터키, 모로코……등등).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답변	영토주의 원칙(규약 제 12조)은 유럽연합 (EU)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협정된 제 3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언제이든지, 특혜 원산지 자격은 소멸된다. 결국, 유럽연합 (EU) 또는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문맥적으로 변경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을 한 경우, 관세 특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⑰ 서류보관

질문	한-EU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들의 보관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3년 인데 왜 5년 동안 보관을 하여하 하는가?
답변	유럽연합 (EU)에서 시효는 3년이다. 동시에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협력자 (역자 주: 협정관계에 있는 협정국가인지 단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 (기업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음) 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이후 각자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 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의 준수하는 것은 5년간 원산지 신고서를 보관하는 것이다 (원산지 규약 제 23조)

⑱ BOI

질문	내 상품의 특혜 원산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답변	프랑스 세관은 원산지 판정 (RCO : BOI : Binding Information on Origin)을 발급한다. 원산지 판정 증명서는 원산지에 관련해서 세관 신고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 판정 (RCO) 신청서 양식과 사용 설명서를 하기의 세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www.douane.gouv.fr의 « 국제 무역» 항목에서, 상품의 품질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등. 귀하는 또한 관할 세관의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⑲ 책임/의무

질문	유럽연합에 위치한 수입자인 나는 대한민국의 공급자가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내용에 부합하게 특혜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모든 무역거래에서 (민사소관), 귀하의 공급자와의 관계는 귀하에게 달렸다. 두 사업 파트너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관계에서 수입자 (구매 서비스, 법, 세관)에 관련해서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특히 유럽-대한민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구매계약부터 유럽연합에 수입 시 인도된 상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조항을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규정할 수 있다.

【참고 6】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80]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4.1조에 게재되어 있고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다. 양국간에 제정된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 부속서 가의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선적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81] 한-캐나다 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발급주체가 되어 직접 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캐나다 통관 절차 법령에는 관세법(Customs ACT), 관세율법(Customs Tariff) 등이 있다.

먼저 캐나다 관세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캐나다 산을 보호하고 여러 차례 이후 개정 되었다.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는 실무 참고용으로 일련의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는 Memorandum D11-4-2로 사료되는데, 2006년에 게재된 이후 동 메모에 정보를 추가하는 대신 새로운 메모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

80)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WTO에 의해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FTA 체결 주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81)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2.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로 나뉜다. 기관발급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 FTA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발급 받는 것을 의미하다. 한-캐나다 FTA 경우 에서는 양국 모두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자와 상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이 가능하다.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수출자의 인지

② 그 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관은 서명일 후 2년이고, 이때 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는 캐나다 관세청[82]이며, 한-캐나다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82) Canada Boa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율발급》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Restore/Restaurer | Help | PROTECTED B when completed

Instructions - Directives

CERTIFICATE OF ORIGIN
CANAD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Please print or typ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From: (yyyy-mm-dd) To: (yyyy-mm-dd)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Canad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yyyy-mm-dd)	Telephone: Fax:

BSF760 E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작성방법》

<<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is document must be completed legibly and in full by the exporter and be in the possession of the importer at the time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document may also be completed voluntarily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Please print or type. If more space is needed, please use additional pages.

Field 1: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ity and country),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and reference number (optional) of the exporter.

Field 2: Complete this Field if the Certificate covers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as described in Field 5 that are imported into Canada or Korea for a specified period of up to 12 months (blanket period). "FROM" is the date upon which the Certificate becomes applicable to the good covered by the blanket Certificate (it may be earlier than the date this Certificate is signed). "TO" is the date upon which the blanket period expires. The importation of a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ased on this Certificate must occur between these dates.

Field 3: If one producer,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ity and country),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and reference number (optional) of said producer. If more than one producer is included on the Certificate, state "VARIOUS" and attach a list of all producers, including their legal names, addresses (including city and country), telephone numbers, fax numbers, e-mail addresses, and reference numbers (optional), cross-referenced to the good(s) described in Field 5. If you wish this information to be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Field 4: State the full legal name, address (including city and country), tele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of the importer.

Field 5: Provide a full description of each good. The description should contain sufficient detail to relate it to the invoice description and to the Harmonized System (HS) description of the good. If the Certificate covers a single shipment of a good, it should list the quantity and unit of measurement of each good, including the series number, if possible, as well as the invoice number as shown on the commercial invoice. If not known, indicate an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such as the shipping order number, purchase order number, or any other number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the goods.

Field 6: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identify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digits.

Field 7: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state which criterion (A through D) is applicable. The rules of origin are contained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nd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NOTE: In order to be entitled to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ach good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criteria below.

Preference Criteria

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3.2 (Wholly Obtained). NOTE: The purchase of a good in the territory does not necessarily render i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Reference: Articles 3.1(Originating Goods) and 3.2 (Wholly Obtained))*

B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Under this criterion, one or more of the materials may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as set out in Article 3.2 (Wholly Obtained). Al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ust qualify as "originating" by meeting the rules of Article 3.1 (a)(i), (ii), and (iii). (*Reference: Article 3.1(a)(i), (ii), and (iii) and Article 3.3(Sufficient Production))*

C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satisfies the specific rule of origin, set out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that applies to its tariff classification. The rule may include a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or a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plus value test. The good must also satisfy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Reference: Article 3.1(b)*)

D The goods are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ut do not meet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set out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because certain non-originating materials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he goods do nonetheless satisfy the value test specified in Article 3.4 (Value Test). This criter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 the good incorporated one or more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ul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because both the good and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classified in the same subheading, or heading that is not further subdivided into subheadings. NOTE: This criterion does not apply to Chapters 1 through 21, headings 39.01 through 39.15 or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Reference: Article 3.3.2*)

Field 8: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state "YES" if you are the producer of the good. If you are not the producer of the good, state "NO" followed by (1), (2) or (3), depending on whether this Certificate was based upon: (1) your knowledge of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2) your reliance on the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other than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or (3) a completed and signed Certificate for the good, voluntarily provided to the exporter by the producer.

Field 9: For each good described in Field 5, where the good is subject to a value test, indicate "NC" if the value test is based on the net cost or "TV" if the value test is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r ex-works price. If the value test is based on the net cost of the good over a period of time, further identify the beginning and ending dates (YYYY/MM/DD) of that period. (*Reference: Article 3.4 (Value Test)*)

Field 10: Identify the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 ("KR" for all originating goods exported to Canada; "CA" for all originating goods exported to Korea).

Field 11: This Field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exporter. When the Certificate is completed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it mu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st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producer. The date must be the date the Certificate was completed and signed.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고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어야 합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캐나다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에는 "YES" 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에는 "NO" 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예시: NO(1)]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이 부가가치계산방법으로 순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NC" 또는 거래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TV" 로 적습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순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YYYY/MM/DD~YYYY/MM/DD)을 적어야 합니다.

10. 제10란에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KR" 을 적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CA" 를 적습니다.

11.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부록 1】 EU이사회규칙((EEC) No 2454/93

구분	원문	국문
EU이사회 규칙 2454/93	Sub-section 8 Other provisions (b) the exporter has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under a preferential arrangement; Sub-section 5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bilateral cumulation Article 97v 4.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European Union within the framework of bilateral cumula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where that exporter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a)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nd (b) the fulfilment of other requirements applicable in that Member State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6.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withdraw the authoris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a)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b) the approved exporter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제8관 기타조항 (b) 그수출자는 특혜 조치상 '인증수출자' 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5관 상호누적 목적상의 절차 제97조v 4. 회원국 세관 당국은 인보이스 신고상의 상호누적 체계 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스스로 선적하고 확인용의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고 칭함)에게 해당 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아래사항을 인증 할 수 있다. (a) 그제품의 원산지 지위 (b) 그 회원국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의 충족 5. 세관당국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 할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신고서에 기입할 세관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6.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사용을 감시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은 어느때든 인증사항을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아래 각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철회 하여야 한다. (a) 인증수출자가 제4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이상 제시하지 않는 경우 (b) 인증수출자가 제5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경우 (C) 기타 인증수출자가 인증사항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	원문	국문
	(c) the approved exporte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7. An approved exporter shall not be required to sign invoice declarations provided that the approved exporter gives the customs authorities a written undertaking accepting full responsibility for any invoice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the approved exporter as if the approved exporter had signed it in manuscript. INVOICE DECLARATION Article 116 1. The invoice declaration may be made out: (a) by an approved Community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7, or (b) by any exporter for any consignment consisting of one or more packages containing originating products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EUR 6 000, and on condition that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Article 110(1) shall apply to this procedure. 2. An invoice declaration may be made out if the products concerned can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or in a ►M21 beneficiary country or territory ◄ and fulfil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3. The exporter making out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prepared to submit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customs or other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ll appropriate documents prov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concerned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4.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made out by the exporter by typing, stamping or printing on the invoice, the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the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appears in Annex 22, using one of the linguistic versions set out in that Annex and in accordance with	7. 인증수출자가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인보이스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면 그 인증수출자는 인보이스신고서에 서명 할 필요가 없다. (b) 송품장 신고서 제116조 (a) 제117조의 의미내 에서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b) 원산지 제품을 담은 하나 이상의 포장물로 구성되고 그 총액이 EUR6000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탁송품에 대한 것이 본 절차 제110(1)조가 정하는 지원이 적용되는 조건하에서 모든 수출자에 의해 2. 해당제품이 공동체나▶M21수혜국 또는 지역◀원산지로 간주 될 수 있고 본절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3.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세관이나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당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본 절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적절한 제반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인보이스신고는 수출자가 부록22에 적힌 문구의 신고를 인보이스신고서, 인도전표 또는 기타상업문서 위에 그 부록이 정하는 언어 버전중 하나로 수출국가 법령상 조항에 따라 타이핑, 날인 또는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기로 하 는 경우에는 정자로 적되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인보이스신고서에는 문서상 수출자의 원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117조의 의미내에 인증수출자가 자신이 수기로 작

구분	원문	국문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exporting country. If the declaration is handwritten, it shall be written in ink, in printed characters. 5. Invoice declarations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manuscript. However, an approved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7 shall not be required to sign such declarations provided that he gives the customs authorities a written undertaking that he accepts full responsibility for any invoice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him as if it had been signed in manuscript by him. 6.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the use of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a)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made out for each consignment; (b) if the goods contained in the consignment have already been subject to verifica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by reference to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the exporter may refer to this check in the invoice declaration. The provisions of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exempt exporters from complying with any other formalities required under customs or postal regulations.	성한 문서에 서명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인보이스신고서에 대해 전책임을 부담 하겠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면 그인 증수출자는 인보이스신고서에 서명 할 필요가 없다. 6. 제1(b)항에 언급된 케이스의 경우, 인보이스신고서의사용에는아래특별조건들이 적용된다. (a) 인보이스신고서는 각 탁송품에 대해작성 할 것 (b) 탁송품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원산지제품' 의 정의와 관련된 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는 인보이스신고서에 그 확인 내용을 참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항들이 수출자에 대해 관세규정 또는 우편규정상 요구되는 다른 요식행위의 준수를 면제할 수는 없다.
	Article 117 1.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mmunit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8(2), and who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제117조 1.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시로 선적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인하고 본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2. 세관당국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

구분	원문	국문
	concerned.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gn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적힐 세관인증번호(통관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4.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자격 이용을 감시하여야한다. 5.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철회하여야 한다.
	Section3 Local clearance procedure Article 283	제3절 현지통관절차 제283조
	Authorisation to use the local clearance procedure shall be gran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in the manner laid down in Articles 253, 253a, 253b and 253c to any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ishing to carry out export procedures at his premises or at the other places designated or approv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현지통관절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자격은 제253, 253a, 253b 및 253c조가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자신의 영내나 세관당국이지정하거나 승인하는 다른장소에서 수출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모든사람(이하 '인증수출자' 라함)에게 부여된다.
	Article 285	제285조
	1. The approved exporter shall, before removal of the goods from the places referred to in Article 283, fulfil the following obligations: (a) duly inform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f such removal by lodging a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82;	1. 인증수출자는 제283조가 정하는 장소로부터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아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제282조가 정하는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반출물의수출을 세관에 신고하는것 (b) 그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구분	원문	국문
	(b)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documents required for the export of the goods. 2. The approved exporter may lodge a complete export declaration in place of the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In this case, the requirement for a supplementary declaration, laid down in Article 76(2) of the Code, shall be waived. Article 285a 1. The customs authorities may exempt the approved exporter from the requirement to lodge a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at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for each removal of goods. This exemp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the approved exporter fulfils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pproved exporter informs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f each removal, in the manner and form specified by that office; (b) the approved exporter supplies, or makes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ll information they consider necessary for effective risk analysis before the removal of the goods from the places referred to in Article 283; (c) the approved exporter enters the goods in his records.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y other formality,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offers similar guarantees. This entry shall indicate the date on which it is made and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y other formality,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offers similar guarantees. This entry shall indicate the date on which it is made and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세관당국에 제출하는것 2. 인증수출자는 간이수출신고서 대신 완전한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경우, 법제76(2)조가 정하는 보충신고서 요건은 면제된다. 제285a조 1.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각 반출 상품에 대한 세관에 단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요건을 면제 할수 있다. 이러한 면제는 인증수출자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인증수출자가 세관에 그세관이 정하는 방법과 양식으로 그반출 상품의 수출을 신고하는것 (b) 인증수출자가 제283조가 정하는 장소로부터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효과적인 위험분석을 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그 세관당국에 제공하는것 (c) 인증수출자가 그상품을 자신의 기록에 기입하는것. 제1항의 ©호가 정하는 기입은 유사한 보증이 되는 것으로서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입 사항에는 기입일과 그 상품을 확인하는데에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1a. 제592a조나 592d조가 적용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어느 경제주체로 하여금 각 수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를 그의 기록에 기입하되 그전체는 상품이 공동체의 세관구역을 이탈한 후 최대 1개월내에 정기적으로 보충신고를 통해 그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허가 할 수 있 다. 그러한 조치는 아래의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a) 경제 주체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이 아닌 상품을 위해서만 사용 할 것 (b) 경제주체가 수출세관이 그상품에 대한

구분	원문	국문
	2. In certain particular circumstances justified by the nature of the goods in question and the rapid turnover of export operations, the customs authorities may, until 30 June 2009, exempt the approved exporter from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oints (a) and (b)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he supplies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with all the information it considers necessary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right to examine the goods, should the need arise, before the exit of the goods. In this case, entry of the goods in the records of the approved exporter shall be equivalent to release. Article 285b 1.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oint (a)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285a(1) shall be given to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by the deadlines provided for in Articles 592b and 592c. 2. The entry in the records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285a(1) shall include the particulars for the local clearance procedure set out in Annex 30A.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796a to 796e are met. Article 286 1. To check that the goods have actually left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Copy No 3 of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hall be used as evidence of exit. The authorization shall stipulate that Copy No 3 of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be authenticated in advance. 2. Prior authentication may be effected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a) box A may be stamped in advance with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수출세관에 제공하는것 (c) 수출세관이 반출세관과 다른 경우, 세관당국은 그러한 조치와 (b)호가 정하는 자료를 반출세관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동의하여야한다. 제1항이 정하는 조치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수출과 반출에 대해 기록에 그 상품을 기입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해당상품의 특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특정상황에서 수출주체의 신속한 매출을 위해,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수출세관이상품을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품이 반출되기 전에 인증수출자가 수출세관에 제공하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인증수출자에게 제1항 제1목 (a) 및 (b)호가 정하는 요건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수출자의 기록에 그 상품을 기입하는 것은 면제된 것과 동일하다. 제285b조 1. 제285a(1)조의 제1항 (a)호가 정하는 자료는 제592a 및 592c조가 정하는 마감시간까지 수출세관에게 제출되어야한다. 2. 제285a(1)조의 첫항 ©호가 정하는 기록의 기입에는 부록 30A가정하는 현지통관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관당국은 제796a조부터 제796e 조사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6조 1. 상품이 공동체 관세구역을 실제로 이탈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식관리문서 3호본이 반출 증빙으로 활용된다.

구분	원문	국문
	the stamp of the competent customs office, and signed by an official from that office; (b) the approved exporter may stamp the declaration using a special stamp conforming to the model shown in Annex 62. The imprint of this stamp may be preprinted on the forms where the printing is entrusted to a printer approved for that purpose. 3. Before the departure of the goods the approved exporter shall fulfi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carry out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285 or 285a; (b) indicate on any accompanying document or any other medium replacing it the following particulars: (i) the reference to the entry in his records; (ii) the date on which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i) was made; (iii) the number of the authorisation; (iv) the name of the issuing customs office. Article 287 1. The author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83 shall lay down the specific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procedure and in particular shall stipulate: — the goods to which it applies, — the form of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85, — the time of release of the goods, — the content of Copy No 3 and the means by which it is to be validated, — the procedure for presenting the supplementary declaration and the time limit within which it must be lodged. 2. The authorization shall include an under taking by the approved exporter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 keeping of the special stamp or of the forms bearing the imprint of the stamp of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r the imprint of the special stamp.	세관당국은 그단식 관리문서 3호본 이사전에 인증되었음을 규정하여야한다. 2. 사전허가는 아래의 것 중 하나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다. (a) 구획 A에는 사전에 관할세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고 그 세관직원이 서명하여야한다. (b) 인증수출자는 부록 62에 제시된 모델에 부합하는 특수인장을 사용하여 신고서에 날인 할 수 있다. 그날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프린터에서 프린트 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사전에 그양식에 프린트할 수 있 다. 3. 상품이 출항하기전에인증수출자는아래 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a) 제285조나 285a조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 할 것 (b) 첨부문서나 이를 대신하는 다른 매체에 아래사항을 기입할 것 \ (i) 자신의 기록 인용 (ii) 제(i)호가 정하는 기입내용이 입력 된날짜 (iii) 허가번호 (iv) 발급세관명 제287조 1. 제283조가 정하는 인가는 절차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칙, 특히 아래의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적용대상상품 (b) 제285a(1)조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c) 상품을 방출하는 방식과 시기 (d) 첨부문서나 이를 대체하는 문서의 내용과 그것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방법 (e) 보충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그 제

구분	원문	국문
		출 마감 시기 제796a조부터 제796e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 ©호가 정하는 방출은 제796b조에 따라 허용되어야한다. 2. 그러한 인가에는 인증수출자로 하여금 특별직인이나 수출세관인장 또는 특별 직인이 프린트 된 양식의 보안을 보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 2】 EU이사회규칙(EEC) No 1207/2001

(Acts whose publication is obligatory)	(의무적 간행 법률)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 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133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Whereas: (1) Council Regulation (EEC) No3351/83 of 14 November1983 on the procedure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certificates EUR.1 and the making-out of forms EUR.2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1) provided for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preferential origin rules in relation to exports from the Community to certain third countries. (2) Many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customs fiel since Regulation (EEC) No 3351/83 was adopted. (3) In the context of the single market, it has been found that firms exporting goods from one or more	유럽연합 CIL이 본 규정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설립조약, 특히 그 제133조 관련, 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하여, (1)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정국가들(')간 특혜무역 적용 조항상의 이동확인서 EUR.1 발급 및 EUR.2양식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1983년 11월 14일자 (EC)위원회규정 제3351/83호가 유럽연합공동체로부터 특정의 제3국가들에 수출되는 품목들의 특혜원산지 규칙의 정확한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 (EEC)규정 제3351/83이 채택된 후 통관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3) 하나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설립국가 외의 하나 이상의 회원국가들에

Member States other than the one in which they are established and wishing to use simplified procedures for the issue of proof of origin, sometimes have to apply for a separat authorisation for each Member State of export.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his situation, while ensuring that the machinery of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can continue to operate properly.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단순화된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각 수출국가에 대해 별도의 인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화 하면서 특혜조치 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ssuing or verifying proofs of origin should be in a position to fulfil the Community's commitments under the preferential agreements within the requisite deadlines.	(4) 원산지증명을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기관은 정해진 기일 내에 특혜약정상의 공동체 협약을 완수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5) In the interests of clarity, Regulation (EEC) No 3351/83 should be repealed and replaced by this Regulation, HAS ADOPTED THIS REGULATION:	(5)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EEC) 규정 제3351/83호를 무효로 하고 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Article 1	제1조
Scope	범위
This Regulation lays down rules intended to facilitate: (a)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by Member States authorities,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or formsn EUR.2 by Community exporters; (b) the issue of 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s valid in several Member States; (c) the functioning of the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본 규정은 아래 사항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 (a) 회원국가 기관에 의한 이동확인서 EUR.1 발급, 공동체 수출자들의 인보이스신고서나 EUR.2 양식 작성 (b) 몇몇 회원국에 해당하는 인증수출자 인가서 발급 (c) 회원국들 간 행정협력방안의 가동
Article 2	제2조
Supplier's declarations and their use	공급자신고서 및 그 사용

1. Suppliers shall provide, by means of a declarati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products with regard to the Community'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 Supplier's declarations shall be used by exporters as evidence, in particular in support of applications for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or as a basis for making out invoice declarations or forms EUR.2.

공급자는 공동체 특혜원산지규칙과 관련된 제품지위에 관한 자료를 신고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 신고서는 수출자가 특히 이동확인서 EUR.1 발급신청이나 인보이스신고서 또는 EUR.2 양식 작성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Article 3

Making of supplier's declarations

Except in the cases provided for in Article 4, the supplier shall furnish a separate declaration for each consignment of goods.The supplier shall include that declaration on the commercial invoice relating to that consignment or on a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which describes the goods (1) OJ L 339, 5.12.1983, p. 19. concerne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The supplier may furnish the declaration at any time, even after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제3조

공급자신고서 작성

제4조가 정하는 사안 외에는 공급자는 각 탁송상품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탁송상품과 관련된 상용인보이스나 인도전표 또는 해당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상세히 기술한 기타 상용문서에 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어느 때든, 상품이 이미 인도된 후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4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1. When a supplier regularly supplies a particular customer with goods whose status in respect of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is expected to remain constant for considerable periods of time, he may provide a single declaration to cover subsequent shipments of those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may be issued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declaration.
2.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may be issued with retroactive effect. In such cases, its validity may not exceed the period of one year from the

제4조

장기 공급자 신고서

1. 공급자가 특정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특혜원산지 관련 그 상품의 지위가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상품의 후속선적에 적용될 단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이를 '공급자 장기신고서'라 칭한다. 공급자 장기신고서는 그 신고서 발급 후 일년이 되는 기간까지를 대상으로 발급될 수 있다.
2. 공급자 장기신고서는 소급효를 갖도록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력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날로부터 1

date on which it came into effect. 3. The supplier shall inform the buyer immediately when the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is no longer valid in relation to the goods supplied.	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급자 장기신고서가 공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이를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Article 5	제5조
Form and making-out of supplier's declarations	공급자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
1. For products having obtained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 given in the form prescribed in Annex I or, for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in that prescribed in Annex II. 2. For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Community without having obtained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 given in the form prescribed in Annex III or, for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in that prescribed in Annex IV. 3.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supplier in manuscript and may be made out on a pre-printed form. However, where the invoice and supplier's declaration are drawn up by computer, the declaration need not be signed in manuscript provided that the supplier gives the client a written undertaking accepting complete responsibility for every supplier's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him as if it had been signed in manuscript by him.	1. 특혜원산지자격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공급자 신고서는 부록 I이 정하는 양식, 장기공급자신고서는 부록II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공동체 내에서 작업이나 공정을 거쳤으나 특혜원산지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공급자 신고서는 부록 III이 정하는 양식, 장기공급자신고서는 부록 IV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3. 공급자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고 사전프린트 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보이스와 공급자신고서가 컴퓨터로 작성된 경우, 공급자가 자필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는 모든 공급자신고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을 고객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고서에 자필 서명할 필요가 없다.
Article 6	제6조
Information certificates INF4	자료확인서 INF4
1. To verify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a supplier's declar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may call upon on the exporter to obtain from the supplier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using the form shown in Annex V. 2.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shall b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upplier is established. The said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all for any	1. 공급자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당국은 수출자에게 공급자로부터 부록 V가 정하는 양식으로 된 자료확인서 INF 4를 입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확인서 INF 4는 공급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발급하여야 한다. 위 세관당국은 모든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 계정을 조사하거

evidence and to carry out any inspection of the supplier's accounts or any other check that they consider necessary.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issue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within three months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given by the supplier was correct.
4. The completed certificate shall be given to the supplier to forward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relevant customs authority.

나 다른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다.

3. 세관당국은 공급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급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기재한 자료확인서 INF 4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작성된 확인서는 공급자에게 발급되고 다시 수출자를 통해 관련 세관당국에 발송되어야 한다.

Article 7

Preservation of declar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s

1. A supplier who makes out a supplier's declaration shall keep all the documentary evidence proving the correctness of the declaration for at least three years.
2. A customs authority to which an application for the issue of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4 has been made shall keep the application form for at least three years.

제7조

신고서와 입증문서의 보관

1. 공급자신고서를 작성하는 공급자는 그 신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최소한 삼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자료확인서 INF4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그 신청서양식을 최소한 삼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rticle 8

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

1. An exporter who frequently exports goods from a Member State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is established may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covering such exports. For that purpose,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is both established and keeps the records containing the evidence of origin.
2. When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satisfied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origin Protocols to the relevant Agreements or in the Community legisl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preferential regimes are fulfilled, and issue the authorisation, they shall notif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제8조

인증수출자의 허가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9	제9조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상호행정지원
The Member States'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given in suppliers' declarations and in ensuring that the system of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operates correctly.	회원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신고서상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인증수출자 인가시스템이 정확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10	제10조
Checking supplier's declarations	공급자신고서 점검
1. Where an exporter is unable to present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within four months of the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f export may directly ask th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supplier is established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respect of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1. 수출자가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은 후 사 개월 이내에 자료확인서 INF 4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출회원국 관세당국은 그 공급자가 설립된 회원국 세관당국에 직접 특혜원산지규칙에 관련된 해당제품의 자격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f export shall send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to whom the request is addressed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and give the reasons of form or substance for their enquiry. In support of their request, they shall provide all documents or information they have obtained which suggest that the supplier's declaration is inaccurate.	2. 제1항의 목적상, 수출회원국 세관당국은 그 요청대상회원국 세관당국에 자신이 입수한 모든 자료를 발송하고 요청대상 사유에 관한 양식과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관당국은 공급자신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입수문서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 verific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upplier's declaration has been issued. The authorities in question may call for any evidence, carry out any inspection of the producer's accounts or conduct any other verification considered appropriate.	3. 확인작업은 공급자신고서가 발급된 회원국 세관당국이 하여야 한다. 대항 세관당국은 증거제출을 요구하거나 생산자 계정을 조사하거나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확인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The customs authorities requesting the verification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by means of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4. 확인을 요청한 세관당국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확인서 INF 4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Where there is no reply within five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where the reply	5. 확인신청일 후 오 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보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monstrate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shall declare invalid the EUR.1 movement certificates issued, the invoice declarations or the EUR.2 forms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in question.

여주는 충분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은 문제가 된 문서를 근거로 발급된 EUR.1 이동확인서와 인보이스신고서 또는 EUR.2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Article 11

제11조

Repeal

폐지

Regulation (EEC) No 3351/83 is hereby repealed. References to the repealed Regulation shall be construed asreferences being made to this Regulation

(EEC)규정 제3351/83호는 본 조를 통해 이를 폐지한다.

폐지된 규정의 원용은 본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새긴다.

Article 12

제12조

Transitional provisions

경과조항

1. Supplier's declarations, including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made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shall remain valid.
2. Supplier's declarations conforming to the specimens in Regulation (EEC) No 3351/83 may continue to be issu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3.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forms of the type shown in Annex V to Regulation (EEC) No 3351/83 may continue to be us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1. 공급자 장기신고서를 포함한 공급자 신고서로서 본 규정 시행일 전에 작성된 것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EEC)규정 제3351/83호상의 견본에 합치하는 공급자신고서는 본 규정 시행일 후 12개월간 계속 발급될 수 있다.

3. (EEC)규정 제3351/83호 부록 V에 게시된 유형의 자료확인서 INF 4양식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Article 13

제13조

Entry into force

시행일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20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본 규정은 그것이 유럽연합 공식간행물에 공표된 날 후 20번째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본 규정은 그 전체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고 그들에 직접 적용된다.

Done at Luxembourg, 11 June 2001.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M. SAHLIN

2001년 6월 11일 Luxembourg에서 시행함.

유럽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장
M. SAHLIN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원문)

ANNEX I

Suppplier's declaration for products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made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listed on this document ..... (1) originate in ..... (2)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3).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4)

..... (5)

..... (6)

---

(1) If only some of the goods listed on the document are concerned, they should be clearly indicated or marked and this marketing entered in the declaration as follows:
'. . . listed on this invoice and marked . . . were originating in . . .'.
(2) The Community, Member State or partner country.
(3) State partner country or countries concerned.
(4) Place and date.
(5) Name and position in the company.
(6) Signature.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번역문)

부록 I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제시된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다.

신고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본 문서에 게시된 …….(1)의 원산지가 ……..(2)라는 것과 …….(3)과의 특혜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추가 문서들을 제출할 책임을 진다.

…… (4)

…… (5)

…… (6)

(1) 문서상 열거된 상품 중 몇 개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되,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본 인보이스에 게시되고 표시가 된 상품은 …가 원산지로서…'

(2) 연합,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가

(3) 파트너국가 또는 관련국가

(4) 장소와 날짜

(5) 성명과 회사 내 직책

(6) 서명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원문)

ANNEX II

Long-term declaration for products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made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described below:

..... (1)

..... (2)

.....

.....

which are regularly supplied to ..... (3), originate in ..... (4)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5).

This declaration is valid for all further shipments of these products dispatched from: ..... to ..... (6).

I undertake to inform ..... immediately if this declaration is no longer valid.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7)

..... (8)

..... (9)

(1) Description.
(2) Commercial designation as used on the invoices, e.g. model No.
(3) Name of company to which goods are supplied.
(4) The Community, Member State or partner country.
(5) State partner country or countries concerned.
(6) Give the dates. The period should not exceed 12 months.
(7) Place and date.
(8) Name and posi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9) Signature.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번역문)

부록 II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의 장기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제시된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다.

신고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3)에 정기적으로 수출되는 아래에 적은 상품
……(1)
……(2)
……..
……이
원산지가 ……..(4)이고 ……..(5)와의 특혜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신고서는 ……에서 ……(6)으로 발송되는 이 제품의 모든 추가 선적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본인은 본 신고서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추가 보완문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7)

……(8)

……(9)

---

(1) 제품설명

(2) 예를 들어 모델번호 ___와 같이 인보이스에 사용되는 상용기호

(3) 상품공급대상회사의 명칭

(4)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

(5) 파트너국가나 관련국가를 기록할 것

(6) 날짜 기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원문)

ANNEX III

Supplier's declaration for products not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made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supplier of the goods covered by the annexed document, declare that:

1. the following materials which do not originate in the Community have been used in the Community to produce these goods.

Description of goods supplied (1)	Descrip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HS heading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2)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3)
			Total:

2.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e Community to produce these goods originate in the Community.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4)

..... (5)

..... (6)

---

(1) Whe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o which the declaration is annexed relates to a variety of goods, or goods not incorporating the same propor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the supplier must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m.
Example:
The document covers different models of electric motor of heading 8501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washing machines of heading 8450. The nature and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motors vary from one model to another. The models must be listed separately in column 1 and the information in the other columns must be given for each, so that the manufacturer of the washing machines can correctly assess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of his products depending on the type of motor it incorporates.

(2) To be completed only where relevant.
Example:
The rule for garments of ex Chapter 62 allows the use of non-originating yarn. Thus if a French garment manufacturer uses fabric woven in Portugal from non-originating yarn, the Portuguese supplier need only enter 'yarn' as non-originating materials in column 2 of his declaration, the HS heading and value of the yarn are irrelevant.
A firm manufacturing wire of HS heading 7217 from non-originating iron bars must enter 'iron bars' in column 2. If the wire is to be incorporated in a machine for which the rule of origin sets a percentage limit o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the value of the bars must be entered in column 4.

(3) 'Value' means the customs value of the materials at the time of import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the Community.
For each type of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specify the exact value per unit of the goods shown in column 1.

(4) Place and date.

(5) Name and posi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6) Signature.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번역문)

부록 III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주어진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복제하면 안 된다.

신고서

첨부문서 대상상품의 공급자로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신고합니다.

1. 유럽연합이 원산지가 아닌 아래 원자재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2. 이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된 다른 모든 원자재들은 유럽연합이 그 원산지입니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다른 입증문서들을 제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급된 상품 내역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내역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HS 항목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가액
			총액

……(4)

……(5)

……(6)

(1) 신고서가 첨부된 원 인보이스, 인도전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가 동일한 비율의 비-원산지 자재를 함유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에 관련된 것인 경우, 공급자는 그들 간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예시:
문서가 항목번호 8450인 세탁기제조에 사용되는 항목번호 8501인 여러 모델의 전기모터에 대한 것이다. 그 모터들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성격과 가액은 모델 별로 다르다. 그 모델들 목록은 칼럼1에 별도로 기입하고 다른 칼럼에는 그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기입해서 세탁기 제조자가 세탁기에 포함된 모터들의 각 유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각 제품의 원산지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
예시:
이전 제62장의 의복관련 규칙은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어느 프랑스 의복제조자가 비-원산지원사로 포르투갈에서 직조한 원단을 사용하였다면 그 포르투갈 공급자는 그의 신고서 칼럼 2에 그 원사가 비-원산지 원자재임을 기입하면 되고 HS 항목이나 그 원사의 가액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원산지 철 환봉으로부터 HS 항목이 7217인 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는 칼럼 2에 '철 환봉'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액에 대한 백분비 한계를 정한 원산지규칙이 적용되는 어느 기계에 그 와이어가 사용된다면, 그 환봉의 가액을 칼럼 4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가액'은 수입 당시의 원자재 통관가액을 의미하되, 그것을 알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그 원자재에 대해 지불한 확인 가능한 최초가격을 의미한다.
사용된 각 유형의 비-원산지 원자재에 대해 칼럼 1에 기입된 상품의 단위 별 정확한 가액을 적어 넣을 것

(4) 장소 및 날짜

(5) 성명과 직책, 회사명과 주소

(6) 서명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원문)

ANNEX III

Supplier's declaration for products not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is given below, must be made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otnotes. However, the footnote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supplier of the goods covered by the annexed document, declare that:

1. the following materials which do not originate in the Community have been used in the Community to produce these goods.

Description of goods supplied (1)	Descrip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HS heading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2)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3)
			Total:

2.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e Community to produce these goods originate in the Community.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4)

..... (5)

..... (6)

---

(1) Whe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o which the declaration is annexed relates to a variety of goods, or goods not incorporating the same propor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the supplier must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m.
Example:
The document covers different models of electric motor of heading 8501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washing machines of heading 8450. The nature and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motors vary from one model to another. The models must be listed separately in column 1 and the information in the other columns must be given for each, so that the manufacturer of the washing machines can correctly assess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of his products depending on the type of motor it incorporates.

(2) To be completed only where relevant.
Example:
The rule for garments of ex Chapter 62 allows the use of non-originating yarn. Thus if a French garment manufacturer uses fabric woven in Portugal from non-originating yarn, the Portuguese supplier need only enter 'yarn' as non-originating materials in column 2 of his declaration, the HS heading and value of the yarn are irrelevant.
A firm manufacturing wire of HS heading 7217 from non-originating iron bars must enter 'iron bars' in column 2. If the wire is to be incorporated in a machine for which the rule of origin sets a percentage limit o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the value of the bars must be entered in column 4.

(3) 'Value' means the customs value of the materials at the time of import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the Community.
For each type of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specify the exact value per unit of the goods shown in column 1.

(4) Place and date.

(5) Name and posi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6) Signature.

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번역문)

부록 IV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의 공급자 장기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주어진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서

……..(1)에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본 문서 대상상품의 공급자인 아래 서명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신고한다.

1.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유럽연합이 원산지가 아닌 아래의 원자재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었다.

공급된 상품 내역(2)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내역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HS 항목(3)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가액(4)
			총액

2. 이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된 다른 모든 원자재들은 유럽연합이 원산지이다.

본 신고서는 ……로부터 ……(5)로 발송되는 이들 제품의 차후의 모든 선적에 해당된다.

본인은 본 신고서가 효력을 잃는 즉시 이를 ……에 통지할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추가 입증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

……(6)
……(7)
……(8)

(1) 고객 명과 주소

(2) 신고서가 첨부된 원 인보이스, 인도전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가 동일한 비율의 비-원산지 자재를 함유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에 관련된 것인 경우, 공급자는 그들 간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예시:

문서가 항목번호 8450인 세탁기제조에 사용되는 항목번호 8501인 여러 모델의 전기모터에 대한 것이다. 그 모터들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성격과 가액은 모델 별로 다르다. 그 모델들 목록은 칼럼1에 별도로 기입하고 다른 칼럼에는 그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기입해서 세탁기 제조자가 세탁기에 포함된 모터들의 각 유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각 제품의 원산지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

예시:

이전 제62장의 의복관련 규칙은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어느 프랑스 의복제조자가 비-원산지원사로 포르투갈에서 직조한 원단을 사용하였다면 그 포르투갈 공급자는 그의 신고서 칼럼 2에 그 원사가 비-원산지 원자재임을 기입하면 되고 HS 항목이나 그 원사의 가액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원산지 철 환봉으로부터 HS 항목이 7217인 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는 칼럼 2에 '철 환봉'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액에 대한 백분비 한계를 정한 원산지규칙이 적용되는 어느 기계에 그 와이어가 사용된다면, 그 환봉의 가액을 칼럼 4에 기입하여야 한다.

(4) '가액'은 수입 당시의 원자재 통관가액을 의미하되, 그것을 알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그 원자재에 대해 지불한 확인 가능한 최초가격을 의미한다.

사용된 각 유형의 비-원산지 원자재에 대해 칼럼 1에 기입된 상품의 단위 별 정확한 가액을 적어 넣을 것

(5) 날짜 기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6) 장소와 날짜

(7) 성명과 직책, 회사 명과 주소

(8) 서명

정보증명서 INF 4(원문)

1. **Supplier** (name, full address, country)	**INF 4 Information certificate** **No A 000.000** See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this form
2. **Consignee** (name, full address, country)	**Information certificate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and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3. **Invoice Nos** (1) (2)	4. **Observations**
5. **Item number —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3)	6. **Gross weight (kg) or other measure (l, m³, etc.)**
7. **CUSTOMS ENDORSEMENT** Declaration certified: ☐ . . . . . **correct** ☐ . . . . . **not correct** (see box 5) Issuing country .... *(place and date)* ..... *(Signature)* *Stamp*	8. **DECLARATION BY THE SUPPLIER**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declaration(s) concer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described in box 5 and(4) ☐ on the invoice(s) shown in box 3 and attached to this certificate (1) ☐ on my long-term declaration of ..... *(date)* is/are correct (Place and date) ..... , ... *(Signature)*

(1) The term 'invoice' also includes delivery notes or other commercial documents relating to the shipment or shipments concerned on which the declaration(s) are entered.
(2) This box need not be completed in the case of long-term declarations.
(3) Describe the goods entered in box 5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practice an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4) Place a cross in the appropriate box.

정보증명서 INF 4(번역문)

EN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1. 공급자 (상호, 전체 주소, 국가)	INF 4 자료확인서 번호 A 000.000 이 양식에 기입하기 전에 뒷면을 참조할 것
2. 수하인 (상호, 전체 주소, 국가)	**EUR.1 발급과 인보이스신고서 및 양식 EUR.2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확인서**
3. 인보이스 번호 (1)(2)	4. 관찰내용
5. 품목번호 - 마크와 번호 - 포장 수와 종류 - 상품명세(3)	6. 총 무게(kg) 또는 기타 치수 (l, m³, 등)
7. 세관 승인 신고서 확인: □……………정확함 □…………….정확하지 않음 (5번 박스 참조) 발 급 국 가 … … … … … … … ………………… ………………………………… (장소와 날짜) … … … … … … … … … … … …………………… (서명) 날인	8. 공급자 신고내용 아래 서명한 본인은 박스 5와 아래(4)에 기입된 상품의 원산지자격에 관한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신고한다. □박스3에 기입되고 본 확인서(1)에 첨부된 인보이스(들) □……….(날짜)일자 본인의 장기신고서 가/들이 정확함. (장소와 날짜)…………………………………… … … … … … … … … … … … … … … … … … … ……… (서명)

【부록 3】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注册（备案）、年审须知

1、申请注册（备案）登记的企业先取得报检备案登记号后（报检备案咨询电话 010-58619886），再办理产地证注册（备案）登记手续；

2、申请企业注册（备案）、年审均需登陆原产地证企业注册平台（http://ocr.ecig.cn），在线填写注册信息，注册信息包括企业基本信息、企业产品信息、企业产品明细、企业申报员信息、企业主要生产加工设备清单、企业电子文档资料（营业执照副本和组织机构代码证副本扫描件）等（工商注册地为海淀区、昌平区和延庆县的企业及申报员，在企业基本信息和申报员信息中所属机构、签证机构和领证机构选择北京海淀局本部，其他区县的企业选择北京局本部）。保存并提交电子信息，提交后填写并打印此表，企业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和随附资料一并提交到北京出入境检验检疫局；

3、产地证申报员须经检验检疫机构培训考试合格，取得产地证申报员资格证书。对于新注册（备案）登记单位，可以指定临时申报员，年审时，注册（备案）单位必须有正式的产地证申报员；

4、中英文印章为注册（备案）单位中英文名称对照（一体）印章，大小尺寸不要超过 6CMX4CM(长 X 宽)，颜色、形状不限，但不要带人名；

5、注册费 500 元，如是备案（只办理一般原产地证书），不收取注册费；（刷卡缴费或支票缴费）

6、注册（备案）单位自注册之日起满 12 个月，须提前一个月办理年审手续，年审手续同注册，同时携带《产地证注册登记证》。注册产品有效期为一年，超过一年的须重新提供异地产品《原产地标准调查结果单》正本。年审时如有注册内容变更，须在此表备注栏注明变更内容，不需再单独做变更申请；

7、注册（备案）内容如有变更或增加，须填写《原产地证明申请人注册（备案）登记变更表》及时办理变更或增加手续；

8、生产型企业须检验检疫机构在产品出运前到现场核查企业情况和产品情况；

9、异地产品《原产地标准调查结果单》，应由生产企业到当地检验检疫机构申请；

10、北京地区企业生产的产品须填写《产品成本明细单》，空白《产品成本明细单》可以从本网站表格下载栏目下载；

11、此表各项内容须填制完整并打印，不得涂改，不得缺页。法人代表签字和产地证申报员手签笔迹须本人亲笔签名；

12、HS 编码须按海关税则据实填写；

13、进口成分指产品含有进口成分的情况，如不含进口成分，填 0，若含有进口成分，则填进口成分占出厂价的百分比值；

14、申请签发原产地证书须由法人授权注册的产地证申报员申请。

随附资料（所有复印件须用 A4 纸复印）

1、营业执照副本复印件并加盖公章；2、获准进出口经营权的资格证书或批准证书或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复印件并加盖公章；3、组织机构代码证副本复印件并加盖公章；4、北京地区企业生产的产品，须填写《产品成本名细单》并附原材料采购发票复印件并加盖公章；5、京外企业生产的产品，须要当地检验检疫机构出具《原产地标准调查结果单》正本； 6、法人代表身份证件复印件；7、产地证申报员身份证件复印件；8、申报员资格证书复印件；9、其他须要资料。

注：

受理时间：每周一、三、五上午 9：00-11：30。工商注册地为海淀区、昌平区和延庆县的企业资料提交到中关村办公室，其他区县的企业资料提交到朝阳口岸办事处。

北京检验检疫局中关村办公室：海淀区阜成路 73 号裕惠大厦 C 座一楼大厅 电话：88828960；

北京检验检疫局朝阳口岸办事处：朝阳区十八里店东四环南路甲 1 号朝阳口岸陆港物流楼一层产地证科 电话：87625910。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신청 주의사항

1. 서류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반드시 검역신고 등록번호를 취득한 뒤(검역신고문의전화 010-58619886), 원산지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서류등록 신청업체, 연1회 심사는 모두 원산지업체등록홈페이지 (http://ocr.eciq.cn)에서 업체기본정보, 업체제품정보, 업체제품상세설명, 업체신청자정보, 업체주요생산가공설비목록, 업체전자문건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 및 기관 코드 사본 스캔) 등 신청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등록지역이 해정구, 창평구, 연경현 지역의 업체 및 신청자는 업체기본정보와 신청자정보 소속기관, 증명기관, 수령기관은 북경해정국본부를 선택, 기타구현의 업체는 북경국본부를 선택) 전자문건은 저장 및 제출하고, 제출 후 작성한 문건을 인쇄하여 등록업체 대표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다. 모든 서류를 북경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원산지검사관증을 보유한) 검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업체의 증명서에 날인할 인감도장은 반드시 중문, 영문의 인감도장 모두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6CM(길이) × 4CM(넓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색감과 형태의 제한은 없다.
5. 신청접수비 500 위안이며, 일반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신청접수비를 받지 않는다.
6. 신청등록업체는 신청일부터 만 12개월 1달 전에 반드시 감사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감사수속 같은 경우는 <원산지신청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등록제품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 초과 시에는 외지제품<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시 신청등록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정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해야 하며, 단독으로 수정내용 변경신청은 불가하다.
7. 신청등록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 <원산지증명신청인등록변경서식>을 작성하고 변경내용 신청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8. 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품 출하 전에 검역기관이 현장에서 업체 및 제품현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9. 타지 제품<원산지표준조사결과서식>은 생산업체가 현지검역기구에 신청을 해야한다.
10. 북경 소재의 업체 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비용명세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11. 본 서식의 모든 페이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수정되거나 공백의 페이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법정대표인 서명과 원산지검사관 모두 친필 서명을 해야 한다.
12. HS 코드는 세관법에 따라 8-10자를 기입해야 한다.
13. 수입제품의 성분은 제품 수입성분의 함유량을 말하며, 수입성분이 없다면 0을 기입하고, 수입성분이 있다면 수입성분의 공장출고가격의 백분율을 기입해야 한다.
14.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은 반드시 법적 원산지등록증명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별첨(사본은 반드시 A4 용지로 제출되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날인본 각 1부;
2. 수출입영업허가 자격증명, 증명서 허가, 대외무역영업자 등록서류 사본 및 날인본;
3. 기관 및 기구코드 원본 및 사본;
4. 북경 소재의 업체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자재구매영수증 복사 및 날인본;
5. 북경 외 타지역 업체생산제품은 현지검역기관이 발부한 <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식>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6. 법적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7. 현지의 검사관 신분증 사본;
8. 검사관 자격증 사본; 9. 기타 서류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원본)

产地证注册（备案）号：

原产地证明申请人注册（备案）登记表

郑重声明

申请单位了解本注册（备案）登记表内已填的全部内容，所有内容及呈交的文件资料真实正确，并保证做到：

（一） 严格按照有关规定申报各类原产地证书，并对证书项下的产品进行管理，使之符合相关原产地规则。

（二）本登记表中的内容如有变化，及时向检验检疫机构申报并办理相关注册变更手续。

（三）申报的原产地证书证书副本及相关贸易单证，均妥善保存三年以上备查。

（四）接受检验检疫机构的监督检查，保证提供所需资料、文件的真实性。

如违反上述保证，本单位愿承担相关法律责任。

法人代表签字：

（加盖公章）

申请日期：　　年　　月　　日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안내드립니다.

신청업체는 본 등록서식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해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제품혜택원산지관리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부문의 원산지증명서를 신고하고 증명서에 기입된 제품을 관리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산지 표준에 부합시켜야 한다.

2. 본 신고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산지 등록기관 및 변경사항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3.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관련 무역증명서는 모두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원산지등록심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성실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위 내용에 위반될 경우, 본 업체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대표자 서명 :

(날인)

신청일자 : 연 월 일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원본)

注册（备案）单位基本信息备案

报检备案登记号			组织机构代码		
申请人（单位）	中文名称				
	英文名称				
注册地址					
办公地址（中文）					
办公地址（英文）					
邮 编		工商注册地		法人代表	
联系人		电 话		传 真	
工商执照注册号					

企业性质（请在相关类别后空格内打“√”）

1 国有企业		2 中外合资企业		3 中外合作企业		4 外商独资企业	
5 集体企业		6 民营企业		7 有限责任企业		8 股份制企业	
9 私营企业		10 国外企业		11 旅游销售部门		12 其他企业	

企业类型（请在相关类别后空格内打“√”）

经营型		生产型	

办理项目（请在相关类别后空格内打“√”）

注 册		备案		年 审	

办理机构（请在相关类别后空格内打“√”）

机构名称	北京局本部	北京海淀局本部	异地签证机构
所属机构			
签证机构			
领证机构			

备注

2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신고등록번호			조직 및 기관코드		
신청인	중문명				
	영문명				
등록주소 :					
현주소(중문) :					
현주소(영문) :					
우편번호		사업등록지역		법인대표	
담당자		연락처		FAX	
사업자등록증					

업종(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1. 공기업		2. 중외합자기업		3.중외합작기업		4.해외독자회사[83]	
5. 협동조합		6. 민영기업		7. 유한책임기업		8. 주식회사	
9.개인운영기업		10. 국외기업		11. 여행판매업		12.기타기업	

사업 유형(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경영식		생산식	

신청항목(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등록		접수		감사	

접수기관(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기관명칭	북경국본부	북경해정국본부	타지역발급기관
소속기관			
발급기관			
수령기관			

83)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법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注册（备案）单位申报员和中英文印章备案

姓名		手签笔迹		电话	
性别		申报员证号		职务（英文）	
学历		身份证号码		手机	
姓名		手签笔迹		电话	
性别		申报员证号		职务（英文）	
学历		身份证号码		手机	
姓名		手签笔迹		电话	
性别		申报员证号		职务（英文）	
学历		身份证号码		手机	
姓名		手签笔迹		电话	
性别		申报员证号		职务（英文）	
学历		身份证号码		手机	
法人代表授权			本人授权上述人员代表本单位向检验检疫机构申请签发原产地证明书。 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		
注册（备案）单位申请原产地证书用中英文印章备案					

3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법인대표		상기 본인은 상기 업체의 대표로써 검역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법인대표서명(인):			
등록업체 원산지증명서용 중,영문도장 (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出口产品备案登记

产品名称（中英文）	H.S.编码	进口成分	目的国家或地区	生产企业组织机构代码	生产企业名称和电话

4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상품명칭	HS CODE	수입성분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기업 조직기구번호	생산기업명 및 연락처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主要加工、生产设备登记（生产型企业填写）

设备名称	工序或用途	数 量	备 注

5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설비명칭	가공공정	수량	비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检验检疫机构审批流程

受理意见： 签字：　　年　月　日
初审： 签字：　　年　月　日
现场核查结论： 签字：　　年　月　日
复审： 签字：　　年　月　日
检验检疫机构意见： 签字：　　年　月　日

6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접수의견 : 서명 : 년 월 일
1차 심의 서명 : 년 월 일
현장검사결과 서명 : 년 월 일
재심의 서명 : 년 월 일
검역기관의견 서명 : 년 월 일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签证机构对生产企业现场核查流程

一、 企业领导介绍企业基本情况

（一）企业概况，包括企业的性质、认证情况、投产日期、生产规模、加工能力以及人员等的情况；

（二）产品原材料、零部件来源情况；

（三）产品生产流程。

二、 调查人员核实企业的基本信息

（一）企业名称是否相符；

（二）注册地址是否一致；

（三）企业的资质（企业营业执照、进出经营权批文、企业组织代码等）。

三、 调查人员核实产品原材料、零部件来源的证明文件

（一）企业提供原材料、零部件采购发票或进料情况证明等；

（二）企业提供《产品成本明细单》。

四、 调查人员现场核查产品的生产流程、加工工序和产品的生产加工设备

（一）生产加工现场核查生产流程、加工工序是否完整；

（二）生产加工现场核查生产加工设备是否完好；

（三）生产加工现场核查生产加工设备名称、数量是否和所申报的一致。

五、 调查人员现场核查原材料、零部件的来源情况

（一）原料库房现场核查原材料、零部件的来源情况；

（二）生产加工现场核查原材料、零部件的来源情况。

六、 调查人员现场核查出口产品数量、包装

（一）生产加工现场、成品库房现场核查产品的数量；

（二）生产加工现场、成品库房现场核查产品的包装情况；

（三）生产加工现场、成品库房现场核查包装唛头情况。

七、 现场采集样品（必要时）

八、 结束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발급기관의 생산기업 현장 감사 공정

1. 기업 대표의 기업 기본 현황 소개
   1) 기업현황(기업의 성질, 인증현황, 투자생산일자, 생산규모, 가공능력 및 구성원 현황)
   2)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현황
   3) 제품생산공정

2. 감사단의 기업 기본정보 조사
   1) 기업명 부합 여부
   2) 등록주소 일치 여부
   3) 기업의 자질(사업자등록증, 수출입허가증, 기업조직코드 등)

3. 감사단의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증명서 조사
   1) 기업의 원재료, 부품구매영수증 및 재료공급에 대한 증명
   2) 기업의 <제품비용명세서>

4. 감사단의 제품생산과정, 공정순서 및 제품생산가공설비 현장 조사
   1) 생산과정, 공정순서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2) 생산가공설비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3) 생산가공설비 명칭, 수량과 신청내역정보와 일치 여부 현장감사

5. 감사단의 원재료, 부품 출처 현장 조사
   1) 원재료창고 내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2) 생산가공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6. 감사단의 수출제품 수량, 포장 현장 조사
   1)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수량 현장 감사
   2)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 현장 감사
   3)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케이스 현장 감사

7. 현장 샘플 수집(필요 시)

8. 종료

【부록 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85]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已于2008年12月25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9年3月1日起施行。[84]

署 长

二〇〇九年一月八日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第一条 为了正确确定优惠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的原产地，规范海关对优惠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海关对优惠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

第三条 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以下简称成员国或者地区）直接运输进口的货物，符合下列情形之一的，其原产地为该成员国或者地区，适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中相应优惠贸易协定对应的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以下简称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 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产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이 2008년 12월 25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2009년 1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조 특혜무역협정(优惠贸易协定)하에서 수출입화물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관리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세관이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관리(原产地管理)에 적용된다.

제3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成员国) 또는 지역(이하 "회원국 또는 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운송(直接运输) 수입되는 화물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 또는 지역을 그 원산지로 간주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특혜무역협정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이하 "협정세율(协定税率) 또는 특혜세율(特惠税率)"이라 한다)을 반영한다.

(1)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二) 非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产，但符合本规定第五条、第六条规定的。

(2)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완전생산되지는 않았으나, 다만, 본 규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

第四条 本规定第三条第（一）项所称的“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产”的货物是指：

제4조 본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완전생산”된 화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一）在该成员国或者地区境内收获、采摘或者采集的植物产品；

(1)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수확, 채취 또는 채집된 식물제품

（二）在该成员国或者地区境内出生并饲养的活动物；

(2)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산동물

（三）在该成员国或者地区领土或者领海开采、提取的矿产品；

(3)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채굴 또는 추출한 광산품

（四）其他符合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完全获得标准的货物。

(4) 기타 해당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완전획득기준에 부합되는 화물(상품)

第五条 本规定第三条第(二)项中，“非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产”的货物，按照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税则归类改变标准、区域价值成分标准、制造加工工序标准或者其他标准确定其原产地。

제5조 본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완전하게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화물은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칙분류변경기준(税则归类改变标准), 구역가치성분기준(区域价值成分标准), 가공공정기준(制造加工工序标准)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그 원산지를 판정한다.

（一）税则归类改变标准，是指原产于非成员国或者地区的材料在出口成员国或者地区境内进行制造、加工后，所得货物在《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中税则归类发生了变化。

(1) 세칙분류(税则归类) 변경기준이라 함은 원산지가 비회원국 또는 지역인 원재료를 수출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제조, 가공을 진행한 후 취득한 화물이 《상품명칭 및 부호조화제도(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 중에서 세칙분류(税则归类)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二）区域价值成分标准，是指出口货物船上交货价格（FOB）扣除该货物生产过程中该成员国或者地区非原产材料价格后，所余价款在出口货物船上交货价格（FOB）中所占的百分比。

（三）制造加工工序标准，是指赋予加工后所得货物基本特征的主要工序。

（四）其他标准，是指除上述标准之外，成员国或者地区一致同意采用的确定货物原产地的其他标准。

第六条　原产于优惠贸易协定某一成员国或者地区的货物或者材料在同一优惠贸易协定另一成员国或者地区境内用于生产另一货物，并构成另一货物组成部分的，该货物或者材料应当视为原产于另一成员国或者地区境内。

第七条　为便于装载、运输、储存、销售进行的加工、包装、展示等微小加工或者处理，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第八条　运输期间用于保护货物的包装材料及容器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第九条　在货物生产过程中使用，本身不构成货物物质成分，也不成为货物组成部件的材料或者物品，其原产地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第十条　本规定第三条所称的“直接运输”是指优惠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从该

(2) 구역가치성분기준(区域价值成分标准)이라 함은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에서 해당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당해 회원국 또는 지역의 비원산지 재료가 격을 공제한 이후 남은가격이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중에서 차지하는 백분비율을 말한다.

(3) 가공공정기준(制造加工工序)이라 함은 가공후 취득한 화물에 기본특징을 부여한 주요공정을 의미한다.

(4) 기타 기준이라 함은 상기 기술한 기준을 제외하고 회원국 또는 지역이 일치하게 동의하여 채택한 화물원산지를 판정하는 기타 기준을 말한다.

제6조 특혜무역협정의 어느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화물 또는 원재료를 동일한 특혜무역협정의 다른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다른 화물의 생산에 사용하고 그 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또는 원재료는 다른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제7조 적재(装载), 운송(运输), 보관(储存), 판매(销售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한 가공, 포장, 전시 등 미소가공(微小加工) 또는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기간(运输期间) 화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9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였으나, 화물의 성분을 구성하지 않고 화물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원재료 또는 물품의 원산지는 화물의 원산지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본 규정 제3조에서 가리키는 “직접 운송(直

协定成员国或者地区直接运输至中国境内，途中未经过该协定成员国或者地区以外的其他国家或者地区（以下简称其他国家或者地区）。

原产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的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中国境内，不论在运输途中是否转换运输工具或者作临时储存，同时符合下列条件的，应当视为“直接运输”：

（一）该货物在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时，未做除使货物保持良好状态所必需处理以外的其他处理；

（二）该货物在其他国家或者地区停留的时间未超过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期限；

（三）该货物在其他国家或者地区作临时储存时，处于该国家或者地区海关监管之下。

第十一条　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权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机构（以下简称签证机构）可以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二条　签证机构应依据本规定以及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地规则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三条　海关总署应当对签证机构是否依照本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进行监督和检查。

接运输)”이라 함은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협정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경유없이 직접 중국내로 운송하고, 도중에 당해 협정회원국 또는 지역이외의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하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한다)을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내로 운송되었을 경우,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일시 보관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 상국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할 때,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이외의 기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11조 법률(法律), 행정법규규정(行政法規規定)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그리고 상응한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칙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총서는 원산지 발급기관이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하

签证机构应当定期向海关总署报送依据本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有关情况。

第十四条　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申明适用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并同时提交下列单证：

（一）货物的有效原产地证书正本，或者相关优惠贸易协定规定的原产地声明文件；

（二）货物的商业发票正本、运输单证等其他商业单证。

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中国境内，应当提交证明符合本规定第十条第二款规定的联运提单等证明文件；在其他国家或者地区临时储存的，还应当提交该国家或者地区海关出具的证明符合本规定第十条第二款规定的其他文件。

第十五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向海关提交的原产地证书应当同时符合下列要求：

（一）符合相应优惠贸易协定关于证书格式、填制内容、签章、提交期限等规定；

（二）与商业发票、报关单等单证的内容相符。

第十六条　原产地申报为优惠贸易协定成

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화물의 수입신고시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입화물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의 적용을 표명하는 동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原产地声明)

(2) 화물의 상업송장(商业发票) 원본, 운송증권(运输单证) 등 기타 상업 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로서 복합운송서류 (联运提单)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시보관하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관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기준에 상응

(1)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기재내용, 서명인장, 제출기한 규정에 상응

(2) 상업송장(商业发票), 통관신고서(报关单) 등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员国或者地区的货物，进口货物收货人及其代理人未依照本规定第十四条规定提交原产地证书、原产地声明的，应当在申报进口时就进口货物是否具备相应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原产资格向海关进行补充申报（格式见附件）。

第十七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依照本规定第十六条规定进行补充申报的，海关可以根据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的申请，按照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收取等值保证金后放行货物，并按照规定办理进口手续、进行海关统计。

海关认为需要对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提交的原产地证书的真实性、货物是否原产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进行核查的，应当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税率、普通税率或者其他税率收取相当于应缴税款的等值保证金后放行货物，并按照规定办理进口手续、进行海关统计。

第十八条　出口货物申报时，出口货物发货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并向海关提交原产地证书电子数据或者原产地证书正本的复印件。

第十九条　为确定货物原产地是否与进出口货物收发货人提交的原产地证书及其他申报单证相符，海关可以对进出口货物进行查验，具体程序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查验管理办法》有关规定办理。

第二十条　优惠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

제16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화물에 대하여 수입화물의 수하인(收货人) 및 그 대리인(其代理人)이 수입신고를 할 때, 본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화물이 상응한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자격에 부합되는 가에 대하여 세관에 추가 신고(서식은 부록 참조)를 해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수하인(收货人) 및 대리인(其代理人)이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거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에 따라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먼저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进口手续), 해관통계(海关统计)를 처리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과 화물의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보통세율(普通税率)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과세액의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켜야 하며, 이후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进口手续), 해관통계(海关统计)를 처리한다.

제18조 수출화물 신고시, 수출화물 송하인(发货人)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화물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电子数据) 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화물의 원산지가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증빙서류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

及其包装上标有原产地标记的，其原产地标记所标明的原产地应当与依照本规定确定的货物原产地一致。

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货物不适用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申报进口时没有提交符合规定的原产地证书、原产地声明，也未就进口货物是否具备原产资格进行补充申报的；

（二）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未提供商业发票、运输单证等其它商业单证，也未提交其他证明符合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文件的；

（三）经查验或者核查，确认货物原产地与申报内容不符，或者无法确定货物真实原产地的；

（四）其他不符合本规定及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情形。

第二十二条　海关认为必要时，可以请求出口成员国或者地区主管机构对优惠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进行核查。

海关也可以依据相应优惠贸易协定的规定就货物原产地开展核查访问。

第二十三条　海关认为必要时，可以对优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进行核查，以确定其原产地。

应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要求，海关可以对出口货物原产地证书或者原产地

며, 구체적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0조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수출입화물 및 그 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그 원산지표지가 명기하는 원산지는 본 규정에 따라 확정한 화물의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다음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화물은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배제한다.

(1) 수입화물 수하인(收货人)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수입 신고 시,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관련 성명(原产地声明), 수입화물의 원산지자격 구비여부에 대하여 보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2)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업송장(商业发票), 운송증권(运输单证)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도 제출하는 않는 경우

(3) 검사(查验) 또는 검증(核查)을 실시하여, 화물의 원산지와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거나 또는 화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본 규정 및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회원국 또는 지역의 관할기관에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입화물 원산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또한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 화물의 원산지를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세관은 필요한 경우,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

进行核查，并应当在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期限内反馈核查结果。

화물 원산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다.

第二十四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裁定管理暂行办法》有关规定，向海关申请原产地行政裁定。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특혜무역협정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条　海关总署可以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海关规章的规定，对进出口货物作出具有普遍约束力的原产地决定。

제24조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재정관리잠정방법》에 근거하여 세관에 원산지에 대하여 행정재정(行政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第二十六条　海关对依照本规定获得的商业秘密依法负有保密义务。未经进出口货物收发货人同意，海关不得泄露或者用于其他用途，但是法律、行政法规及相关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제25조 세관총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 규정(海关规章的规定)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보편적인(普遍) 구속력을 갖는 원산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은 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二十七条　违反本规定，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27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밀수행위를 구성하거나 세관감시규정 또는 기타 세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第二十八条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

제28조 본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生产”，是指获得货物的方法，包括货物的种植、饲养、开采、收获、捕捞、耕种、诱捕、狩猎、捕获、采集、收集、养殖、提取、制造、加工或者装配；	생산이라 함은 화물을 재배(种植), 사육(饲养), 채굴(开采), 수확(捕捞), 어획(捕捞), 경작(耕种), 수렵(诱捕), 포획(狩猎), 채집(采集), 수집(收集), 양식(养殖), 채취(提取), 제조(制造), 가공(加工) 또는 조립을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非原产材料”，是指用于货物生产中的非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原产的材料，以及不明原产地的材料。	비원산지 원재료라 함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혜무역협정 비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원재료와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말한다.
第二十九条　海关保税监管转内销货物享受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的具体实施办法由海关总署另行规定。	제29조 세관보세감시에서 내수판매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하여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第三十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제30조 본 규정은 세관총서에서 담당하며 해석한다.
第三十一条　本规定自2009年3月1日起施行。	제31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내용

85) 본문 한글 번역자료는 원문(중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반드시 원문(중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附件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进口货物原产资格申明

本人_____（姓名及职务）为进口货物收货人/进口货物收货人代理人（不适用的部分请划去），兹声明编号为_____的报关单所列第_____项货物原产自_____，且货物符合《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以及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地规则的要求。

本人特申请对上述货物适用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协定税率/特惠税率（不适用的部分请划去），并申请缴纳保证金后放行货物。本人承诺自货物进口之日起1年内补交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规定的原产地证书。

签名：_____

日期：_____

부록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수입화물원산지자격신청

본인_____ (성명 및 직무) 은 수입화물 수화인/수입화물 대리 수화인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 으로서 번호가 _____인 세관신고서에 열거된 제_____항 화물은 _____로 부터 수입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및 관련 특혜 무역협정 조항에서 확정된 원산지 규칙 요구에 부합됨을 설명한다.

본인은 기술한 화물에 대한 상응한 특혜 무역협정 조항 아래 협정 세율/특혜 세율(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 을 적용할 것을 신청하며 보증금 납부 후의 화물 통관을 신청한다. 본인은 화물이 수입된 당일부터 1년 이내 상응한 특혜 무역협정 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것을 수락한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2009년 01월 08일 발표

【부록 5】 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APPENDIX V원산지증명서)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No: 20/2014/TT-BCT	*Hanoi, June 25, 2014*

CIRCULAR

ON THE IMPLEMENTATION OF RULES OF ORIGIN IN THE AGREEMENT ESTABLISHING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Pursuant to Decree No. 95/2012/ND-CP dated November 12, 2012 of the Government defining the functions, tasks, entitlement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Pursuant to Approval Letter of Steering Committee for ASEAN – Korea Free Trade Agreement dated June 27, 2013 on the amendments of Appendix I - Procedures for issuance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in Appendix III - Rules of Origin of the Trade In Good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ASEAN – Korea Free Trade Agreements.

Pursuant to Decree No. 19/2006/ND-CP dated February 20, 2006 of the Government provide guidance on the Commercial Law on origin of goo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issues Circular on the implementation of rules of origin in the Agreement establishing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as follows:

Article 1. The following Appendices are issued together with this Circular:

1. Rules of origin (Appendix I);

2. Rules of specific products (Appendix II);

3. Guidance on Appendix I (Appendix III);

4. Guidance on Article 6 of Appendix I (Appendix IV);

5. Procedures for issuance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 (Appendix V);

6. 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hereinafter is referred to as C/O form AK) (Appendix VI-A);

7. Supplementary Declar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 (Appendix VI-B);

8. Guidance on declar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 (Appendix VII);

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No: 20/2014/TT-BCT

하노이,2014년

고시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지대를 확립하는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산업통상부의 기능과 업무, 권한, 그리고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2년 11월 12일자 법령(No. 95/2012/ND-CP)에 준하여

부록 1((부록 III(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 체계 내 상품 거래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검증에 관한 절차))의 개정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 운영위원회의 승인장에 준하여

2006년 2월 20일자 정부 법령(No. 19/2006/ND-CP)에 준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상거래법에 따른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를 확립하는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다.

제1조. 아래의 부록들이 이 고시와 함께 발행된다.

1. 원산지규정 (부록 1);
2. 품목별 원산지규정 (부록 2);
3. 부록 1에 관한 지침 (부록 3);
4. 부록 1의 제6조에 관한 지침 (부록 4);
5. 원산지증명서(C/O) 발행 및 검증 절차 (부록 5);
6. 원산지증명서 AK양식 (이하 C/O AK 양식으로 지칭함) (부록 6-A);
7. 원산지증명서(C/O) 보충자료 (부록 6-B);
8. 원산지증명서(C/O) 보충자료에 관한 지침 (부록 7);

9. List of Certificate of Origin (C/O) issuing bodies (Appendix VIII).

Article 2. Procedures for issuance and verification of C/O – Form AK

Apart from procedures for issuance and verification of C/O prescribed in Appendix V issued together with this Circular, the procedures for granting C/O – Form AK of Vietnam shall be implemented as prescribed in Circular No. 06/2011/TT-BCT dated March 21, 2011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n procedures for issuance of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and Circular No. 01/2013/TT-BCT dated January 03, 2013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n amendments to Circular No. 06/2011/TT-BCT dated March 21, 2011.

PP. MINISTER
DEPUTY MINISTER

Tran Tuan Anh

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9.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부록 8)

제2조. C/O AK 양식의 발급 및 검증 절차

이 고시에 함께 제시된 부록 5에 규정된 C/O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별도로 베트남의 C/O AK 양식을 승인하는 절차는 산업통상부에서 2011년 3월 21일자로 발효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고시(No. 06/2011/TT-BCT)와 산업통상부에서 2013년 1월 3일자로 발효한 2011년 3월 21일자 고시(No. 06/2011/TT-BCT)의 수정에 관한 고시(No. 01/2013/TT-BCT)에 규정된 데로 시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주무관

트란 투안 안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부표5(APPENDIX V)

구분	목차	
	원문	번역
제1조	Interpretation of terms	용어의 해석
제2조	C/O issuing bodies	C/O 발급기관
제3조	Documentary evidences	증빙 서류들
제4조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O	C/O 발급 신청
제5조	C/O	C/O
제6조	Rectification of errors on C/O	C/O에 관한 오류 수정
제7조	C/O issuance	C/O 발급
제8조	Certified true copy	인증서 원본
제9조	Presentation of C/O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특혜관세 C/O 제출
제10조	Effect of C/O	C/O의 효력 발생
제11조	C/O exemption	C/O 면제
제12조	Handling minor discrepancies	실수
제13조	recode	보관
제14조	Verification	검증
제15조	Verifica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수출국에서의 검증
제16조	Protecting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정보 신뢰도 보호하기
제17조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특혜관세대우 거부
제18조	Special cases	특혜
제19조	Documentary evidence for direct transportation	직접 운송을 위한 입증 자료
제20조	Goods for exhibition	전시용 물품들
제21조	Third country invoicing	제3국 발행 상업송장
제22조	Action against fraudulent acts	대처 방안

자료: MOIT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부표5(APPENDIX V)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구분	원본	번역본
4조 C/O 발급 신청	1. A producer/exporter of the good,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to issuing bodies,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requesting a pre-exportation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 before to be exporte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ubject to review periodically or whenever appropriate, shall be accepted as the supporting evidence in determining origin of the said good to be exported thereafter. The pre-exportation examination may not apply to the good of which, by its nature, origin can be easily determined. 2. The producer/exporter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for a C/O together with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 to be exported qualify for the issuance of C/O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3. C/O issuing bodies shall, to the best of its competence and ability, carry out proper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upon each application for a C/O to ensure that: a) The C/O is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uthorized signatory; b) The origin of the good is in conformity with Appendix I; c) Other statements in the C/O correspond to supporting documentary submitted;	제4조. C/O 발급 신청 1. 물품의 생산자/수출자, 혹은 그 권한 대행은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물품 수출 전에 원산지의 수출 전 검사를 요청하며 발행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정기적으로나 적절한 시기에 검사함) 추후 해당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입증 자료로 채택된다.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물품들은 수출 전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생산자/수출자 혹은 그 권한 대행은 수출 물품이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C/O 발행에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C/O를 신청해야 한다. 3. C/O 발행 기관들은 C/O를 신청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시행해 아래 사항들을 확실히 해야 한다: a) C/O는 서명권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한다; b) 물품 원산지는 부록 1에 준한다; c) C/O에 있는 다른 진술들은 제출된 증빙 서류들에 부합한다; d) 물품 사양 및 물품의 분량과 무게, 화인 및 포장일련번호, 포장 개수 및 종류는 표시된 데로 수출 물품과 일치한다. 동일 C/O에 표시된 여러 품목들은 품목별로 그 자체로 각기 적합하다면 허용될 수 있다.

구분	원본	번역본
	d) Description, quantity and weight of good,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number and kinds of packages, as declared, conform to the good to be exported. 4. Multiple items declared on the same C/O,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each item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7조 C/O 발급	1. A C/O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provided that not more than 0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if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ppendix I. 2. C/O issuing bodies of a intermediary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O,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O is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ry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O in the intermediary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prescribed in Article 14 are applied. 3. Upon request of a Party, other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every Parties.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O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1. 부록 1의 내용에 따라 수출 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토에서 생산된다고 여겨지는 한, C/O는 수출 시 혹은 수출 직후 선적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동안 C/O를 신청하면, 제3국의 C/O 발급기관들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된다. a) 유효한 원본 C/O를 제시할 경우; b) 제3국의 수입자와 제3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경우; 그리고 c) 검증 절차는 제14항에 규정된 데로 적용된다. 3. 관계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서 요청하면 다른 당사자들은 이 조항의 규정과 그것의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대로 이 조항을 수정한다. 4. 사정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 혹은 수출 직후 본의 아닌 오류나 누락, 혹은 다른 타당한 이유로 선적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 C/O는 소급 발행될 수 있지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반드시 “소급 발급됨” 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어야 한다.

구분	원본	번역본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provided that not more than 03 working days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O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01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and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10조 C/O의 효력 발생	1. The C/O shall be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a importing Party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o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original C/O if C/O is replaced as prescribed in Article 6 o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original C/O if back-to-back C/O is issued.	1. C/O는 발급일로부터, 혹은 제6조에 규정된 데로 C/O가 대체된 경우 원본 C/O의 발급일로부터, 혹은 연결 C/O가 발급된 경우 원본 C/O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록 6】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식

<table>
<tr><td colspan="3">1. 出口商的名称、地址、国家：</td><td colspan="4" rowspan="3">证书号：

中国-韩国自由贸易协定
原产地证书

签发国 _____
（填制方法详见证书背面说明）</td></tr>
<tr><td colspan="3">2. 生产商的名称、地址、国家：</td></tr>
<tr><td colspan="3">3. 收货人的名称、地址、国家：</td></tr>
<tr><td colspan="3">4. 运输方式及路线(尽其所知)：

离港日期：

船舶/飞机/火车/车辆编号：

装货口岸：

到货口岸：</td><td colspan="4">5. 备注：</td></tr>
<tr><td>6.项目号（最多 20 项）</td><td>7.唛头及包装号</td><td>8.包装数量及种类；商品描述</td><td>9. HS 编码（6 位数编码）</td><td>10. 原产地标准</td><td>11.毛重、数量（数量单位）或其他计量单位（升、立方米等）</td><td>12. 发票号和发票日期</td></tr>
<tr><td colspan="3">13. 出口商申明：：

下列签字人证明上述资料及申明正确无误，所有货物产自
_____
(国家)
且符合自由贸易协定原产地规则的相关规定。该货物出口至
_____
(进口国)
_____
地点、日期及授权人签名</td><td colspan="4">14.证明：

根据所实施的监管，兹证明上述信息正确无误，且所述货物符合中国-韩国自由贸易协定的原产地要求。

_____
地点、日期、签字及授权机构印章</td></tr>
</table>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식

背页填制说明

证书号： 授权机构编制的原产地证书的序列号。

第1栏： 填写中国或韩国出口商详细的依法登记的名称、地址（包括国家）。

第2栏： 填写生产商详细的依法登记的名称、地址（包括国家）。如果证书包含一家以上生产商的商品，应列出其他生产商详细的依法登记的名称、地址（包括国家）。如果出口商或生产商希望对信息予以保密，可以填写“应要求提供”。如果生产商和出口商相同，应填写“同上”。

第3栏： 填写常驻中国或韩国的收货人详细的依法登记的名称、地址（包括国家）。

第4栏： 填写运输方式及路线，详细说明离港日期、运输工具的编号、装货口岸和到货口岸。

第5栏： 如果发票是由非缔约方经营者开具的，则应在此栏详细注明非缔约方经营者依法登记的名称和所在国家 。如果原产地证书是后补发的，则应注明“补发”字样。如果原产地证书是经核准的副本，则应注明“原产地证书正本（编号 日期 ）经核准的真实副本”字样。

第6栏： 填写项目号，但不得超过20项。

第7栏： 若存在唛头和包装号，填写唛头及包装号。如果唛头是图形或者符号而非字母或者数字，应填写“图形或符号（I/S）”。如果没有唛头及包装号，应填写“没有唛头及包装号”（N/M）。

第8栏： 详细列明包装数量及种类。详列每种货物的货品名称，以便于海关关员查验时加以识别。货品名称应与发票上的描述及货物的协调制度编码相符。如果是散装货物，应注明“散装”。

第9栏： 对应第8栏中的每种货物填写协调制度税则归类编码，以六位数编码为准。

第10栏： 出口商必须按照下表所示方式，在第10栏中标明其货物中明享受优惠关税待遇所依据的原产地标准：

原产地标准	填入第10栏
该货物根据第3.4条（完全获得或生产的货物）或者附件3-A（产品原产地特定规则）的规定，在一缔约方完全获得或生产；	WO
该货物完全由符合第3章（原产地规则和原产地实施程序）规定的原产材料在一缔约方生产；	WP
该货物在一缔约方生产，所使用的非原产材料符合附件3-A（产品特定原产地规则）所规定的税则归类改变、区域价值成分、工序要求或其他要求。	PSR
该货物适用第3.3条（特定货物处理）的规定。	OP

第11栏： 毛重应填写“千克”。可依照惯例，采用其他计量单位（例如体积、件数等）来精确地反映数量。

第12栏： 应填写发票号码和发票日期。如果发票是由非缔约方经营者开具且该商业发票号码和发票日期均不知晓，则出口方签发的原始商业发票的号码和发票日期应在本栏注明。

第13栏： 本栏应由出口商填写、签字并填写日期。

第14栏： 本栏应由授权机构的授权人员填写、签字、注明签证日期并盖章。

说明：该填制说明仅用作填制原产地证书的参考，因此不强制要求复制或打印在证书背面。填制说明可以用缔约方的官方语言打印或复制。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식

증명서 번호 : 권한이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 번호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 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인,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장이 법정이름과 국가가 이 란에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복"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된다.
제6란: 품목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제7란: 포장에 운송 및 숫자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이미지 또는 기호(I/S)" 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포장이나 숫자 없음(N/M)"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9란: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 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이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되고 정의하거나 또는 그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도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가 3-가에 명시된 세 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이 요건에 부함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직)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외(예: 물품의 부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하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명시하다.
제13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제14란: 이 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관인을 찍는다.

설명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하거나 기재 될 수 있다.